

연구보고 97-8

통일법제연구(IV)

#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Ⅲ)

- 民事法 編 -

1997. 12.

研究者 : 朴井源(招請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 發 刊 辭

현재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권력승계를 공식화하였으며, 남한에서는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 속에 4자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한의 경수로공사도 착공됨으로써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남북의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모두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된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난국타개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재편에 의해 남북의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의 장을 새로이 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은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체제유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한편으로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경제난극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고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에 남한기업도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남한의 새 정부는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조성을 통일정책의 목표로 삼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릇 남북한이 합의통일을 이루려면 남북의 교류·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북한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요청됩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본질적 면에서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 변화의 향방을 가리키는 가늠자적 기능을 하는 북한법의 이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북한법률용어의 분석』에 관한 연구를 헌법편(1995년), 형사법편(1996년)에 이어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으로 이 연구는 세 번째이며 북한의 민사법 편에 관하여 논급하였습니다. 북한은 1990년에 민법과 가족법을 채택함으로써 각각 단일법전화를 이루었으며, 1994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새로 정비된 민법체계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북한의 민사법제의 개편은 현시점에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북한의 민사법체제를 통해 본질적으로 사회주의법원리의 기초위에서 민법체계의 구조를 마련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발전면모를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민사법에 관한 법률용어분석은 남북간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통일국가의 민사법제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북한 민사법의 기본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가족법, 민사소송법상 체계를 중심으로 그 법률용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법들을 개관함으로써 그 연혁 및 체계와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분석에서 남북한 민법체제는 그 원리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고찰하되, 법률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초점을 두지않고 북한법상의 체계와 구조속의 개념을 규명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에서 북한민사법의 본질과 함께 그 실제에 관해서도 논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북한법률용어분석에 관한 연구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관련법제 및 사회법제와 관련하여 계속 추진함으로써 남북협력추진과 통일에 대비하는 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북한법 및 통일법제 연구에 초석이 되어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연구에 최선을 다해준 박정원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97년 12월

韓國法制研究院長  
法學博士 朴松圭



# 目次

第1章 序論：北韓民事關係法の意義	9
第2章 北韓民事關係法の概観	13
第1節 北韓民法	13
I. 北韓民法の意義	13
II. 北韓民法の發展	15
1. 北韓民法の沿革	15
2. 北韓民法の變化	16
III. 北韓民法の原則と特徴	18
1. 基本原則	18
2. 特徴	20
(1) 體制上特徴	20
(2) 解釋と適用上特徴	21
(3) 強行規範と任意規範の基準	22
IV. 北韓民法の構成と内容	23
1. 北韓民法の構成	23
2. 北韓民法の主要内容	24
(1) 一般制度	24
1) 民事法律關係の當事者	24
2) 公民の行爲能力	24
3) 所在不明 및 死亡認定制度	24
4) 意思表示	25
5) 時效制度	25
(2) 所有權制度	26
(3) 債權債務制度	26
V. 北韓民法에 대한 評價	27
第2節 北韓家族法	29
I. 北韓家族法の意義	29
II. 北韓家族法の發展	30

III. 北韓 家族法の 構成과 體系 .....	31
1. 北韓 家族法の 構成 .....	31
2. 北韓 家族法の 體系 .....	32
(1) 北韓 民法과의 關係 .....	32
(2) 身分登錄關係法과의 關係 .....	33
IV. 北韓 家族法の 主要內容 .....	34
V. 北韓 家族法에 대한 評價 .....	35
第3節 北韓 民事訴訟法 .....	36
I. 北韓 民事訴訟法の 意義 .....	36
II. 北韓 民事訴訟法の 發展 .....	38
III. 北韓 民事訴訟法の 構成과 體系 .....	39
1. 北韓 民事訴訟法の 構成 .....	39
2. 北韓 民事訴訟法の 體系 .....	40
(1) 北韓 民法과의 關係 .....	40
(2) 北韓 刑事訴訟法과의 關係 .....	40
(3) 北韓 仲裁法과의 關係 .....	41
IV. 北韓 民事訴訟法の 主要內容 및 特徵 .....	42
V. 北韓 民事訴訟法에 대한 評價 .....	44
第3章 北韓 民法上 用語의 概念 .....	47
第1節 一般制度에 관한 用語의 概念 .....	47
第2節 所有權制度에 관한 用語의 概念 .....	86
第3節 債權債務에 관한 用語의 概念 .....	101
I. 一般規定에 관한 用語 .....	101
II. 計劃에 基礎하는 契約에 관한 用語 .....	110
III. 計劃에 基礎하지 않는 契約에 관한 用語 .....	124
IV. 不當利得에 관한 用語 .....	152
第4節 民事責任과 民事時效制度에 관한 用語의 概念 .....	153
I. 民事責任에 관한 用語 .....	153
II. 民事時效에 관한 用語 .....	157
第4章 北韓家族法上 用語의 概念 .....	161
第1節 家族法の 基本에 관한 用語의 概念 .....	161

第2節 結婚 및 家庭에 관한 用語의 概念 .....	165
I. 結婚에 관한 用語 .....	165
II. 家庭에 관한 用語 .....	173
第3節 後見에 관한 用語의 概念 .....	192
第4節 相續에 관한 用語의 概念 .....	194
第5章 北韓 民事訴訟法上 用語의 概念 .....	201
第1節 民事訴訟法の 一般에 관한 用語의 概念 .....	201
I. 民事訴訟法の 基本에 관한 用語 .....	201
II. 民事訴訟의 一般規定에 관한 用語 .....	203
第2節 訴訟主體와 證據에 관한 用語의 概念 .....	217
I. 訴訟當事者에 관한 用語 .....	217
II. 證據에 관한 用語 .....	226
第3節 訴訟節次에 관한 用語의 概念 .....	231
I. 裁判管轄에 관한 用語 .....	231
II. 訴訟의 提起에 관한 用語 .....	235
III. 裁判準備에 관한 用語 .....	237
IV. 裁判審理에 관한 用語 .....	243
第4節 判決·判定에 관한 用語의 概念 .....	245
第5節 第2審裁判에 관한 用語의 概念 .....	246
第6節 裁判監督節次 및 執行節次에 관한 用語의 概念 .....	248
I. 裁判監督節次에 관한 用語 .....	248
II. 執行節次에 관한 用語 .....	251
〔附錄 1〕 北韓의 民事關係法令 立法動向 .....	257
〔附錄 2〕 北韓의 現行 民法·家族法·民事訴訟法 全文 .....	262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民法 .....	262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家族法 .....	290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民事訴訟法 .....	295
北韓 民事法上 法律用語 索引 .....	315



## 第1章 序論：北韓 民事關係法の 意義

북한에도 남한에서와 같이 민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등 민사관계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북한의 민사관계법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민사법의 개념과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민사법에 대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상법, 그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을 포함하는 법규로 설명되고 있다.<sup>1)</sup> 이에 민사법의 정의는 민사에 관한 실제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과 그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민법은 물론 상법 기타 특별사법과 민사소송법 기타 민사절차법 일체를 포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따라서 민사법은 크게 보면 사인간의 평등하고 동위의 생활관계, 즉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 및 절차법을 일컫는다.

이러한 설명은 사회주의법계에 속한 북한의 법체계에 있어서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민사법을 보면 남한의 민사법상 내용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이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민법의 구성면에서 남한의 경우 민법은 재산법분야 뿐만 아니라 친족·상속법분야도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민법은 재산법분야만을 규정하고 친족·상속법분야는 '가족법'을 단일법전화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남한민법이 토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토지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법체계상 남한은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을 구분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이들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남한은 상사관계에 관한 규율로서 상법을 두고 있는데 비해, 북한민법은 남한의 상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민법과 상법의 규제대상을 혼용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사회주의상업법」<sup>3)</sup>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적인 상법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sup>4)</sup>

1) 『新法律學大辭典』(法律新聞社, 1992), 619면.

2)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Ⅰ)-民事關係法-』(法務部, 1992), 27면.

3)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법령 제3호로 승인. 이 법의 全文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1~20면.

4) 북한은 상거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다가 북한은 1992년 4월에 「사회주의상업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그 명칭이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상행위에 관한 실제적 사법이 아니라 북한의 계획경제하에서 자원과 소비품의 원활한 공급과

이렇듯 남북한의 민사법의 내용과 규제대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민사법은 그 개념상 양자를 대비해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남북한의 민사법에서 서로의 해당법률을 비교할 때, 양자는 그 규제대상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규제방법면에서도 공통점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여러 가지 형식의 개별법령에 의해 실생활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법전화작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특수성에 의해 개별법령들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대내외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보다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하게 되었다. 이는 1992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한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현실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정책은 법제에서도 그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정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사관계법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민사관계법은 북한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고찰은 바로 북한의 변화양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의 민사관계법으로 기본적인 법률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북한의 민사에 관한 규정은 토지법 등 단행법률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상기 3개의 법률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법률용어분석의 계속과제로 헌법편, 형사법편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법제정비를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사법제의 제정 및 개정내용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북한민사법제의 내용분석을 통해 북한의 변화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민사법제의 용어분석을 하되, 그 원리적인 면과 함께 실제적인 면도 고찰함으로써 북한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법제를 이해하고 남북한의 법제통합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에 북한민사법 가운데 민법, 가족법,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먼저 그 구성과 내용을 개관하며 또 그 발전면모를 고찰한다. 다음 그들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 용어를 분석하되, 그 이론적 면과 함께 실제적 면을 살핍으로써 북한 민사관계법의 실상을 언급하여 북한법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이밖의 북한의 민사법제의 입법동향에 관하여 일별하여 북한민사관계법의 면면과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의 민법·가족법·민사소송법의 전문(全文)과 이 보고서의 사전적 성격에 의해 여기서 다룬 법률용어의 용이한 검색을 위하여 그 색인을 첨부한다.





## 第2章 北韓 民事關係法の 概觀

### 第1節 北韓 民法

#### I. 北韓 民法의 意義

민법은 주로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의 자유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한다. 이 면에서 보면,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이론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민법의 존재의미를 찾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계약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민법은 주요한 법률분야의 하나이며 북한 나름대로의 민법이론을 형성하고 있다.

민법의 출발은 근대시민사회에서 평등한 사인(私人)간의 자유로운 경제거래와 소유의 자유를 근본내용으로 하고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자본주의민법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 존재할 리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은 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민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사적(私的) 소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제한적이거나 사경제거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즉, 사회주의국가들은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경제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자본주의적 원리를 사회주의계획경제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sup>5)</sup>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의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내외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경제부문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직후 마르크스-레닌주의하의 구소련의 법이론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데에서 벗어나, 점차 북한의 독자성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구소련방이 해체되고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붕괴에 대응하여 보다 더 북한의 법이론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1990년에 통일민법전을 제정하게 되었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민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당사자들이 서로 독자적인 대등한 당사자로 나서는 그러한 경제관계의 분야를 규제"하는 것이며, 그 규율대상은 이들 분야에서의 "가치법칙과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작용을 고려함과 관련

5) 예컨대 중국이 1987년 민법통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 재산적 관계 및 이와 관련된 인격적 관계”<sup>6)</sup>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북한민법의 모습<sup>7)</sup>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북한민법은 당사자들이 서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관계를 갖는 한 개인간, 개인과 사회주의적 제기관간,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간 등의 경제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둘째, 북한민법은 서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당사자로 나서는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이며 조직적으로 명령하고 다른 일방의 당사자가 복종하는 경제관계는 민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북한민법은 경제법의 대상이 되는 여러 경제관계를 망라하여 규율한다. 이것은 북한법이 기본적으로 민법과 경제법의 이원론을 취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sup>8)</sup>

넷째, 북한민법은 혼인·가족관계·상속관계에 속하는 경제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 이들 분야는 부부 내지 가족성원들의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한 관계에 관해서는 가족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북한민법은 제2조에서 북한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고 하여 그 규제대상을 명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북한민법은 법률관계에 관련항 당사자들이 서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지위를 갖는 한 개인간 또는 개인과 사회주의적 제기관 사이, 그리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사이의 경제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6) 『민법 I』〈심의회〉(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10면; 崔達坤, “북한민법의 체계와 특색”,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267면.

7) 이에 관한 상론은 崔達坤, 상계논문, 267~269면.

8)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법이론상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 하나는 수직적 경제관계는 행정법의 대상으로 하고 수평적 경제관계는 비록 사회주의적 제기관 사이나 그 조직과 시민 사이라 하더라도 민법의 대상으로 하자는 이론이다. 이에 비해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조직 사이의 경제관계는 수직관계이든 평등관계이든 이들을 모두 경제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두가지 이론 가운데 구소련의 법이론이 경제법을 배제한 데에 따라 북한도 경제법의 독립적 영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 I』, 전제서, 11~13면. 그래서 북한민법은 경제법의 대상이 되는 여러 경제관계를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 II. 北韓 民法의 發展

### 1. 北韓 民法의 沿革

북한은 1950년과 1958년에 민법초안을 마련하였다. 1950년 민법초안, 즉 '제1초안'은 이른바 '구초안' 또는 '50년초안'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은 총칙, 채권, 상속의 4개편으로 되어 있다. 이 초안은 1922년 구소련의 민법전과 그 내용이 유사하여 '판택텐'체제로 되어 있다. 이후 북한은 1958년 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및 민사소송법초안을 준비하는데 관해서」<sup>9)</sup>를 채택하였는데, 이를 '제2초안'이라고 한다. '제2초안'은 그 체계상 '제1초안'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총칙, 소유법, 채무법, 저작권법, 창의고안권법, 상속법 등의 6개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초안'과는 저작권법과 창의고안법을 새로이 도입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당시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개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초안은 1964년의 구소련민법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sup>10)</sup>

이 두가지 민법초안은 북한에서 당시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경제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민사관계를 확정짓는 경제부문의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민법이론을 정립하지 못한데다가 북한의 경제구조 및 정책도 그 틀을 확립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북한은 민법전의 제정으로 인하여 자칫 북한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는데, 그 영향으로 민법의 법전화작업을 미룬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1)</sup> 이러한 점에서 비록 이 민법초안은 민법전으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잠정적이지만 민사재판의 기준으로 적용됨으로써<sup>12)</sup> 실질적인 면에서 북한민사법의 중요한 법원이 되었다.

이후 1986년에 채택된 「민사규정」(중앙인민위원회 정령, 1986. 1. 30)은 실질적으로 재판실무상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sup>13)</sup> 이 규정은 일반규정, 혼인 및 가

9) 내각 결정 제16호.

10) 그래서 '제2초안'은 구소련에서 1964년 민법의 성립을 위해 논의되었던 이론과 함께 그 초안 등을 사전에 입수하여 계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崔達坤, 전계논문, 1994, 265면.

11)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Ⅰ)』, 전게서, 43면; 崔達坤, "北韓民法의 制定과 그 變化 -比較分析的 研究를 중심으로-", 『北韓法律行政論叢』, 第9輯, 전게서, 95~96면.

12) 大內憲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民法(1)", 『關東學院大學文學部紀要』, 제45호(東京: 關東學院大, 1985), 95면.

족관계, 민사거래행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보상 및 부당이득의 처리 등 4개장 72개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주로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경제거래관계에는 그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민법전과는 거리가 있었다.<sup>14)</sup>

따라서 북한은 통합된 민법전없이 개별 민사규정들에 의해 민사관계를 규율해 오다가 1990년 새로이 독립된 민법을 채택(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 1990. 9. 5)하여 처음으로 통합성문민법을 채택하였다.<sup>15)</sup>

## 2. 北韓 民法의 變化

민법은 일반적으로 사유재산관계와 계약의 자유를 규율하는 법분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민법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근대시민사회에서 평등한 사인간의 자유로운 경제거래와 소유의 자유를 근본으로 하는 법체계인 민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민법은 하나의 중요한 법률분야로 되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민법이론에 의해 민사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민법체계확립의 필요성이라는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국가들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체제의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강조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사적 부문의 경제거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법부문에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부분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법분야의 발전도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법제부분에서 초기 절대적으로 구소련의 민법이론을 답습한 데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법이론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80년말 사회주의권의 변혁이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

13) 이에 앞서 1982년 12월 7일 「민사규정(잠정)」,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247호)과 1983년 3월 19일 「민사규정잠정시행규칙」, (중앙재판소 지시 제2호)이 시행되었다. 1986년 「민사규정」은 1982년 「민사규정(잠정)」의 시행을 정식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申榮鎬, “北韓民法 40年과 그 動向”, 『北韓法律行政論叢』, 제8집(고려대 법학연구소, 1990), 135면.

14) 崔達坤, “北韓民法의 體系와 特色”, 전계논문, 265면.

15) 이에 관해서는 申榮鎬, “北韓民法 40年과 그 動向”, 『北韓法律行政論叢』, 第8輯, 전계서, 129~157면; 『북한의 민법개요』(북한연구소, 1992), 23~29면; 崔達坤, “北韓民法의 回顧와 展望”, 『北韓法律行政論叢』, 제10집, 전계서, 92~95면.

라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법제정비를 통해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1990년에 제정된 민법도 이러한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해방후 일제하의 구민법에 대해 일제 통치기구를 분쇄한다는 명분 아래 전면무효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에 상응한 관습규범 또는 판례도 없었던 상황에서 북한의 성문민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른바 '인민의 민주주의적 의식'이라는 개념을 민법분야의 기본규범으로 삼았었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민주주의 의식'이란 "어떤 심리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확신에 기초해 객관화된 법적원칙의 총체이고 민주주의 의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공화국민법규범을 옳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의거할 것이 필요하다"<sup>16)</sup>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민주주의 의식은 바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당의 정책이 결정된다는 면에서 보면 북한민법분야의 기본규범으로 강조된 '민주주의 의식'은 결국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노선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 기초로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 구소련민법을 답습한 단편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지시에 따라 민사관계를 규율하였다. 당시의 주요 민사관계법령으로는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 3. 5.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1946. 8. 10.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8호), 「인민시장규정」(1947. 2. 3. 상업국 포고 제6호, 재정국 포고 제28호), 「물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1948. 12. 16. 내각 결정 제90호) 등을 들 수 있다.<sup>17)</sup>

이후 북한은 전술하였듯이 민법전제정과 관련하여 '제1초안'과 '제2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들 초안은 성문화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재판에 준용함으로써 그 의의는 큰 것이었다. 이에 비해 1986년 「민사규정」은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적용되었지만, 가사사건을 포함하여 각종의 민사입법에 기초하여 제기되는 민사사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기준으로서 재판실무상 필요에 의해 제정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sup>18)</sup> 더욱이 「민사규정」은 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경제거래에는

16) 『북한의 민법개요』, 상계서, 24면.

17) 북한의 민법 法源으로서의 성문법령에 관한 상세한 목록은 崔達坤, "北韓 民法의 體系와 特色", 전개논문, 255~259면.

18) 大內憲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民法(3)", 『紀要』, 第51號(東京: 關東學院大學文學部, 1987), 109項.

적용을 배제한다<sup>19)</sup>고 하여 민법전의 체계와는 관계가 먼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따라서 이 민사규정은 1990년 민법과 1992년 가족법이 채택됨으로써 폐지되었다.

북한은 1990년에 민법을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제9기 2차회의(1991. 4. 1 1~13)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방후 처음 성문화된 민법을 갖추게 되었다. 다음에 1990년 민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고찰한다.

### Ⅲ. 北韓 民法의 原則과 特徵

민법이 일반적으로 경제질서의 기본을 정한다는 점에서 볼 때,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북한민법의 채택은 북한이 경제질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21)</sup> 북한에서 민법의 확정은 경제질서의 변화대응과 기존 질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에 1990년 북한민법의 기본원칙·주요 내용·특징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基本原則

북한은 민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민주조선」의 법규해설을 통하여 다음의 몇가지를 제시하였다.<sup>22)</sup>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며, 2) 재산거래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며, 3)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대안이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4)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국가가 인민적인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5) 근로자들에게 재산관계에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리와 조건을 보장하며, 6)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하도록 하며, 7)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 기관·기업소·단체나 공민의 이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다음에 북한민법상 기본원칙을 몇가지로 나누어 언급한다.

첫째,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의 강화이다.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강화는 북한민법 제1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19) 김정근·리황, 『민사소송법』(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52면.

20)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Ⅰ)』, 전게서, 44면.

21) 崔達坤, “北韓民法의 制定과 그 變化-比較分析的 研究를 중심으로-”, 전게논문, 93~94면.

22) “법규해설: 민법(1)~(4)”, 『민주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1991년 4월 23일, 4월 26일, 5월 8일, 5월 10일 각각 2면.

특성상 당연한 원칙인 동시에 민법상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민법에서 강조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집단주의, 사회주의 적법성 보장 등의 원칙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파생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이다. 북한헌법은 제20조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민법은 제3조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라고 하였다. 사적(私的)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원칙규정들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인 소유권의 대상을 소비품으로 제한하고 개인적·소비적 사명에 어긋나는 개인 소유권의 행사를 금지한다(북한민법 제58조, 제60조).

셋째,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이다. 북한에서 “나라의 재산, 사회의 재산은 전체인민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것보다 더 귀중”<sup>23)</sup>하다고 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모든 사람이 국가경리와 공동경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재부를 잘 거두고 아껴쓰며 그것들이 인민의 복리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기에 힘써야”<sup>24)</sup>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헌법은 제84조에서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라고 하여 공공재산의 보호는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민법은 국가소유 재산의 반환청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배제,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점유권의 특별보호, 공공재산의 계획적·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산관리질서의 확립, 공공기관의 채무에 대한 강제에는 화폐자금에만 대상국한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헌법은 제34조에서 북한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라고 하고, 이어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 법칙에 따라 ……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성장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획경제의 원칙과 그 실현지침을 천명하였다. 또한 북한민법은 제4조에서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23) 『김일성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214면.

24) 『김일성선집』, 제4권, 111면.

다. 국가는 기관·기업소·단체들이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고 하여 중앙집권제원칙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북한민법은 제3편 제3장에서 국가주도하의 계획적 계약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집단주의원칙으로서 국가·사회의 이익우선의 원칙이다. 북한헌법은 제63조에서 북한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하고, 북한민법은 제8조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기업소·단체·국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고 하여 집단주의원칙을 천명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북한에서 개인의 이익과 국가·사회의 이익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개인생활은 국가·사회의 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된다. 결국 개인의 이익에 맞서 국가·사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개인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거 아래 북한에서 민사상의 모든 권리는 사회주의사회의 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아야 비로소 보장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이윤추구는 금지되고 있다.

여섯째, 공민에 대한 봉사원칙이다. 북한민법은 제6조에서 “국가는 기관·기업소·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하고, 제7조에서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전술한 국가·사회의 이익우선 및 집단주의 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보면,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적법성원칙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국가의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5)</sup>

## 2. 特徵

### (1) 體制上 特徵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 민법전이 제정됨으로써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던 민사관계규정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민법이 갖는

25) 『북한의 민법개요』, 전게서, 46면.



기능의 포괄성으로 인해 개별적인 민사규범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990년 북한민법은 4장(章) 27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내용상 자본주의 국가의 민법과 구소련의 민법체제와 비교할 때 매우 간략하게 성문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민법은 종래 구소련의 법제를 답습한 것에 비추어 구소련민법(8편 569개 조문)에 비해 매우 작은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한의 법전양식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작다고 할 수 없다.<sup>26)</sup>

북한민법은 일반제도(제1편), 소유권제도(제2편), 채권채무제도(제3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제4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별면에서 보면,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채권채무제도에서 분리하여 시효제도와 함께 1개편(제4편)에서 규정하였다. 다음에 그 특징적인 면을 살펴본다.

첫째로 시효제도를 분리하여 규정(제259조~제271조)한 것은 개인간의 권리관계의 확정 이외에 주로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독립채산제와 계획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일반적인 사회주의민법례와 종래 북한법이론과 달리 상속법을 민법전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가족법전에 담은 점은 특이하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을 가정내지 가족유지를 위한 중요자원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다.<sup>27)</sup> 이러한 북한민법의 구성은 종래 '판택텐'식 체계로의 환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 (2) 解釋과 適用上 特徵

일반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민법규범을 해석·적용하게 된다. 이는 북한민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당해 민법규범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북한민법의 특성상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대륙법계 민법의 해석론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전통적 대륙법계민법의 해석론과 사회주의 재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북한민법의 해석론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민법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대륙법계 민법을 해석하는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해석·적용에는 북한민법의 해석상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에 북한민법의 해석상 기준에 관

26) 崔達坤, “北韓 民法의 體系와 特色”, 전계논문, 266면.

27) 崔達坤, “北韓民法의 制定과 그 變化 -比較分析의 研究를 중심으로-”, 전계논문, 97~98면; 『北韓民法의 體系的 考察(I)-民事關係法-』, 전게서, 48면.

28) 崔達坤, “北韓 民法의 體系와 特色”, 전계논문, 266면.

하여 살펴본다.

첫째, '조선로동당'의 정책이다. 북한에서 법은 "우리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국가의 정책은 당의 정책입니다. 우리 당의 정치로선과 정책을 모르고는 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것과 멀어질수 없습니다"<sup>29)</sup>라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북한은 당정책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문법규범을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당의 정책을 따른다는 의미가 된다. 당정책우선의 북한의 태도는 당정책과 성문법규범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성문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그 내용과 정신이 반할지라도 당의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민사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입장에 입각하는 것이다. 이는 전술한 당의 정책을 우선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북한에서는 "오직 법을 '우리 당이 요구하는 계급적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라'는 것을 강조할 따름입니다"<sup>30)</sup>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입장에 선다는 것과 당정책의 우위를 별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민사관계법의 해석·적용에서 유추적용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민사관계에 관한 성문규범의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성문규범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유추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방법에는 구체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민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개별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규정조차 없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을 유추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이를 개별적 민법규범의 유추가 아닌 '민법의 유추'라고 풀이한다.<sup>31)</sup>

이는 성문민법이 제정된 현재에도 민사법의 해석에 있어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유추적용의 활용은 역시 편리한 방법으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3) 强行規範과 任意規範의 基準

북한은 민법상 강행규범과 임의규범으로 분류하지만, 그 구체적인 구별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에서 민

29)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44면.

30)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문헌집』(평양: 1960), 259면; 崔達坤, "北韓 民法의 體系와 特色", 전계논문, 273면에서 재인용.

31) 『민법 1(십의용)』(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77~78면.

법이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않고 또 그 판결례에서도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그 기준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북한은 민법을 설명하면서 “그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강행규범과 임의규범으로 나누어진다”고 하고, “민법 가운데는 강행규범과 함께 임의규범도 있는 만큼 그를 정확히 해석,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를 옳게 갈라내는 것이 중요하다”<sup>32)</sup>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구별의 기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북한에서 종래 시행되고 있는 성문민법규정을 통해 추론하면, 이제까지의 북한민법규정은 경제계획의 시행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것들이었던만큼 국가 및 사회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행되는 민법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임의규범은 매우 드문 것임을 엿볼 수 있다.<sup>33)</sup>

## IV. 北韓 民法의 構成과 內容

### 1. 北韓 民法의 構成

북한의 1990년 민법은 4편 13장 27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편별로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본다.

첫째, 제1편은 일반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의 규제대상·사명·기본원칙·효력(제1장), 민사권리능력(제2장), 민사법률행위(제3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한민법상 총칙에 해당하는 부문으로서 민법상 모든 부분에 관련이 있는 규범에 속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제2편은 소유권제도에 관하여 일반규정(제1장), 국가소유권(제2장), 협동단체소유권(제3장), 개인소유권(제4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소유권제도를 우선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가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제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3편은 채권채무제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일반규정(제1장), 계획적 계약제도(제2장), 일반계약제도(제3장), 부당이득행위(제4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넷째, 제4편에는 민사책임(제1장)과 민사시효제도(제2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0년 민법은 민법초안 및 민사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상속제도부문을 민법에

32) 상계서, 78면.

33) 崔達坤, “北韓 民法의 體系와 特色”, 전계논문, 274면.

서 분리하여 「가족법」에 편입하여 따로 규정하였다. 또한 저작권, 창의고안권에 관한 부분도 민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북한민법은 재산관계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북한민법의 편별은 남한민법과 같이 독일식의 편별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민법은 남한민법이 총 5편 1118개조로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매우 적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北韓 民法의 主要內容

### (1) 一般制度

#### 1) 民事法律關係의 當事者

북한민법은 제11조에서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그리고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를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도 민사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제18조). 따라서 민사관계의 당사자로서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제11조).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기업과의 민사관계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북한이 최근 입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 및 대외개방관련 법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다시말해 외국기업과의 교역확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분쟁과 관련하여 그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민법이 규율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公民의 行爲能力

북한민법상 공민의 행위능력은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를 보면, 17세 이상의 완전행위능력자, 항상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미성인(단 16세 이상인 자는 노동보수의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법률행위가능), 독자적으로 학용품 등의 구입행위가 가능한 6세 이상의 미성인 등으로 나뉘어 진다(제20조, 제21조). 이와 같이 북한민법이 공민의 행위능력을 단계별로 나누고 있는 것은 기존의 민사규정에 비하여 행위무능력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 3) 所在不明 및 死亡認定制度

북한민법상 소재불명기간은 2년이며,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이 경과되면 사망인정이 가능하다. 실종기간은 3년이며, 특별실종기간은 1년이다. 소재불명자의 인정, 사망인정은 모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

다. 한편 그 취소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제22조, 제23조).

#### 4) 意思表示

북한민법상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특히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24조). 이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의 요식성의 여부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다. 특히 서면행위는 당사자의 서명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서명 이외에 공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주의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기업소·협동단체의 상호간 또는 이들과 공민과의 사이의 법률행위 그리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공민 상호간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민법은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제140조제1항). 서면 내지 공증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구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통상의 경우에는 구두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 5) 時效制度

북한민법은 시효제도에 관하여 총칙편에서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편에서 규정하고 있다(제4편 2장). 북한에서 시효제도는 개인간 권리관계의 확정 이외에 주로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의 결제관계를 적시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채산제와 계획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주된 기능을 두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 북한에서는 민사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와 그의 법적 효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법이 정한 기간내에 재산상 청구권을 제때에 행사하지 않은 청구권자의 재산상 권리를 법적으로 실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민법상 중요한 제도의 하나”라고 설명한다.<sup>34)</sup> 이어 시효제도의 목적에 관하여 두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한 측면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공민들이 재산상 청구권을 제때에 실현함으로써 류동자금의 회전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의 편의를 보장하자는데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측면은 “사회주의적 법인들 호상간 그리고 서로 다른 소유자들 사이의 민사관계에서 고찰할 수 있다”고 한다.<sup>35)</sup> 이로부터 민법상 시효제도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경을 찾을 수 있다.<sup>36)</sup>

34)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3권 제1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1), 53면.

35) 상계논문, 같은 면.

36) 崔達坤, “北韓民法의 制定과 그 特色”, 전계논문, 3면.

## (2) 所有權制度

북한민법은 사회주의적 소유에 관하여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 등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소유권은 최상위의 소유권이며 그 대상은 제한되지 않고 있다(제45조). 한편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소유의 범위에 가정용품·문화용품·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같은 기재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소유권의 대상을 과거에 비해 확대하였다(제58조, 제59조). 이점에서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의 보장에 따라 개인소유의 인정범위는 확대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7)</sup> 그러나 북한은 개인소유권의 본질에 관하여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로 보기보다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법칙 내지 국가사회가 베푸는 추가적 혜택이라는 관념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북한민법은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소유물반환청구권(제40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41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자는 선의취득을 인정함으로써 제한되고 있으나(제62조), 선의취득제도는 유실물이나 도난에 의한 물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제62조제2항). 아울러 북한민법은 공동소유 중 공유관계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부부재산과 같은 특수한 공동소유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 (3) 債權債務制度

북한민법 가운데 채권채무제도 부분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총 271개조문 중 195개조문으로 구성됨).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관하여 개관한다.

첫째, 일반규정(제1장)은 남한민법상 채권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높은 정도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제67조, 제68조),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을 채권채무의 발생원인으로 하고 있는 점(제66조) 등은 특징적인 부분이다. 더욱이 북한민법은 제85조에서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물과 종물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sup>38)</sup> 북한에서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가 되는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활동은 국가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계획경제라고 한다.

37) 상계서, 48~50면.

38)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 전계서, 50면.

둘째, 이른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계획적 계약)은 계획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제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은 계획과제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계획경제가 변경되면 언제든지 그 효력이 변경 또는 소멸하게 된다. 이는 비록 계약이라는 표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계약의 체결, 상대방 선택, 내용 및 방식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회주의 특유의 개념에 기인하기 때문이다.<sup>39)</sup>

셋째, 북한민법은 계획적 계약과 구별하여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즉 일반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계약적 충실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에 이어 전형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민법은 전형계약의 종류를 종래 11개에서 17개로 확대하였는데, 이른바 계획적 계약의 수가 준 반면 일반계약의 수는 증가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질서의 다양화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당이득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35조 내지 제239조). 북한민법상 특이한 점은 현물반환의 원칙(제237조)과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득을 국가기관에 귀속하도록(제239조) 한 점이다. 사회주의 민법상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은 개인재산의 보호에 있다기 보다 국가나 협동단체소유재산이 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다섯째, 북한민법은 채권법과는 별도로 불법행위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민법상 불법행위능력은 민사행위능력과 같은 17세로 되어 있다. 아울러 북한민법은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제245조) 기업소 등의 무과실책임도 인정하고 있다(제255조). 또한 북한민법은 환경오염에 따르는 민사책임제도를 도입하였다(제250조). 이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대응하는 북한의 자세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의 하나이다.

## V. 北韓 民法에 대한 評價

북한민법에 관한 주요 내용과 특색을 개관하면서 북한이 민법체계를 새로이 구성하고 비로소 종합적인 성문민법전을 마련한 배경을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제정비의 일환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민법이 제정된 시기를 보면, 1980년대말 사회주의권의 변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라 북한은 변화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웠으며 북한식의 방법이기도 하지

39) 崔達坤, "北韓 民法의 體系와 特色", 전계논문, 110~116면.

만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은 북한체제의 유지라는 기본목표하에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사적 변혁을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의 변화를 도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법제분야에서 민사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 1990년 북한민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평가해 본다.

첫째, 1990년 북한민법은 북한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사법이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본질상 북한의 경제관계의 변화는 민법체제의 변화모색이라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북한은 외부적으로 국제사회의 개방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주민의 경제난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여야 할 난국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이를 타개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였다. 그것은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일환으로 민법체제의 재편을 시도한 것으로 국제질서변화와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소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sup>40)</sup>

둘째, 북한민법은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 자체로 보아 북한의 변화를 실증하는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체제유지와 경제개방이라는 이중적 상황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비록 북한이 새로운 민법체제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충실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민법은 기존의 사회주의법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일면 구소련민법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사회주의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법체제의 본질이 사회주의체제에 입각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민사법체계는 여전히 사회주의법의 범위내에서 규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북한민법이 종래의 민사관계법 규정과 달리 계획적 계약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즉 일반계약의 범위를 확대한 점은 북한경제활동의 변화를 반영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민사법영역의 확대라는 현실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것이 사회주의경제원칙에 기초한 북한체제의 한계에 따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면 북한이 변화의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법제분야에서의 변화의 모습을 비치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민사법제 변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0) 상계논문, 332면.



## 第2節 北韓 家族法

### I. 北韓 家族法의 意義

가족법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제반 가족법질서를 명시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가족법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어느 정도의 정형화된 강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강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관습이나 전통적 가치의 범위 내에서 그 틀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가족법관계는 강한 보수성을 띠게 마련이며, 근본적으로 그 전통성을 실정법에 의해 한꺼번에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가족법은 남한의 친족·상속법과 비교할 때, 그 법체계는 달라도 공통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북한의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가족제도를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남한의 친족·상속법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만, 북한 가족법이 사회주의실현을 위한 방편으로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그 출발점을 삼음으로써 가족법관계에서 남한의 가족법관계와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법학사전」은 가족법의 개념에 관하여 “결혼 및 혈연관계 그리고 다른 가족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이라고 하고, “가족법은 우리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며 혁명의 후계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데 복무한다”<sup>41)</sup>고 하여 그 사명을 밝히고 있다. 이어 “가족법은 남녀평등권원칙, 모성과 아동들을 국가적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원칙, 엄격한 일부일처제원칙, 자녀의 리익을 위주로 한 친권실현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부부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에 대한 규제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sup>42)</sup>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가족법의 규율대상에서 상속관계에 대한 부분은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의 가족법에 관한 정의는 위의 정의에 상속의 개념을 포함한 것이 된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가족법은 결혼관계, 혈연관계, 입양관계 및 상속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가족법은 결혼관계, 부부관계, 자녀의 양육과 교양문제, 가정재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

41) 『법학사전』, 전계사전, 1면.

42) 상계사전, 같은 면.

제를 규제한다고 하여 이른바 '가정재산제도'라는 독특한 규제대상을 설정하고 있다.<sup>43)</sup>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가족법을 제정한 뒤 『민주조선』을 통한 가족법의 법규해설에서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하며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sup>44)</sup>고 설명하였다.

## II. 北韓 家族法の 發展

북한의 가족법은 1990년에 비로소 단일법전으로 체계화되었다(1990. 10. 14 채택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 이전의 가족관계는 1946년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1986년 「민사규정」 등에 의해 규율되었다.<sup>45)</sup> 가족법의 제정은 공산주의가 완성되면 가족제도가 소멸한다는 종래 마르크스이념에 따라 의도된 당의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가족제도의 와해를 시도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민사규정」은 재산법과 가족법이 함께 입법된 것이었다. 따라서 1990년 가족법은 민법과 가족법이 분리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한 가족법은 1990년 9월 민법이 채택된 직후 그 해 10월에 별도의 법령으로 채택되었다.

북한정권수립시기에 북한은 이른바 '반제·반봉건민주주의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기존질서의 철저한 부정 속에서 사회주의체제건설을 위한 대변혁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토지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이라는 과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이를 위한 법령의 하나가 바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었다. 이 법령을 통해 정치·경제·문화 등 각 사회생활면에서 남녀간의 평등을 선언하였으며, 나아가 혼인·이혼의 자유 및 남녀의 평등, 일부다처·매매혼·창녀·기생 등 구시대의 악습폐지, 유산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하였다. 이는 가부장제를 부정함으로써 전통적인 호주·종족 등의 종법적 친족계열을 부정하였다. 또한 혼인과 이혼에 있어서 남녀평등실현의 천명은 부권을 부정함으로써 종래의 가취제(嫁娶制)에 따른 처에 대한

43)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 전개서, 273면.

44) 『민주조선』, 1991년 5월 23일, 2면.

45) 家族法 制定 이전의 家族法の 成立과 變遷에 관해서는 崔達坤, "北韓家族法 40年과 그 動向", 『北韓法律行政論叢』, 第8輯, 전개서, 95~99면.

부의 지배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산상속에서도 전래의 조업사상(祖業思想)에서 유래하는 유산에 대한 남자상속제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진국의 가족법제를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사회주의 혁명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도로서 형식적인 면에서 강조된 것이었다. 이 법령은 가족제도의 대강만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혁에도 불구하고 북한가족제도는 오랫동안 습속화·윤리화되어온 전통성을 급작스레 붕괴시킬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6·25동란 이후 북한의 상황은 전통적 가족제도와 가족관념을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전후재건을 위한 미명하에 농장의 집단화, 상공업의 협동화·국영화를 완성하고 모든 인민들의 임금노동자화 등의 조치들은 전통적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이를 위한 조치들을 법적 근거에 의해 추진하기 보다 당정책 등을 통해 강행하였다. 이 시기에 이른바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협의리혼절차를 폐지하고 재판리혼에만 의하게 하는 규정」, 「리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가족법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정치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부분적 입법에 불과한 것이었다.<sup>46)</sup>

그러다가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주체사상의 강조와 함께 이른바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법규의 성문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982년 「민사규정(잠정)」과 1986년 「민사규정」이 제정되었다.<sup>47)</sup> 이 두 규정중 전자는 제2장에서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8)</sup> 이것에 이어 북한은 1990년에 가족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Ⅲ. 北韓 家族法의 構成과 體系

#### 1. 北韓 家族法의 構成

북한 가족법은 모두 6장 54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이를 좀더 살펴

46) 이에 관해서는 상계서, 283면.

47) 이 두 규정의 관계에 관해서는 그 자세한 조문이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잘 알 수 없으나, 그 명칭이 다르지만 실제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Ⅰ)』, 전계서, 284면.

48) 『北韓法制概要』, 전계서, 338면.

본다.

첫째, 가족법의 기본(제1장)으로서 가족법의 규제대상, 사명, 기본원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결혼(제2장)에 관하여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제, 결혼연령, 근친금혼범위, 결혼등록, 결혼무효 등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셋째, 가정(제3장)에 관하여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하여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인격적·재산적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후견(제4장)에 관하여 후견의 목적과 후견인의 자격,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후견에 대한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상속(제5장)에 관하여 법정상속의 순위와 몫, 상속거부조건, 유언상속, 상속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벌칙(제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단 한 개의 조문으로 가족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가족법이 단행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조문이 가족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적용에서 얼마만큼 규범력을 발휘할 지에 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다만, 북한 가족법이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입법을 시도함으로써 종래 사회주의법을 모방한 것에 비하면 그 발전면모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가족법은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2. 北韓 家族法の 體系

### (1) 北韓 民法과의 關係

북한 가족법은 그 규제대상을 가족관계에 두고 있다. 인간의 생활관계에서 인격적이고 숙명적인 관계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한에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민법이라는 하나의 법체제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북한에서는 민법의 대상을 “가치법칙과 로동에 의한 분배원칙의 작용을 고려함과 재산적 관계 및 이와 관련된 인격적 관계”<sup>49)</sup>라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의 규제대상을 재산관계나 재산관계와 결부된 인격적 관계를 중요내용으로 하는 것에 국한함으로써 결국 가족관계는 민법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법부문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0)</sup> 이는 북한이 가족법을 민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49) 서창섭, “공화국 민법전의 체계에 대하여”, 『민주사법』, 제5호(평양: 1959), 29면.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민법과 가족법을 분리하는 실질적 의의는 사회주의가족법의 혁명적 기능과 사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은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사회, 즉 가족관계에서도 사적 소유의 이기적 이익이 제1차적 의의를 갖는 사회에서는 본질적으로 가족관계를 재산관계와 구별할 기초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토지와 여성의 해방'을 내세우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정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화를 금지하고 중요 산업시설 등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진행시킨 데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소유권 중심의 재산제도에 관하여 규율하는 민법과는 별도로 토지관계와 가족관계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sup>51)</sup>

한편 북한 가족법이 민법과는 별도로 단행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민법규정이 가족법관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가족법관계도 부분적으로는 재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록 가족법관계에서의 부부재산관계는 원칙적으로 가족법만 적용되도록 하였지만 가족법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공백이 있을 경우 그와 관련된 민법규정을 적용하여도 가족법상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면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족법관계에도 민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52)</sup> 실제로 북한의 민사규정에서는 상속관계가 민법이 규제대상을 하고 있었다. 이는 상속관계가 재산법관계와 가족법관계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다.

## (2) 身分登錄關係法과의 關係

북한 가족법은 국민의 신분등록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혼·이혼의 등록, 출생등록 등은 그 자체가 가족법관계의 발생·소멸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북한에서 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법령은 단순히 가족과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연령, 성명변경, 사망 등 광범위한 신분관계의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이 바로 가족법은 아니다. 따라서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법적 규제를 명백히 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신분등록문제를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sup>53)</sup>

50)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한 학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결혼, 가족관계는 재산관계와 다른 종류의 관계이며 재산관계로 귀착시켜 버릴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관계에 재산관계의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족관계에서 주되는 기본적인 결정적 의미를 결코 가지지 못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조일호, 『조선가족법』(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8), 25면.

51)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Ⅰ)』, 전게서, 289면.

52) 조일호, 전게서, 26면.

## IV. 北韓 家族法の 主要內容

북한은 가족법을 제정하면서 그 기본원칙에 관하여 “결혼에 대한 보호, 가정의 공고화,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보장,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문제들이 포함”<sup>54)</sup>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북한은 종래 민법의 규제대상으로 삼았던 상속관계를 가족법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여타 사회주의가족법이론에 비추어 보아 북한가족법의 특색의 하나이다.<sup>55)</sup>

다음에 북한가족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북한에서 가족법은 “결혼관계, 부부관계, 자녀의 양육과 교양문제, 가정재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sup>56)</sup>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영하여 가족법의 정의에 상속관계를 포함하였다(제7조). 과거 북한은 인민정권수립시부터 상속권제도를 자본주의적 착취제도의 일종으로 보아 매국매족적이며 반인민적이라고 하여 폐지했었는데, 이번에 가족법상 상속관계를 인정한 것이다.<sup>57)</sup> 이는 사회주의가족법의 일반례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재산관계가 생활의 필수적 분야이므로 가정이 재산적으로도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sup>58)</sup>

둘째, 가족법의 원칙규정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제17조, 제18조), 어머니와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 보호원칙(제6조), 일부일처제원칙(제8조), 혼인에 대한 보호(제2조제2항)와 가정의 강화(제3조제2항), 행위능력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제4조제2항),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의 보호(제5조) 등을 규정하였다. 여기에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53)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Ⅰ)』, 전게서, 291면.

54) 『민주조선』, 1991년 5월 23일, 2면.

55) 예컨대 구소련에서는 상속관계를 민법의 규제대상으로 파악하여 민법 제7편에서 규정하였으며, 중국은 혼인법 제18조에서 상속권에 관한 총칙적 규정만을 두고 상속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東아시아 家族法制』(法務部, 1996), 271면.

56) 리송녀, “공화국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법학논문집』(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139면; 申榮鎬, “北韓家族法の 制定과 그 特色”, 전게논문, 123면.

57) 종래 北韓에서 家族法の 規制는 人格의 側面이 주된 意義를 가지며, 財産의 側面은 副次的인 意義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따라 그 規律對象에서 相續關係를 배제하였다. 『북한 가족법과 가정실태』, 전게서, 84~89면;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Ⅰ)』, 전게서, 440~450면.

58) 舊蘇聯에서는 相續을 財産取得의 한 類型으로 간주하여 民法에 규정(제7편)하였으며, 中國도 婚姻法에서 단지 夫婦 및 父母와 子女 사이에 相續權이 있다고 규정(제18조)하고 相續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申榮鎬, “北韓家族法の 制定과 그 特色”, 전게논문, 123면; 리송녀, 전게논문, 169면.

결합하는 원칙은 가족법의 임무가 “은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에 있다는 규정(제1조)에서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사회주의사회는 개개의 가정이 모여 이룩된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의 이익은 가정 및 가정성원의 이익으로 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은 가정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한다.<sup>59)</sup>

셋째, 전술하였듯이 북한가족법은 상속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상속관계를 민법에서 분리하여 가족법에 포함시킨 것은 다음의 가족법이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가족법이 가정을 재산적으로도 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서 재산관계는 생활의 필수적 분야이므로 가정이 재산적으로도 공고화되어야 하며, 재산적 공고화가 실현되어야 가정의 공고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가정의 강화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하에서 상속재산은 생활필수품으로 제한되며, 상속은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재산적으로 공고히 하며 가정성원들이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60)</sup>

넷째, 비록 사회주의법으로서 구소련의 가족법이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광범위한 금혼범위규정(제10조), 부부별성주의(제17조), 광범위한 친족부양 및 가족부양의 의무부여(제19조, 제35조~제37조) 등의 규정들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반영한 예이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법리론에서의 독자성추구와 남한과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입각한 민족성의 제도적 공통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sup>61)</sup>

## V. 北韓 家族法에 대한 評價

북한 가족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변화되어 단일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북한 가족법의 체계상 및 내용상의 특색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평가해본다.

먼저 체계면에서 보면, 가족법이 규제대상에서 상속제도를 포함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회주의 민법체계에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법체계에 있어서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륙법상 전통적인 가족법이론의 틀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62)</sup> 또한 북한 가족법은 ‘가정’을 그 핵심내용으로 강조하

59) 리송녀, 상계논문, 142면; 申榮鎬, 상계논문, 124~126면.

60) 『東아시아 家族法制』, 전게서, 271~272면.

61) 崔達坤, “北韓家族法 40年과 그 動向”, 전계논문, 127~128면.

62) 申榮鎬, “北韓 家族法의 體系와 特色”, 전계논문, 433면.

고 있다.

다음 내용면에서 북한 가족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북한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화목·단결, 인간의 존엄, 사랑·존경·보살핌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북한 가족법이 유교문화적 전통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폭넓은 간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사회주의가족법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북한가족법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예컨대 혼인적령에 관한 규제, 이혼의 사실상 허가주의, 친권행사에 대한 국가의 간여, 입양 및 후견에 있어서의 주민행정기관의 승인 등에서 그러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유래하는 규범을 성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혼범위의 확대, 성불변의 원칙과 부성추종주의,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계친자관계와 상속순위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사회가 여전히 부계사회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남한의 가족법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위에 서구적 가족질서를 도입하였다면, 북한의 가족법은 사회주의법질서의 기초위에 우리의 전통을 가미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63)</sup> 이러한 성격을 지닌 북한가족법은 남한의 가족법과의 공통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

북한의 법제도가 사회주의법질서에 기초함으로써 그 본질에서 남한법과의 차이가 현저하지만, 가족법의 경우는 여타법에 비해 우리의 민족적 가족관을 반영하고 있는만큼 어느 법보다 양자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第3節 北韓 民事訴訟法

#### I. 北韓 民事訴訟法の 意義

북한은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재판소의 조직과 그 활동의 헌법상 원칙에 기초하여 재판활동의 한 분야인 민사재판분야를 규율하는 부문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의해 근로자들의 경제활동과 가정생활분야에서 제기되는 분쟁문제들을 심리해결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와 결혼가족제도를 철저히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

63) 『北韓法制概要』, 전계서, 377면.



로 된다고 설명하였다.<sup>64)</sup> 이에 따라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사건을 취급처리함에 있어서 재판소·검찰소·집행기관 및 기타 소송관계자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게 된다고 강조된다. 북한 민사소송법은 민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있어서 재판소의 권한과 그에 따른 소송상 지위, 소송상 임무와 재판소가 수행하는 행위의 법적 효과 등을 규제하며, 검찰소가 민사소송에 참가하는 근거와 소송에서 차지하는 지위 및 소송참가형식, 그리고 집행기관의 소송상 지위와 판결(판정)의 집행을 위한 활동형식 및 사건해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나 참가자 뿐만 아니라 증인·감정인·통역인·해석인들의 소송상 지위와 소송상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형식을 규정한다고 설명된다.<sup>65)</sup>

또한 북한에서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재판소·검찰소·집행기관 및 기타 소송관계자들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하며, 민사소송관계는 이들간에 맺어지는 민사소송상의 권리의무관계라고 한다.<sup>66)</sup>

이렇듯 북한에서 민사소송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 민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송제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불문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 발전되어 왔으며, 북한도 민사재판분야를 규율하는 부문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소유가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재에 국한되고, 토지·건물 기타 중요생산재는 국가와 협동단체에 귀속되는 등 사적 소유가 제한되는 북한에서 개인간의 거래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절차가 갖는 의미는 남한에서 이해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민사소송제도는 원칙적인 면에서 남한의 그것과 공통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여러 면에서 양자는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 구소련의 사회주의법체계를 계수하면서 소송제도에서도 사회주의법의 소송관을 계수하였다. 북한은 민사소송제도가 사회주의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개혁·개방이라는 세계사적 변화 등의 조류속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생활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민사소송제도가 과도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만 운영될 지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sup>67)</sup> 실제로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앞으로 북한

64) 金洪奎, “北韓民事訴訟에 있어서 黨과 人民의 役割에 관한 研究”, 『北韓法律行政論叢』, 제9집(高麗大 法學研究所, 1992), 239~240.

65) 『민사소송법』(평양: 김일성대학출판사, 1987), 9~10면.

66) 상계서, 10~14;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 전계서, 459면.

67) 『北韓司法制度概觀』(法院行政處, 1996), 183~184면.

사회가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그러한 경제개혁에 수반하여 기관·기업소·단체 및 공민간의 경제적 이익이 분화되고 책임의 소재가 점차 명확해짐으로써 민사재판의 역할과 기능은 북한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 II. 北韓 民事訴訟法の 發展

북한에서 민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개별법규(68)와 '민주주의적 의식과 조선인민의 이익'(69)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따라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북한은 민사소송법을 1976년에 처음 채택하였다(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 1976. 1. 10). 이로써 이전까지 민사소송에 관련된 규율이 단지 개별법규의 형식으로 존재하였던(70) 북한에서 통일적인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다.

북한에서 민사소송법이 형사소송법에 비해 법전화가 늦어진 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수행에 있어서 공법분야 보다 사법분야의 중요성이 미약하다는 점과 자유로운 법률관계의 형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북한사회의 상황을 들 수 있다.(71) 이후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북한사회의 변화, 특히 경제관계의 변화에 의해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체계확립이 요청됨에 따라 1994년 민사소송법은 18년만에 개정되었다(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94. 5. 25). 이 개정 민사소송법은 북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북한의 민사소송제도는 사회주의권의 변혁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1994년 5월 25일 새로운 민사소송법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1994년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이념적 색채를 완화하고, 민사소송의 실질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새로운 민사소송법은 외국인 및 외국투

68) 이러한 법규로는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1951. 2. 16 내각결정 제203호), 「집행문을 표기할 수 있는 문서에 관한 규정」(1949. 11. 17 내각 결정 제160호), 「리혼사건처리에 관한 규정」(1962. 3. 21)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金洪奎, 『北韓의 民事訴訟制度』, 『北韓法 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439~465면.

69)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법국·재판소·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1946. 3. 6.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제3호의 2)은 제20조에서 "판사는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한다. 단, 민사 또는 형사상 잠정적으로 일본법률을 참고하는 때 판사는 그 민주주의적 의식과 조선인민의 이익에 입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70) 이에 관해서는 홍국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279~280면.

71) 이 때까지의 民事訴訟法の 沿革에 관해서는 「北韓法の 體系의 考察(I)」, 전게서, 455~458면.

자기업에도 소송주체를 인정하고 국민의 소송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개방의 시대적 조류에 대응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민사소송제도는 우리의 그것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Ⅲ. 北韓 民事訴訟法の 構成과 體系

#### 1. 北韓 民事訴訟法の 構成

북한의 1994년 민사소송법은 모두 13장 182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976년 민사소송법이 총 13장 177개조문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다소 조문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소·검찰소·집행기관 및 소송관계자들의 활동형식과 방법, 소송이 진행되는 순차적인 과정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북한민사소송법의 조문체계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민사소송법의 기본(제1장)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목적 및 활동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일반규정(제2장)으로서 민사사건해결을 위한 총칙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사사건의 재판소의 판결·판정에 의한 최종해결, 재판심리의 공개, 소송참가인 및 관계인의 범위, 재판소의 재판사건 처리, 소송비용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소송당사자(제3장) 및 증거(제4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송담당자로서 소송당사자와 참가자, 소송대리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입증과 증거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재판관할(제5장)과 소송의 제기(제6장)에 관한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소송담당자로서 재판소의 지위와 재판관할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송제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재판준비(제7장)와 재판심리(제8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준비절차와 사건수속의 중지·사건기각·화해 및 청구포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판심리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판결·판정(제9장)과 제2심 재판(제10장)에 관하여 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판결·판정의 내용과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심 재판절차에서 상소·항의의 제기와 그 심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비상상소(제11장)과 재심(제12장)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사재판의 감독절차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덟째, 판결·판정의 집행(제13장)에 관한 규정을 둬으로써 민사재판결과에 따른 구체적 집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집행의 일반절차 및 구체적인 집행방법, 재산담보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2. 北韓 民事訴訟法の 體系

### (1) 北韓 民法과의 關係

북한은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민법상의 분쟁해결을 심리해결하기 위하여 재판소를 비롯한 소송관계자들이 활동을 규제하는 부문법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은 언제나 민사실체법상의 권리와 이익을 재판상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이 민사실체법상의 권리와 이익을 재판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형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민사실체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로서 민사소송이 없다면 그 현실적 실현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은 남한에서의 민사소송법이 민사실체법의 관계에서 목적과 수단, 내용과 형식의 관계로 파악되고 있는 점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북한이 1990년 민법을 새로이 제정한데 이어 1994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 (2) 北韓 刑事訴訟法과의 關係

북한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재판활동을 규제하는 부문법으로서 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활동원칙 및 중요 소송제도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모두 재판원이 공개재판에서 사건을 심리해결하며, 제1심재판에는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인민참심원이 참여하고, 재판은 합의부 재판소를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송상 제도인 증거제도, 심급제도, 비상상소·재심제도 등은 그 본질을 같이 하고 있다.<sup>72)</sup> 그리고 북한의 민사소송절차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직권주의에 입각하고 있다.<sup>73)</sup>

한편 북한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sup>74)</sup>

72) 『민사소송법』, 전게서, 15~16면.

73)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 재판소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제12조) 양자의 연관성을 직접 인정하고 있다.

74)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 전게서, 460~461면.

첫째,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은 공민들의 재산상·가족법상의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데에 비해,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위한 소송활동을 규제한다. 따라서 전자는 민사실체법상 권리보호의 실현에 알맞는 민사소송형식을 요구하는데 비해, 후자는 형사실체법의 실현에 알맞는 형사소송형식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건관계자 자신에 의해 제기되는데 비해,<sup>75)</sup> 후자는 사건 피해자의 신청 유무에 불문하고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사건이 제기된다.

셋째,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준비절차가 강조되는데 비해, 형사절차에서는 수사와의 예심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소송의 목적이라는 면에서 민사소송절차는 근로자들의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거나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형사소송절차는 범죄자가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법의 부과에 목적을 두고 있다.

### (3) 北韓 仲裁法과의 關係

북한의 중재제도는 남한법에서 이해하는 중재제도와는 본질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76)</sup> 북한에서 중재제도는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인민경제계획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분쟁문제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명령과 지시의 절차와 사건당사자들의 변론에 따라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맞게 심리해결하는 국가권력적 활동”<sup>77)</sup>이라고 설명한다.

먼저 북한의 중재제도와 민사소송법의 공통점을 보면, 양자는 모두 민사실체법상의 권리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문제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변론에 기초하여 국가적으로 해결을 내리는 권력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국가중재기관은 재판소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해결의 주인으로서 중재절차의 지도적·결정적 지위에 있으며, 중재기관은 민사재판에서와 같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법규범을 해석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75) 이와 관련하여 북한 민사소송법은 검사에게 국가와 사회,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제63조)은 북한 민사소송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76) 북한 중재제도의 일반적인 중재제도와와의 비교에 관해서는 『北韓司法制度概觀』, 전계서, 401~408면.

77) 그래서 북한중재법은 “사회주의적인 경제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 사이의 인민경제계획과정에서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규률위반과 관련한 분쟁문제를 심리해결하는 중재기관과 사건당사자 및 사건관계자들의 활동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정의한다. 김정금·이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재법』(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11~14면; 『北韓法の體系的考察(1)』, 전계서, 467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sup>78)</sup>

다음 북한의 민사소송법과 국가중재재판제도의 차이점을 중재재판을 중심으로 다음에 살펴본다.<sup>79)</sup>

첫째, 북한의 중재재판제도에서 그 당사자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만이 될 수 있으며 그 재판대상도 인민경제계획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민사소송법과 다르다.

둘째, 중재재판의 제기는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 않으며 나아가 법적인 의무로까지 되어 있다. 더욱이 중재재판절차에서 당사자는 임의로 합의하거나 화해할 수 없으며, 사건당사자 또는 '개별적 일군'에게 행정적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다.

셋째, 중재재판절차에서 중재원은 판사와 같이 각급 주권기관으로부터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임명되고 있으며, 인민참심원은 중재재판에 참가하지 않으며 심리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재판과 구별된다. 아울러 중재재판은 심급제도가 채택되지 않는다는 점도 민사재판과 다르다.

#### IV. 北韓 民事訴訟法の 主要內容 및 特徵

다음에 1994년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1976년 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sup>80)</sup>

첫째, 민사소송법의 목적과 사명, 과업에 관해 1976년 민사소송법이 규정했던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에 따라 .....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제1조), '항일혁명투쟁의 계승'(제2조),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제3조), '조선로동당과 정부노선 및 정책의 옹호·관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전취물의 보위, 온사회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제4조) 등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적·계급적·이데올로기적인 색채를 완화하였다. 대신에 1994년 민사소송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보호'(제1조),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계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 진행'(제2조),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의 조건 평등'(제3조), '민사소송활동의 과학성·객관성·신중성 보장'(제5조) 등

78)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 상계서, 467면.

79) 『北韓司法制度概觀』, 전계서, 420면.

80) 1994년 民事訴訟法에 관한 分析은 「주간 북한동향」, 제209호(통일원 정보분석실, 1994. 12. 25~31), 32~40면; 「한겨레신문」, 1994년 11월 19일, 4면; 「世界日報」, 1994년 11월 23일, 9면;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통일사법정책자료 95-1 (법원행정처, 1995. 1), 9~84면.

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소송당사자의 권익 및 소송상 권리보장을 강조하였다.<sup>81)</sup>

둘째, 민사소송절차상 직권주의에서 당사자주의를 보다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역할과 권리보장을 일반규정으로 강조한 것(제2조, 제3조),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감정의뢰의 의무규정(1976년 민사소송법 제50조, 제57조)을 임의규정(제38조, 제47조)으로 변경한 것, 재판장이 필요한 경우 먼저 사건내용을 말하고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답변청취라는 직권개입규정(1976년 민사소송법 제105조)을 삭제한 것, 당사자의 증거조사요구권 및 참가권(제24조)을 신설한 것, 소송당사자와 사건 이해관계인에게 비상상소제기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제161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민사소송관련규정(제6조)을 신설하였다. 이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등을 민사소송의 주체로 인정하여 이들과의 분쟁발생시 섭외사법상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하여 향후 외국기업과 외국인과의 민사분쟁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외국인투자관련법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82)</sup>

넷째, 검사의 민사재판에 대한 역할과 인민대중의 재판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검사의 민사재판에 대한 감시규정(1976년 민사소송법 제9조)이 삭제되고, 재판심리에 검사가 참가하되 검사의 불참시에도 재판심리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94조). 또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에 따라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균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한다는 규정(1976년 민사소송법 제5조)도 삭제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반대중이 참여하는 인민재판적 요소를 완화하였다.<sup>83)</sup>

다섯째,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으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변호사와 당사자위임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추가(제35조), 기관·기업소·단체의 청구포기와 화해금지규정(1976년 민사소송법 제35조)의 삭제,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의 2회 재판심리불참시 기각된 경우 재차 소송제기의 인정(제97조), 증인의 구인제도 폐지, 소송관계자의 재판소구성원과 검사·재판서기·감정인·통역인·해석인에 대한 기피신청권 부여(제100조)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이혼을 개인주의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 이혼소송의 제기를 엄격하게 정한 특례규정(1976년 민사소송법 제12조, 제19조, 제26조 등)을 모두

81)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상계서, 9~11면.

82) 상계서, 16~19면.

83) 다만, 1994年 民事訴訟法도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제4조)고 하여 아직 裁判節次에 있어서 人民裁判的 要素를 존치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삭제하였다. 이로써 이혼과 관련하여 북한에서의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생활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하였다.<sup>84)</sup>

## V. 北韓 民事訴訟法에 대한 評價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사소송법은 본질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도구로서의 개념을 부정해왔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민사재판절차는 사회주의법의 정확한 집행과 사회주의 공동체생활 규칙에 대한 존경을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의 방지를 촉진하며 공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려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분쟁은 발생하지만 그 해결에 있어서 남아 빠진 민사재판절차에 의해 해결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념에 반한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 이론에서 법의 사멸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멸할 법이 민사소송법 등 민사관련법률이며, 중국적으로는 중앙집권적 행정절차와 인민들의 자율성이 그 기능을 대신할 것이라는 신념이 그 밑바탕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도 민사재판제도의 본질이 분쟁의 해결에서 당사자의 변론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민사소송제도는 존치되어왔다.<sup>85)</sup> 북한에서도 민사소송제도는 사회주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과도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따른 개혁·개방의 움직임에 따라 야기되는 경제활동에 의한 분쟁과 그 책임소재의 확정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1994년 민사소송법은 그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은 몇가지 면에서 그 발전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를 보면, 민사재판절차에서 정치사상적 성격<sup>86)</sup>과 직권주의 원칙을 완화하였다. 또한 검사의 소송상

84) 北韓家族法은 離婚制度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0조~제24조, 제39조 등). 이에 관한 詳論은 申榮鎬, “北韓家族法の 制定과 그 特色”, 전개논문, 144~151면.

85) 『北韓司法制度概觀』, 전개서, 183면.

86)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관한 해설서도 형식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민사소송법 해설서는 『민사소송법』(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78)과 『민사소송법』, 2판(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7), 『민사소송참고서』(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1), 『민사소송법학(법학과용)』, 3판(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2) 등이 있는데, 최근의 저술들에서는 1978년 교과서와는 달리 책차례에서 모든 제도앞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상계서, 186면.



역할을 감소시키고 인민대중의 재판관여의 폭을 축소시키는 등의 개혁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민사재판절차에서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즉, 김일성·김정일의 교시 및 말씀과 그에 기초한 당정책의 최고법규성, 민사재판대상의 축소, 재판소의 지도적·결정적 지위와 변론주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제한 또는 배제와 직권탐지주의의 채택, 적극적·실체적 진실주의와 소송당사자의 진실의무의 강조, 재판준비절차의 강화, 재판감독절차로서의 비상상소 및 재심제도, 검사의 광범위한 민사재판·집행절차의 참여, 판결의 법령적 효력과 짧은 집행시효기간의 설정, 인민대중의 민사재판절차에의 관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분리 불철저 등이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의 민사소송제도가 공민 등의 민사상·소송상 권리는 결국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국가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개인소유의 대상은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살림집, 가정용품, 문화용품, 승용차 등으로 제한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의 빈도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도 민사재판절차에 의하기 보다 국가중재판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민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87)</sup> 이런 면에서 북한에서 민사재판의 사회적 비중과 역할은 한정된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87) 북한에서 민사재판은 이혼 및 부양료청구사건, 양자 등 가사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사사건을 제외한 순수한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대여금청구소송, 물건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계서, 189면.



## 第3章 北韓 民法上 用語의 概念

### 第1節 一般制度에 관한 用語의 概念

#### ○ 민 법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민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당사자들이 서로 독자적인 대등한 당사자로 나서는 그러한 경제관계의 분야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 규제대상은 이들 분야에서의 “가치법칙과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작용을 고려함과 관련한 재산적 관계 및 이와 관련된 인격적 관계”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북한에서의 민법에 관한 정의에 의하면, 북한민법을 사회주의의 제민법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의 몇가지 면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북한민법은 개인간 또는 개인과 사회주의적 제기관간, 국가기관간, 그리고 국가기관과 사회기관 사이의 경제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이 점에서 북한민법은 경제법 내지 계약법과 같이 독립분야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법분야를 규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은, 민법이 해당 당사자들이 서로 독자적인 대등한 당사자로 나서는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일방의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명령과 그에 대한 복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제관계는 민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로 북한민법은 경제법의 대상이 되는 경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법은 민법과 경제법을 관계를 이원적으로 보지않고 일원적인 관점에서 보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수직적 경제관계와 수평적 경제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두 입장이 있었다. 한 입장은 전자를 행정법의 대상으로 하고 후자를 사회주의 제기관과 시민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민법의 대상으로 하자는 견해이었으며, 다른 한 입장은 양자를 모두 경제법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론에 입각해 있었다. 이 가운데 북한은 구소련법이론에 따라 경제법을 배척하게 됨에 따라 경제법의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넷째로 북한민법은, 국토관리법, 재정법, 노동법 등은 각기 그 법에 관계된 경제관계만을 규율한다고 봄으로써 이들 법들이 규율하는 분야는 민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섯째로 북한민법은 가족법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혼인, 가족관계, 상속관계 등에 속하는 경제관계는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민법의 규율대상은 민법이 일반적으로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반 경제분야에서의 연관성에 따라 여타 법분야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의 민법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계법조항	<p>민법 제1조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관계와 그와 밀접히 결부된 인격적 관계를 규제하는 부문법, 민법을 주로 등가보상적 성격을 띠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민법은 재산적 성격을 띠지 않는 인격적 관계(창의고안자,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규제한다. 민법이 규제하는 인격적 관계는 재산적 관계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화국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소유권 제도이다. 우리 민법을 사회주의 국가 소유보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채무관계, 저작 및 창의고안관계, 상속관계들도 규제한다. 가족관계는 민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독립적인 법부문인 가족법에서 규제한다. 공화국 민법은 소유권, 법인, 경제계약 등에 관한 규범들을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 토대를 공고 발전 시키며 기업소에서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인민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공민,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의 재산 및 인격관계를 규제하는 법.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공민들사이의 결혼 및 가족관계도 민법에서 규제한다. 민법에서 규제하는 재산적 관계는 당사자들의 독자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사자들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한 지위에 있다.</p> <p>민주조선(1991. 4. 23.)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p> <p>공화국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재산관계를 규제하고 있다.</p> <p>우리의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우선 우리의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나라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이는 공화국민법이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적극 기여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민법이라는 것을 말한다.</p>

### ○ 사회주의 경제제도

일반적으로 경제체제 내지 경제제도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내에서의 경제활동, 즉 생산, 유통, 분배,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질서의 총체를 말한다. 이 경제체제의 형태는 크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제도)는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을 특징으로 삼는다. 특히 북한은 모든 경제건설의 기본목표를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달성에 두고 있다. 이를 보면, 사회주의 원칙하에서만 공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화를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주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혁명을 완수하는 물질적 생활기반을 보유한 참다운 사회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인한다.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이어받아 이른바 스탈린식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명령·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현재에도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북한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사실상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제의 생산, 생산물의 분배, 통화·수입·수출 등 모든 부문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민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체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p> <p>민법 제3조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명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하며 노동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는 선진적인 경제제도.</p>

## II. 民事法律關係의 當事者에 관한 用語

### ○ 당사자

일반적으로 민법은 대등한 당사자들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한다. 다시말해 경제적 독자성을 가진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로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경제적 독자성을 가진 당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그들이 자신의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련한 것이다. 북한민법은 민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와 관련하여 앞의 문제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그 일반제도의 하나로서 '민사법률관계당사자'에 관한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민법에 의하면, 법률관계당사자에 관하여 국가를 비롯하여 개별적 기관, 기업소 및 단체, 그리고 공민에 관하여 그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민법은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민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 자연인 이외에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즉, 북한민법상 공민에 관한 제도는 우리 민법상의 자연인에 관한 제도에 해당한다. 또한 기관, 기업소 및 단체는 우리의 법인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한편 북한민법에서 공민과 법인, 즉 자연인과 법인 이외에 국가를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자본주의 국가의 민법과 다른 점이다.

관계 법 조	민법 제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당사자진술은 당사자들의 민법상 권리의 실현을 적극 보장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온 제도의 하나이다. 민주조선(1991. 4. 23.) :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예산제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들이 민사상권리의무관계(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자격, 즉 민사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민사권리능력을 소유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 기관 · 기업소 · 단체(법인)

북한의 기관 · 기업소 · 단체들은 그들의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민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각종의 경제관계에 관여하게 되며 그에 따르는 민법상 권리의 무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특히 국가경제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은 인민경제 계획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료, 자재 또는 제품의 공급과 봉사의 제공에 관련된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따르는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관 · 기업소 · 단체들은 또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직접 책임을 지며 중재 또는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이와 같이 민법상 법률관계당사자로서 행위하는 기관 · 기업소 · 단체들을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북한민법상 법인이란 “일정한 경제적 독자성과 통일적 조직기구를 가지고 자기 앞으로 민법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지닐 수 있는 기관·기업소·단체”를 일컫는 것이다.

한편 법인으로서의 기관·기업소·단체들은 자신의 임무와 과업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되는 자격 즉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는다. 또한 이 법인의 권리능력은 그 임무와 과업에 상응하게 서로 다른 범위에서 인정된다(북한민법 제12조, 제13조 참조).

북한민법은 제13조제2항에서 “기관·기업소·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합목적적 임무와 과업에 모순되는 법률행위로 인정된 법인의 행위는 위법적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가 되며, 그러한 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국고에 몰수된다(북한민법 제26조). 예컨대 생산협동조합이 자신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임무와 과업에 어긋나게 다른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넘겨와 파는 것과 같은 도매행위는 위법적인 것으로 되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의거하여 이미 이행한 것은 국고에 귀속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기관 - 사회생활의 이러저러한 영역에서 일정한 기구정원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 단체 - 같은 목적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 ‘법인(기관·기업소·단체)의 소멸’: 해산

북한민법은 제16조에서 기관·기업소·단체(법인)가 분리 또는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민법상 권리의무도 그에 합당하게 분할 또는 통합되며, 법인의 폐지 또는 자진해산 결정시에는 청산인이 채권채무관계를 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소멸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민법은 법인의 소멸에 관하여 원칙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법인의 양도 또는 해산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소멸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북한에서는 국가가 법인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점을 통해 볼 때 결국 국가가 정한 지시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양도 또는 해산된다고 할 것이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6조 :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도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단체 같은 조직체를 폐지하는 것.

○ 관리책임자(대표자)

북한민법상 법인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자인 관리책임자가 행하거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관·기업소·단체는 법률행위를 자신의 대표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관·기업소·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각각 그 관리책임자이다(북한민법 제41조제1항). 법률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대표자가 하는 의사표시는 곧 그 기관·기업소·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행위로 간주된다. 기관·기업소·단체는 필요한 법률행위를 직접 그 대표자를 통하여 수행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북한민법 제14조제2항). 예컨대 “기업소의 지배인이 업무 일꾼들을 통하여 기업소의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리책임자의 대표권의 범위는 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대표자가 그 직무범위내에서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북한민법 제15조).

남한 민법상의 법인의 기관에 관한 제도와 북한의 법인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법인이 법률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두고 있는 점에서는 남한 민법상의 제도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사 내지 이사회와 같은 대표기구를 두지 않고 대표자가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점이나 감사와 같은 감독기구를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남한 민법상의 제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4조 :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4. 23.) :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가 가지는 민사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하며 대표자나 대리인이 한 행위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 행위로 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



○ 대리인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의 법적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치게 된다. 위탁받은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위탁한 사람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과도 위탁한 사람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하여 발생하게 된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으로써 법률행위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북한민법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대리인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다. 이런 점에서 대리인은 기관·기업소·단체의 대표자와 구별된다. 기관·기업소·단체의 대표자의 행위는 바로 해당 기관·기업소·단체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14조 :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지닌 권한과 의무를 맡아서 행사하는 사람. 민주조선(1991. 4. 23.) :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대리는 신임에 기초한 행위인것만큼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대리행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이 결과나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며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p>

○ 미성인(제한적 행위능력자)

북한민법상 미성년자 즉 17세 미만인 자는 완전한 행위능력은 가지지 못하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행위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모든 범위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관한 경우

이다. 미성년자일지라도 자신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상적이고 사소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이나 동의없이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그러한 자는 노동이 가능한 연령에 달한 것이므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타인의 도움이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법률행위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민법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주의민법인 러시아공화국민법의 태도와는 구별되고 있다. 러시아공화국민법 제12조 내지 제14조는 성년연령을 18세로 하되 미성년자를 구분하여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적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능력을 전적으로 부인하여 후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북한민법도 초기에는 미성년자를 구분하여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부모 또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적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인정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를 그 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지 않고 미성년자 스스로 행한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은 그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였을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며 그러한 취소행위가 전까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한 행위로서 존속한다.

관 계 법 조 항	<p>민법 제20조 :</p> <p>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 자는 자기가 받은 노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p> <p>민법 제21조 :</p> <p>16살에 이르지 못한 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그러나 6살 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p> <p>민법 제28조 :</p> <p>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p>
-----------------------	---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병등 기타의 신체상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민법상 행위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제도. 우리나라 후견은 16살미만의 어린이와 재판소로부터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선고된 성년자(폐하면 정신병자, 정신박약자)의 인격, 그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후견은 행위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설정되는 점에서 제한된 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설정되는 보좌와 구별된다. 16살미만의 어린이나 행위무능력 선고를 받은 사람의 부모나 배우자는 특별한 결정이 없어도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기타의 사람은 권한있는 국가기관의 선정이 있어야 될 수 있다. 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어린이나 행위무능력자를 당과 국가에 충실한 일군이 되도록 교육교양하며 그의 건강을 보호증진 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 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후견인의 선정과 그에 대한 감독은 시·군(구역)인민위원회가 한다.</p> <p>민주조선(1991. 4. 23.) :                  1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은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자기의 민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것 또는 그러한 제도.</p>
-------------	---

○ 성인(완전행위능력자)

북한민법상 공민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즉, 성년에 달함으로써 공민은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된다. 성년연령을 정함에 있어서 북한은 민법관계법규에서 초기에는 18세를 성년연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북한민법에서는 그 태도를 바꾸어 17세 이상인 자를 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북한민법 제20조). 북한민법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북한헌법 제66조에서 공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17세 이상인 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20조 :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 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른                  ※성년이 된 나이의 사람.</p> <p>민주조선(1991. 4. 23.) :                  민법에서는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공민의 성인나이를 17살로 규정하고 있다.</p>

## ○ 인 정

북한에서는 1958년 초안에서 소재불명자인정제도와 사망인정제도를 두고 있었다. 이는 남한 민법상의 부재와 실종에 관한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그것이 민법초안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956년 3월 최고재판소 민사부에 의하여 '사망선고'가 행해진 사실이 북한문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한 차례의 사망선고를 제외하고는 초안 이후에도 사망선고제도는 실행되지 않았으며, 다만 1년 이상 소식이 끊어져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민을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소재불명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재산관리가 행하여졌을 뿐이라고 한다. 현행 북한민법은 제22조와 제23조에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하는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민법 제22조 :</p> <p>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p> <p>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협을 준 사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p> <p>민법 제23조 :</p> <p>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어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확실하게 그렇다고 여기는 것 또는 보고 이리이러하다고 확정하는것.</p>

## ○ 소재불명자 인정

북한민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상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협을 준 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민법에 의하면, 소재불명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 즉 그가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어 소재를 알려온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증기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3조).

<p>관계법조</p>	<p>민법 제22조 :                  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p> <p>민법 제23조 :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어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1년 이상 소식이 끊어져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국가적으로 인증함으로써 그가 남기고 간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와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조국해방 전쟁시기에 조성되었던 복잡한 사정과 관련하여 소식을 모르는 사람의 재산상의 문제와 신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공민에게 부모와 배우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인이 지정된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공민에게 부모와 배우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인이 지정된다. 소재불명자로 인증된 공민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던 사람은 그의 재산 가운데서 부양료를 받을 수 있고 소재불명자로 인증된 공민이 진 빚은 그의 재산 등에서 지불되며 인격적 성격이 면 계약관계(위임계약)는 저절로 없어진다. 소재불명자 인증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한다. 소재 불명자로 인증된 사람이 종래의 주소지에 돌아 왔거나 그가 있는 곳이 알려진 경우에는 본인,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증기관은 소재불명자 인증을 취소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거주지를 떠나 일정기간 소식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소재불명자로 인정하는 것.</p>

○ 사망자 인정

북한민법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자인정의 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재불명자인정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 즉 그가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어 소재를 알려온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증기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북한민법 제23조).

관 계 법 조 항	<p>민법 제22조 :</p> <p>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p> <p>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협을 준 사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p> <p>민법 제23조 :</p> <p>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어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오랜기간 거주지를 떠나 소식이 없는 사람을 국가가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것.</p>

○ 행위무능력(자)

북한민법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행위의 의의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과 재판소의 판단에 의하여 행위무능력자로 인정되고 그 경우 그러한 자의 모든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재판소는 의학적 감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건전한 정신상태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역시 의학적 감정을 근거로 하여 재판소가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공화국 민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정신병 또는 정신박약으로 인하여 자기행위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를 행위무능력자로 하고, “알콜이나 약물의 남용으로 인하여 가족으로 하여금 중대한 재정적 불이익에 놓이게 한 공민”을 처분능력제한자로 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제한적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민법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민사관계법(「후견인 또는 보좌인 선정 및 감독에 대하여」)은 “재판소로부터 무능력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후견인을 두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를 옹호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좌인을 두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그 법 시행 당시에는 후자의 경우에 제한적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민법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의 경우와 달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낭비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북한의 실정상 낭비자는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민법은 정신장애자를 두 가지로 나누지 않는 것 같다. 이점에서 북한민법의 태도는 우리 민법뿐 아니라 구소련민법의 태도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p>민법 제26조 :</p> <p>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행위무능력 - 법에서 개별적인 사람이나 법인이 주어진 법적권리나 의무를 자기 자신의 행위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상태. 정신병자는 행위무능력으로 본다.                  행위무능력자 -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p>

○ 계약

북한민법상 채권채무관계는 대부분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며, 또 변경, 소멸하게 된다. 이는 남한민법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북한에서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에서의 자재 또는 상품의 공급을 비롯하여 농업생산물의 수매, 기본건설의 시공, 화물수송, 일반적인 매매, 작업봉사, 사용대차, 보험, 일반적인 소비대차, 은행대부 등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들은 모두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계약은 어떤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과 더불어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며, 그밖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시킨다.

북한민법상 계약은 권리와 의무의 설정이나 변경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행하는 행위, 예를 들면 불법가해행위와는 구별된다. 계약은 2인 혹은 그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법률행위, 즉 쌍무행위에 해당한다. 계약은 통상 2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법률행위로서 1인의 단독적 법률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독적 법률행위와 구별된다. 이러한 계약의 일반적 개념은 남한 민법상의 계약의 개념과 마찬가지로이다.

북한민법상 계약의 종류는 그 내용과 절차에 따라 비현물계약과 현물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등으로 구분됨으로써 이 또한 남한민법과 대체로 그 분류가 일치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민법은 계약을 계획적 계약과 일반계약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남한민법상 계약의 분류와 다른 점이다.

관계법조항	<p>민법 제4조 :</p> <p>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p>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민법상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킬 데 대한 두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계약당사자로 될 수 있는 것을 개별적 공민과 법인의 자격을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다. 당사자들간의 합의는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그에 대한 상대편 당사자의 승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을 보통 이때에 체결된 것으로 한다. 계약이 법적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형식과 내용이 공화국 법의 요구에 맞게 맺어져야 한다. 만일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고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되거나(레하면 서면 형식을 갖추지 않은 공급계약) 유효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레하면 말로서 성립된 계약은 재판할 때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계약의 내용(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 조건(내용)이다. 계약의 본질적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대상과 가격 및 계약당사자가 포함된다. 계획적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에 관한 규정에서 열거한 모든 계약내용들이 본질적 조건으로 된다. 우리나라에서 계약은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에서 계획과제를 구체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 계획실행을 통제하는 법적 수단으로 된다.</p> <p>민주조선(1991. 5. 10.) :</p> <p>계약제도에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계획적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일반계약)이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서로 관계되는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하는 약속.</p>
------	--

### ○ ‘계획적 계약’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계획적 계약)’에 관하여 북한민법은 제2장 제90조 내지 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계획적 계약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계획계약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규정들이고, 다른 한 부분은 각종 계획계약에 관한 규정들이다.

전자의 규정들은, 계획적 계약의 의의(제90조), 계약당사자의 계약체결상의 의무(제91조), 계약의 체결과 중재(제92조) 및 인민경제계약의 변경에 따른 계약의 변경(제93조)의 네 개 조문이다. 말하자면 이 규정들은 곧 각종계획계약의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민법전은 종래의 계약법이론이 모든 계약의 통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한꺼번에 규정한 것과는 다른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후자의 규정들은, 자재공급계약(제94조~제101조), 상품공급계약(제102조~제108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제109조~제116조), 기본건설행공계약, 결제계약, 은행자금계약, 국가보험계약 그리고 농산물수매계약의 8가지를 인정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계획적 계약의 특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그 당사자로서는 인민경제계획과제를 받는 기관·기업소·단체만이 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계약의 체결은 의무적이라는 점, 계획과제를 받은 기관·기업소·단체들은 정해진 기간안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 계획적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할 사항들은 법에 미리 정해져 있으며 계약기간이 길다는 점,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p>민법 제4조 :</p> <p>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국가계획과제에 기초하여 그 과제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경제기관, 기업소들간에 체결되는 계약, 경제계약이라고도 한다. 계획적 계약을 계획수행과정에서 경제기관들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규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며 사회주의 경리의 계획적 운영을 철저히 보장한다. 계획적 계약에는 공급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화물수송계약이 속한다. 또한 계획수매 제도가 일반화 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수매계약도 계획적 계약의 한 형태로 된다. 계획적 계약은 계획과제의 성과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하여는 특히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p> <p>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모든것이 계획적으로 생산되고 계획적으로 공급되며 계획적으로 소비됩니다. 더우기 전 인민적 소유에서는 생산, 공급, 소비가 완전히 계획화 됩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 문제에 대하여 19~20면).</p> <p>민주조선(1991: 5. 10.) :</p> <p>계획적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호상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그밖의 계약들은 일반계약에 속한다. 계획적 계약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이라고 할 때 그 계획은 계약을 맺는 량편 당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시달되는 계획, 쌍방 의무성을 띠는 계획을 넘두에 둔다.</p>

### ○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

북한은 사회주의 관리원칙에 대하여 “사회주의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로동당은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행정기구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경제운영 역시 당의 전반적인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배합원칙,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 독립채산제의 실시원칙 등이며, 이 원칙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경제 지도 및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형태는 크게 농업관리체계에서의 이른바 ‘청산리방법’과 공업관리체계에서의 이른바 ‘대안의 사업체계’를 들 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에서의 현지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경제관리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대안의 사업체제도 역시 1961년 12월 김일성이 평남 대안전기공장에서이 현지도를 통해 제시된 것으로 청산리방법을 공업부문에서 구현한 관리형태인 것이다. 이와 함께 상업유통 관리 부문에서의 관리체계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상업·유통 및 가격체계에 관한 것인데, 전자는 소유형태·시설·운영면에서 그 관리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후자도·소매가격, 구매가격,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관리원칙을 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경제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부문들에 대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서 이에 관한 법제의 변화는 그러한 양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2년에 「사회주의상업법」과 「도시경영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대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자본주의의 경제관리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관 계 법 조 항	<p>민법 제5조 :</p> <p>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사회주의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p> <p>헌법 제33조 :</p> <p>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 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 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사회주의경제관리 -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과 생산집단 들의 활동을 조직 지휘하는 것.</p> <p>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 - 사회주의 경제를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원칙밑에 조직된 경제관리 기구와 그 기능의 총체.</p>

### ○ 계약규률

북한민법상 계약은 일정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정한 절차를 걸쳐 체결되는데, 여기서 그 형식과 내용 및 절차가 계약체결의 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북한민법상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계약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결하게 된다. 법이 서면형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하는데, 바로 이때의 준칙을 계약규률이라고 한다. 특히 북한은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에 대한 준칙을 강조하고 있다.

<p>관계법조</p>	<p>민법 제5조 :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사회주의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진 의무를 정확하게 리행할 데 대한 준칙. 우리나라에서 기관, 기업소들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합의된 조건대로 리행될 때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규률의 정확한 준수는 계약의 본질적 요구로 된다. 특히 사회주의적 기관, 기업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 과제의 성과적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계약규률은 곧 계획규률과 결부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진 의무를 정확하게 리행할 데 대한 준칙이나 규범. 공장, 기업소들이 계약규률을 철저히 지켜야만 자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뿐 아니라 전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국가 계획의 성과적인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김일성저작선집(4)(566면)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 원자재와 반제품 생산을 앞세우고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하여 협동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단위들에서 계약 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p>

### Ⅲ. 民事法律行爲에 관한 用語

#### ○ 법률행위

북한민법상 법률행위란 일정한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인정, 변경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제24조).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법률행위제도라고 한다. 예컨대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에서 상품공급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상품공급계약을 비롯하여 그밖에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 또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 상호간에 체결하는 각종의 계약들이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제도는 민법이 규율하는 경제관계의 특성, 즉 법률행위 당사자들이 가지는 독립성을 반영한 제도로서 국가기관, 기업소들이 경영상의 독자성을 가진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하나의 필수적인 제도이다.

북한은 북한민법상의 법률행위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과장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의 원만한 충족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위법적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거래한 것을 몰수하게 되어 있는 민법규정(민법 제26조, 제27조)이라든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사기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교부한 것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사기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그가 이행한 것은 몰수하게 되어 있는 규정(민법 제28조, 제29조) 등으로부터 북한민법상 법률행위제도의 목적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p>민법 제7조 :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p> <p>민법 제26조 :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4. 23.) :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보호를 받는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공민의 실천활동.</p>

### ○ 법률사실(사건)

법률행위의 일반적 형태로서 계약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다. 예컨대 기관·기업소·단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공급계약의 경우 이는 상품공급에 관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할 목적하에서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발생이나 변경 또는 소멸은 법률행위에만 기초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기간의 경과'와 같이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연적인 사실들도 그 기초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일정한 자연적 사건이 법률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예로는 시효기간의 경과나 개별적 공민의 사망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률행위와 법률사실로서의 그밖의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 구별의 기준은 일정한 법적 효과, 즉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설정이나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목적지향성에 있다. 예컨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가해행위는 법률사실로 인정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불법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데 대한 채권채무관계로서 손해보상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해자는 그 행위의 법적 효과인 손해보상채권채무관계의 발생을 목적하지 않음으로 법률사실은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구별된다. 여기서의 목적지향성은 그에 대한 의사의 표명으로 나타나게 된다.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7조 :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p> <p>민법 제38조 :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의 발생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루어진다.</p>
<p>복합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법규범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계기로 인정하는 사실. 어떠한 사실을 법률사실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법규범에 포함된 지배계급의 정책적 요구에 의존한다. 지배계급이 법적의의를 부여하고 해당 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실로 될 수 있다. 지배계급이 인정하는 법률사실은 사회경제제도 및 계급들의 정치투쟁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법률사실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의 의사에 의존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행위와 사건으로 구분한다. 행위는 사람들의 의사표시이며, 사건은 출생, 일정한 시간의 경과, 화재 등과 같이 사람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진행되나 사람들에게 일정한 권리·의무를 발생·소멸시키는 계기로 될 수 있는 사실들을 말한다. 행위는 법질서에 적용한 행위와 그에 어긋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법질서에 적용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중에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에 해당하는 법적효과들이 부여되는 행위(법률적 행위)가 있다. 국가관리 행위나 민사상 법률행위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행위자들의 의사나 목적과는 관계없이 행위의 객관적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법적효과들을 발생케 하는 행위가 있다. 근로자들이 노동자, 사무원으로 취업하는 행위를 근거로하여 사회보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즉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범죄적행위, 행정법상 위법행위, 규률적과오, 민사상 위법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법적제재들이 가해진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으로 되는 사실. 행위와 사건의 두가지가 있다. 결혼등록을 하면 부부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결혼등록은 행위로서 법률사실로 된다.</p> <p>법률관계 - 지배계급의 의사를 표현한 법규범이 사회관계를 규제함으로써 그 참가자들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 권리·의무관계. 사회주의적 법률관계는 인위적이며 호상협조하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착취 사회에서의 법률관계는 절대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법률관계는 법규범에서 예견된 일정한 행위나 사건(법률사실)이 있을 때에 발생, 변경, 소멸된다. 법률관계는 당사자, 내용 객체의 세가지 요소들로써 구성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란 법규범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회관계의 참가자들이며 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내용이란 그 당사자들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로서 그것은 서로 대응한다. 법률관계의 객체란 당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또는 수행하지 말아야 할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법률관계는 언제나 사람의 행위에 지향된다. 재산적 법률관계에서도 그것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가 아니라 물건을 둘러싼 사람들간의 관계인 것만큼 객체로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행위이다.</p>

○ 사회주의 사회생활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를 집단주의에 두고 있다. 북한헌법은 북한사회의 집단주의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헌법은 제10조에서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조직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고 명시하여 사회를 하나의 집단화하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63조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 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에 기초한다”고 하여 집단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82조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 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민법은 제8조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민사관계에서도 집단주의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원칙은 정치교화정책을 통해 전주민을 의식화하고, 어릴 때부터 각종 조직 및 단체생활을 통해 행태화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개인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이 우선 되며, 혁명을 위한 유일사상체계의 전반적 사회가치가 지배되며, 사회성원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 및 공산주의 교양사업의 체계화가 강조되며, 수령과 당의 결정에 대한 전체인민의 복종이 강요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집단주의는 북한의 민사관계에서도 개인주의를 배격하는 상황에서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8조 :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에서 진행되는 사람들의 생활. 또는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일반생활을 (학생생활) 또는 (군대생활)과 같은 집단생활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중재(절차)

북한은 국가중재에 관하여 “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 국가의 유일적인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맺고 그것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발로되는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과 관련된 중재사건에 대하여 시비를 가르는 국가활동"이라고 한다. 이에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경제기관·기업소·단체의 경제거래관계를 국가의 유일한 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제때에 정확히 맞물려주고 어김없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가가 경제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계획, 계약규율을 세워 나라의 자연자원과 원료·노동력 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제기관·기업소들의 계획과정에서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현상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통제를 시행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고 국가와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업무수행은 통상의 재판소조직이 맡기에는 부적당하여 국가중재제도 또는 국가중재재판제도를 통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 국가중재제도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경제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들 사이에 제기되는 경제적 분쟁이라 하더라도 인민경제계획과 무관하여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민사분쟁은 국가중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p>관계법조</p>	<p>민법 제9조 :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 또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주의적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인민 경제계획 수행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을 심의 해결하는 활동. 여러가지 면에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취급되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의 중재부서가 심리해결한다. 중재사건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결원의 결심에 의하여 제기되며 재결원 한 명이 심리한다. 중재에는 심급제도가 없고 재심제도가 있을 뿐이다. 재결원은 분쟁사건을 심리하고 계획 및 계약규율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위약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체재를 가한다. 중재는 계획 및 계약규율을 강화하며 경제기관들에서의 독립채산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조선(1991. 5. 10.) :                  계획적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지며 계약을 맺는데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계획에 기초하여 맺은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에 시비를 가리는 중재기관의 활동. 국내중재, 무역중재, 해상중재, 국제중재가 있다.</p>

○ 합영회사

북한의 합영회사는 1984년에 제정된 「합영법」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서 외국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북한기업과 합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다. 북한의 1990년 민법은 민사관계의 당사자로서 국가기관·법인·공민의 세가지 외에 합영회사를 추가하였다. 즉, 북한민법은 제11조에서 “민사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라고 하고, 이에 추가하여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민사권리능력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한 배경은 북한이 국제질서의 변화에 의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대외경제의 일부개방 내지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의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합영회사를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인정함으로써 종래의 단위인 기관, 기업소 내지 단체의 개념과 다른 새로운 단위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1조 :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서로 다른 기업체나 회사들이 공동출자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회사.

○ 예산(경비예산)

북한에서 예산은 경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재정계획으로서 기업 및 경제조직에서 조성된 화폐를 계획적으로 분배하고 기업 및 경제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중앙집권적 방법을 통해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예산체계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중앙기관들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형성하여 이용하는 예산을 말하며 국가예산의 기본을 이룬다. 중앙예산이 적용되는 기관은 대규모 국영기업소와 기관, 철도·운수기관 등 전국에 걸쳐 있는 기관이나 기업소, 사회문화기관이나 사회안전·사법·검찰·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다. 그 주요수입원천은 중앙집중적 순소득인 거래수입금과 국영기업의 국가기업이익금, 지방예산으로부터의 이전금, 가격편차 수입, 국가재산판매 수입 등이며, 그 주요지출대상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건설, 유동자금 등), 군사비 및 중앙기관관리비 등이다.



후자는 일정한 행정단위내에서 지방살림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형성하여 이용하는 예산을 말한다. 지방예산의 대상기관은 중·소규모의 기관이나 기업소, 사회문화기관 등이다. 여기서의 주요수입원은 지방예산 대상기관·기업소의 거래수입금, 협동단체이익금, 편의봉사료 및 중앙예산의 보조금 등이 있으며, 그 지출대상은 지방산업 및 농촌경리와 지방산업건설, 지방의 도시경영, 교육, 문화, 보건부문과 지방기관관리비 등이다. 여기서 경비예산이란 경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액을 국가로부터 받아쓰는 예산제기관의 재정 계획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1조 :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경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액을 국가로부터 받아쓰는 예산제기관의 재정 계획.

### ○ 독립채산제

북한에서 독립채산제는 기업소들이 국가의 유일적 계획에 따라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 밑에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띠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 지출되는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면서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합리적인 계획적 관리운영방법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경제제도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기업운영 및 생산조직상의 형식주의와 낭비, 국가재산 애호정신 결핍, 개인이기주의·기관본위주의·지방본위주의적 사업태도, 노동제일주의에 대한 의식결여 등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것이었다.

독립채산제는 북한에서 모든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제관리 원칙으로 대상기관 및 실시정도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2중독립채산제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완전독립채산제는 196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본 형태이다. 북한 경제는 국가의 계획적 관리에 의해 움직이므로 모든 부문 및 단위들의 생산활동이 계획하에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그 부문 및 단위에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단위별 채산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계획적 경제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립채산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는 결국 중앙계획에 의해 공급되고 제한받는 노동력·자재·자금의

절약, 비생산적 지출의 감소, 노동생산성의 제고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의 제기되고 있다. 그 원칙들은 중앙집권적 계획·관리, 기업소운영의 융통성, 상품과 화폐간의 적절한 배합 등이며, 이와 함께 정치적·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이 옹계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붉은기쟁취운동 등을 강화하면서도 작업반우대제 내지 분조관리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그 운영면에서 일부 하부경제단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1984년부터 이전의 독립채산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장 및 기업소 등에 이를 적극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의해 북한의 기업관리체계는 생산계획의 수립과 평가, 자재공급체계 등에서 분권화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중앙집권적 관리체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1조 :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기업소들이 국가의 유일적 계획에 따라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 밑에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띠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 지출되는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면서 국가에 리익을 주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합리적인 계획적 관리 운영 방법. 기업소의 경영활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높이며 경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 리용을 전제로 한다. 독립채산제는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생산자들의 생산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고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게 한다. 독립채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나가면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리익을 주는 합리적인 경영관리 운영 방법입니다. 독립채산제는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김정일)

### ○ 행위능력

공민의 민법상 행위능력이란 공민이 민법상 법률행위, 즉 민법상 법률관계에 들어서거나 그것을 변경 또는 소멸시킬 것을 목적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된 능력을 말한다. 공민의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제도는 민법상 권리능력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제도로서, 민법상 권리능력제도가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로 되는 법적 지위에 관한 제도라면 민법상 행위능력제도는 이러한 지위를

실현하며 권리의무관계를 인정하는 데 혹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데 필요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민법상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가지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제19조). 그러나 행위능력 또한 모든 공민에게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북한민법상 공민의 행위능력에 관한 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공민의 분별없는 행위로 인하여 그들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따라서 북한민법은 행위능력의 인정에 있어서 연령을 일반적 척도로 삼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법 제12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민법 제17조 :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민법 제20조 :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 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공민 또는 법인이 자기의 행위로써 권리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권리실현과 의무의 리행이 공민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리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권리능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공화국에서 로동법상 행위능력을 공민이 만 16살에 달하였을 때 로동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공민의 인격과 결부되지 않는 권리의무의 실현은 그 공민의 직접적 참가 없이도 가능하며 이 경우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분리될 수 있다. 공화국에서 민법상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발생되나 행위능력은 만 16살에 달하였을 때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하며 만 17세에 달하여야 완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16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대리인(부모, 후견인)을 통하여만 민사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위능력은 그의 창설과 동시에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행위능력제도는 어디까지나 공민에게 부여된 권리의 원만한 실현을 보장하는데 복무한다.                  민주조선(1991. 4. 23.) :                  공민의 민사행위능력을 일정한 나이에 이른자들에게만 주는 제도는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청소년들의 리익을 보호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에서 공민이나 법인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제함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한 능력.</p>

## ○ 권리능력

민법상 권리능력은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북한민법상 기관·기업소·단체들은 이러한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민법상 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가지며, 법이 정한 방법으로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민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되는 기관·기업소·단체의 설립 및 폐지, 그들의 민법상 권리능력의 발생 및 소멸은 모두 법정의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이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규제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이라는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북한민법상 국민의 권리능력의 취득 및 상실과 그 범위는 법에 의해 정해진다. 북한민법은 제19조에서 국민은 출생과 함께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권리능력은 평등하며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국민의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민법상의 국민의 권리능력은 개개인의 자연적 속성이 아니라 인위적인 하나의 법적 제도로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여한 법률상의 자격인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능력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북한민법의 규정과 남한 민법의 규정을 비교하여 볼 때 그 법문의 표현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 북한민법은 제19조에서 “국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국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국민의 민사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남한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남한 민법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지 국가나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 뿐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천부적 권능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신분이나 능력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민법이론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능력은 사람이 가지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의 법적 제도로서 국가가 그것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민법 제19조에서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국민의 민사

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마치 권리능력의 제한가능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법률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가능성을 명문화함으로써 결국 권리능력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p>관계법조</p>	<p>민법 제12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p> <p>민법 제13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p> <p>민법 제17조 :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p> <p>민법 제19조 :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공민 또는 법인이 권리·의무를 지니며 그를 실현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인정받은 자격, 공민 또는 법인이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일반적인 전제 또는 가능성이 권리능력이다.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민의 권리능력은 그의 출생과 함께 발생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은 그 창설과 함께 발생한다. 일정한 생활분야에서의 권리능력은 공민의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에야 생긴다. 공민은 권리능력을 직접 자기의 행위로써 실현(행위능력)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실현할 수도 있다. 근로자들의 참된 권리능력은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p> <p>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지닐수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된 공민 또는 조직체의 자격, 공민의 권리능력은 그의 출생과 함께 발생한다.</p> <p>민주조선(1991. 4. 23.) :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예산제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들이 민사상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자격 즉 민사상 권리를 가질수 있는 민사권리능력을 소유한다.</p>

○ 본신임무

북한에서 민법상 법률관계당사자로서 행위하는 기관·기업소·단체들을 법인이

라고 한다. 이를 좀더 보면, 북한은 법인에 관하여 일정한 경제적 독자성과 통일적 조직기구를 가지고 자기 앞으로 민법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지닐수 있는 기관·기업소·단체라고 설명한다. 이들 기관·기업소·단체들은 그들의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민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각종의 경제관계에 관여하게 되며 그에 따르는 민법상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민법은 제26조에서 “기관·기업소·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법인의 행위는 합목적적 범위와 과업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 그 행위가 목적의 범위와 과업에 모순되는 경우 그 행위는 위법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국고에 몰수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협동조합이 스스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협동단체에서 생산한 상품을 도매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이미 도매행위에 의해 이행된 경우에는 국고에 몰수되는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민법 제13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4. 23.) :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우에 이러한 권리능력은 그의 본신임무와 과업에 맞는 범위안의 것이어야 하며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기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

### ○ 위 임

북한에서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민사거래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임이라고 한다. 이 때 위임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임계약에서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내용에 맞게 행위를 하여야 하며, 위임한 사람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위임된 행위의 수행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계약에서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의 명의로 계산하여 위임된 행위를 하는 만큼 대리인이 된다.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14조 :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한다.</p> <p>민법 제16조 :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도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위임계약 - 한편 당사자(위임받은 사람)가 다른편 당사자(위임한 사람)로부터 위임받은 행위를 그의 이름과 부담밑에 수행할 의무를 지는 계약.</p> <p>민주조선(1991. 4. 23.) :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기 일군에게 대리를 위임하는 행위는 반드시 서면에 의거하여야 하며 대리를 위임하는 서면(위임장 또는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일을 책임지워 맡기는 것 또는 그 맡긴 책임.</p>

○ 취 소

북한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이론은 남한민법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다. 북한민법은 법률행위가 일정한 유효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혹은 사후에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무효인 법률행위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민법은 제28조에서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소는 2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하여 소급효를 갖는다고 하였다.

북한민법상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당사자간에 이미 이행한 금전 또는 물건은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강요하여 법률행위를 하게한 당사자는 자기가 이행한 금전 또는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그것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29조).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23조 :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어 거처를 알려준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인정을 취소한다.</p> <p>민법 제25조 :                  민사법률행위를 한 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민법 제28조 :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민법 제29조 :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을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p>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4. 23.) :                  본의아니게 한 행위는 이해관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는 무효한 것으로 본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결정, 계약같은 것을)그만두기로 하여 그 효력을 없애버리기로 하는 것.</p>

○ 무효인 법률행위

북한민법은 제26조에서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기본원칙하에서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간에 이미 이행한 금액 또는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북한민법 제17조제1항).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당사자의 위법성을, 인식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몰수는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법률행위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위한 당사자는 자신이 이행한 것을 반환받지 못하며 그 이행한 것은 국고에 몰수된다(북한민법 제27조제2항). 현물로 몰수할 수 없는 것은 그 대가를 몰수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민법상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민법에 형법적 색채를 가미한 북한민법 특유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규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그 체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무효, 즉 그 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법 제26조 :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p> <p>민법 제27조 :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p> <p>민법 제28조 :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 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민법 제30조 :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4. 23.) :                  우리 민법은 무효로 된 법률행위의 법적 효과로서 호상 반환을 예전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미 주고받은 것을 서로 상대방에 돌려주어야 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효력이나 보람이 없는 것.</p>

○ 민사법률행위

북한에서는 민법에서 민사법률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제25조, 제26조). 북한에서 사용하는 민사법률행위는 그 내용상 남한민법상 법률행위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 표현해도 의미의 커다란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민사법률행위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공민들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말로 맺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맺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재판소의 인증(이를 공증이라고 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서면에 의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법 제26조 :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법이 사회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구속력. 법은 지배계급의 정치를 표현하여 국가가 제정하고 비준한 행위 준칙으로서 국가강제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보장된다. 그러므로 법규범은 해당사회에서 사회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지배계급의 국가권력에 의하여 담보되는 구속력을 가진다. 이 구속력을 법의 효력이라 한다. 법의 효력의 범위는 시간, 지역, 대상의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군인민회의와 군인민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문제들은 군에 있는 모든기관, 기업소들과 일군에게 의무적인 것입니다. 군인민위원회는 군인민회의와 군인민위원회의 결정들이 옹기 집행되도록 늘 감독하고 지도 통제하여야 합니다(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 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471면). 민주조선(1991. 4. 23.) : 민사법률행위는 말로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레하면 공민들호상간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말로 맺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재판소의 인증(이것을 공증이라고 한다)을 받아야 한다.</p>

○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및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행위

북한민법은 제26조에서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및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컨대 국가통제품을 밀매하는 법률행위(북한민법 제137조 참조); 계획적 배정물자를 자의로 처분하는 법률행위, 국가재산피해보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대상으로 될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법률행위 등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법이 법률행위의 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서면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서면형식을 지키지 않은 법률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행한 것을 상호반환하여야 한다.

즉, 쌍방당사자가 서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도 현물로 반환할 수 없는 것은 그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추상적이며 모호한 개념이고 '국가와 사회에 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 또한 그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법과 행동준칙은 김일성의 교시와 노동당의 정책에 기초하여 제정 시행되며 재판 또한 그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법률행위의 무효여부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민법 제26조 :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4. 23.) :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허위적 법률행위

허위적 법률행위는 북한민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무효인 법률행위로서의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부적 의사는 없이 단순히 외부적으로만 하는 법률행위를 허위적 법률행위라고 한다. 상대방과 미리 통하고 하였거나 그렇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한 것을 상호반환하여야 한다. 허위적 법률행위가 위법적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위법적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국가재산 피해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미리 허위로 양도한 경우이다. 허위적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적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이고 은닉된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공화국민법 제53조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다른 법률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북한민법의 경우 만일 그 은닉된 법률행위가 위법적 목적을 가진 때에는 몰수한다.

관계법조	민법 제26조 :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허위행위 - 진정한 의사가 없이 순전히 겉으로만 하는 법률행위. 국가 재산에 끼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부과될 것을 예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허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북한민법 제26조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도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즉, 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등의 구입 이외의 행위 중 자기가 받은 노동보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관계법조	민법 제26조 :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4. 23.) :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자가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국 고

북한에서 재정은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 분배, 이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라고 그 개념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재정은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국고는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총합으로 계산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출납업무와 재정수입의 계산은 중앙은행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

관계법항	<p>민법 제27조 :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p> <p>민법 제29조 :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p> <p>민법 제44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 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의 재정수입과 지출이 총괄적으로 계산되는 돈자리. 사회주의하에서 국고의 출납 의무를 담당하며 그 재정 수입을 계산하는 기능은 중앙은행이 수행한다.</p>

○ 착오(민법상)

북한민법 제28조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는 때때로 착오로 인하여 행해질 수 있다. 법률행위와 관련한 착오라는 것은 법률행위에 관한 각종의 사항, 예컨대 대상의 종류, 품질, 가격 등에 대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오직 본질적 착오에 대하여서만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한다.

본질적 착오란 법률행위에서 결정적 또는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사항에 관한 착오를 말하며, 만일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일반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행해지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착오를 뜻하는 것이다. 본질적 착오의 예로는 법률행위의 대상과 그 품질 및 기술조건 등에 관한 착오를 들 수 있다. 법률행위의 착오가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가의 여부는 법률행위의 구체적 실정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질적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착오를 일으킨 당사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법률행위를 미리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행한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현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그 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질적 착오로 인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만일 착오로 인한 사항만을 취소하고 전체로서의 법률행위 자체는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부분만을 취소하고 다시 정할 수도 있다.

북한민법에서 말하는 '본질적 착오'는 남한민법상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남한민법이 제109조제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분석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분석에 착오가 있다고 함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법률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착오가 있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는 것은 남한에서의 다수설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법 제28조 :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민법상 법률행위 이력저러한 요소 (례하면 대상, 품질, 가격, 당사자 등)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착오는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그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의 하나에 속한다. 공화국 민법에서는 사회주의 민사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데로부터 착오가 해당법률행위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항에 대한 것일 때 (례하면 공급계약에서 제품의 품질, 기술적 조건의 내용에 대한 착오)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착오를 범한 당사자에게 인정한다. 해당법률행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사항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한것으로 인정되며 매개 당사자는 제공받은 것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현물대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착각을 하여 잘못하는것 또는 그러한 잘못.</p>

○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란 사기당한 결과로 수행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민법 제28조의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기란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법률행위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사항에 대하여 착오를 범하게 하는 기망행위를 뜻한다.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당사자가 진정으로 희망하는 바가 아니다.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그 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 즉, 법

를행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그의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인정된다. 북한민법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였을 경우, 만일 법률행위가 미리 이행되었다면 사기당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행한 것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사기행위를 행한 상대방 당사자는 이러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가 이행한 것은 국고에 몰수된다(제29조).

관계 법 조	민법 제28조 :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기 -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북한민법 제28조에 의하면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는 2개월내에 하여야 하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법률행위의 취소는 소급효를 갖는다.

북한민법상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당사자간에 이미 이행한 금액 또는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강요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한 당사자는 자기가 이행한 금액 또는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것은 국고에 귀속된다(제29조).

관계 법 조	민법 제28조 :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4. 23.) : 본의아니게 한 행위는 리해관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는 무효한 것으로 본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취소 - 그만두기로 하여 그 효력을 없애는것.

○ 위임대리

위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되는 대리를 말한다. 기관·기업소·단체의 구성원들이 그 기관·기업소·단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그 예이다.

대리권의 위임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구두에 의한 대리권의 위임의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관·기업소·단체는 서면으로써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히고 있어야 한다(북한민법 제34조).

관계 법 조	민법 제32조 :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4. 23.) : 대리는 법이 정한데 따라 할수도 있고(이것을 법정대리라고 한다) 위임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이것을 위임대리라고 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위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 업무일군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대리에 속한다.

○ 법정대리

법령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이다. 예컨대 미성년자들의 법률행위에 대한 부모의 대리가 그것이다. 남한 민법 역시 법정대리제도를 두고 있다.

관계 법 조	민법 제32조 :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4. 23.) : 대리는 법이 정한데 따라 할수도 있고(이것을 법정대리라고 한다) 위임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이것을 위임대리라고 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에 의하여 대리인이 주어지는 대리 미성년자를 위한 부모의 대리와 같은 것이다.

○ 대 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법적효과가 직접 그 다른 사람 앞으로 발생하게 하는 민법상의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행위를 대리 또는 대리행위라고 한다.

북한에 있어서 대리제도는 민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부문에 있다. 예컨대 행정법에서의 행정대리제도,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대리제도, 중재법에서의 중재대리제도 등이 그것이다. 북한민법의 대리제도는 공민들의 경제생활에서도 이용되지만 특히 기관·기업소·단체들의 경제활동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북한민법상 대리제도는 첫째로 기관·기업소·단체들에게 부여된 임무와 인민경제계획과제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여 물질문화적 주요의 원만한 충족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대리인의 성실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즉, 대리는 신임에 기초한 행위인 것인만큼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대리행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나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며 대리인 자신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법 제32조 :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4. 23.) : 대리는 신임에 기초한 행위인것만큼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대리행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나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며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 사람이나 직무를 대신하는 것 또는 그사람 위임대리와 법정대리 두가지가 있다.</p>

### ○ 소유물반환청구권

북한헌법은 제24조에서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라고 규정하여 개인소유권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인소유권 보호의 예로서 형법상 개인소유물 침해죄인 절도·강도·사기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민법상 권리보호방법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민법은 제62조에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권한없이 남의 물건을 취득한 개인에 대해서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국가나 협동단체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그 권리보호는 제한되어 있다.

<p>관계법조</p>	<p>민법 제40조 :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조 :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남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자(비법적점유자)로부터 소유권자가 그 재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에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낡은 사상잔재를 버리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남의 재산을 비법적으로 차지하는 경우에 침해당한 소유권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법적수단으로 되고 있다. 민주조선(1991. 4. 26.) : 민법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권실현방해배제청구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유권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기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남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비법적점유자)로부터 소유권자가 그 재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물반환청구는 어떤 물건이 다른 사람의 비법적 점유하에 현실적으로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물건이 현재 없을 때에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청구(예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점유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합법적인 경우에는 역시 소유물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계획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그것이 침해되었을 경우 현물로 되돌려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선의로 남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반 원칙(선의 취득자 보호)은 그 재산이 국가소유이거나 협동단체 소유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기관, 기업소는 어떠한 점유자로부터도 자기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한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p>

## 第2節 所有權制度에 관한 用語의 概念

### ○ 소 유

인류역사상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유형태는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이를 크게 원시사회의 집단적 소유형태, 노예사회의 소유형태, 봉건사회의 소유형태, 자본주의적 소유형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 민법상의 소유형태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 속한다. 사회주의민법상 소유권제도는 그 규제대상을 소유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소유권 이외의 물권으로서 점유권,

건축권, 물상부담, 용의점유권, 자용용익권, 담보권 등은 사회주의 경제에로의 이행과정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소유권은 물권을 대표하는 권리이다.

북한은 소유권에 관하여 재산을 자기 의사에 따라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는 상태 혹은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며, 소유관계는 다른 모든 재산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소유권은 그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그 형태는 국가소유형태, 협동단체소유형태, 개인소유형태가 있다고 한다. 북한민법에서 규정한 소유권제도는 남한민법상 물권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한편 북한민법에는 남한민법에서와 같은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소유를 소비적 목적에만 제한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5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자신이 민사책임을 진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4. 26.) : 소유권이란 재산을 자기 의사에 따라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는 상태 혹은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정한 물질적 부에 대한 점유권, 처분권이 누구에게 속하는 가를 표현하는 경제학적 범주. 본질에 있어서 물질적 부의 점유와 처분을 둘러싸고 맺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 개인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로 갈라진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는 온갖 경제 관계의 기초로 된다.

○ ‘로동보수’(생활비)

생활비는 북한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인 ‘임금’을 나타내는 말로서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2차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노동법에서부터 사용되었다. 북한은 임금이라는 용어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상품적 성격을 띤 노동력의 대가로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원칙에 부적합하다고 하여 그 용어를 생활비로 대체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제사전」(1985)은 생활비에 관하여 “사회주의국가가 노동자·사무원들에게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육체적·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총생산물의 일부를 그들이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몫의 화폐적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즉, 생활비는 사회주의적 노동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공동노동으로 이루어진 사회총생산물 가운데서 소모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확대생산과 사

회의 공동적인 소비적 수요에 필요한 몫을 빼 다음 남은 부분으로서 자신을 위한 노동에 의해 창조된 생산물부문을 화폐로 표현한 형태를 의미한다.

북한은 생활비가 자본주의국가의 임금과 다른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임금은 항상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낮아지며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생활비는 노동생산능률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가되며 따라서 생활비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임금이 의미하는 노동력의 가격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생활비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기초하여 해당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에서 지불되고 있는데, 생활비등급제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노동강도·노동조건·해당 작업의 인민경제적 의의 등에 따라 노동의 질을 계산하는 제도라고 한다.

관계법조	민법 제20조 :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 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보수 - 일한데 대하여 치르는 값. 생활비 -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가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몫의 화폐적 표현.

### ○ 소유권(형태)

북한민법은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경제의 소유형식의 본질상 소유권을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 등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소유형태의 구별은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집단성, 계획성의 수행을 위하여 사회주의이론에서 강조되는 점이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철저히 배제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관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헌법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고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또한 북한의 토지법(1977)도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여기서 협동단체의 토지소유권도 실제

로 그 사용권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관계법조	<p>민법 제37조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일정한 재산을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은 경제적 범주인 소유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소유관계가 법률적 관계로 됨으로써 재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자로 되며 따라서 소유자가 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은 법적 권리로 되고 국가강제력에 의하여 보호되게 된다.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점유, 리용, 처분의 권리이다. 점유는 물건을 실제로 차지하는 것을 말하며, 리용은 물건의 유용한 성질을 사회적 생산이나 개인적 소유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쓰는 것을 말하고, 처분은 물건의 법률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판매 대여 등)을 말한다. 소유권의 발생 방법을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모든 형태의 소유권에 공통적인 것이 있고 어느 한 소유권에만 고유한 것도 있다. 매매 계약은 모든 형태의 소유권에 공통적인 소유권의 발생방법이며 국유화는 국가소유권에만 있는 소유권의 발생방법이다.</p> <p>민주조선(1991. 4. 26.) :</p> <p>소유권은 그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소유권의 형태는 소유의 형태에 상응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국가소유형태, 협동단체소유형태, 개인소유형태가 존재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직접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물건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재산상 권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권리이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의 세가지 형태가 있다. 소유관계의 구체적인 발현형태, 사회적 소유형태와 사적 소유형태가 있다.</p>

### ○ 국가소유권

북한에서 소유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국가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서 전국가적 범위에 미친다. 여기서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자연부원의 전부, 공장·기업소의 절대다수, 운수, 은행 및 체신기관의 전부, 상업수매기관의 기본부분, 도시와 노동자구의 기본적인 주택 폰드나 공공시설, 그리고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전부” 등이 이에 속한다. 국가소유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국가소유권의 주체는 국가에 한정된다. 국가재산은 일정한 국가기관이나 기업소가 점유, 이용,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들 기관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그러한 기능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갖는 이러한 권한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경영상의 관리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 있어서 그 범위는 제한이 없다. 북한에서 설명하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는 것은 국가소유권의 대상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주요대상만을 예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민법은 국가소유권의 대상을 예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지하자원·삼림자원·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제45조제1호), 중공업·경공업·수산업·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분야의 중요공장기업소와 농기계업소·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제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수매양정·도시경영·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동조제2호), 항만·은행·교통운수 및 체신·방송기관(동조제3호), 각급학교 및 중요문화보호시설(동조제4호)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국가소유권의 실현은 개별국가기관들이 갖는 경영관리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개별기관의 관리권은 국가소유권에 한정되고 또한 국가소유권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37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 진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주의적 국가소유권 - 로동계급이 국가가 나라의 튼튼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인민적 소유로 된 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사회주의적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로는 전체인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가만이 될 수 있고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들은 될 수 없다. 사회주의적 국가소유권의 대상은 단일한 재산을 이룬다. 민주조선(1991. 4. 26.) : 국가소유권은 우선 발생기초에서 특유한 것이 있다. 국유화나 국고회수는 국가소유권에서만 발생 기초로 되며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국가소유권은 다음으로 대상에서 특수성이 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이건 가리지 않고 다 그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명맥을 이루는 중요재산들은 오직 국가소유권의 대상으로만 되고 개인은 물론 협동단체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가 자기소유의 재산을 자기의사에 따라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 협동단체소유권

북한에서 협동단체소유권은 협동단체들이 국가의 지도 밑에 그 고유의 의사에

따라 그 본래의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을 점유, 이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협동단체소유권은 국가소유권에 비하여 사회적 수준이 낮은 것이어서 사회주의사회가 공산주의화하는 시점에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소유형태로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 밑에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업자들이 그들의 사적 소유인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로서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분야는 농업부문에서 협동농장이 대표적인 전형이다. 이를 국가소유권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단체소유권의 범위는 국가소유권보다 좁다. 협동단체들은 일정한 임무와 과업을 가지고 있고,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소유하도록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북한헌법은 제20조에서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노동자의 집단적 소유"라고 하고 그 범위를 토지, 부림 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로 한정하고 있다.

둘째, 협동단체소유권은 그 내용상 국가소유권보다 좁다. 협동단체소유권은 각각의 임무와 과업에 따라 그 소유권의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협동단체소유권의 행사는 권리능력을 벗어난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협동단체소유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은 국가소유권과 다르다. 협동단체소유권의 행사는 해당 단체의 전체구성원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구성원의 의사는 협동단체의 규약이라든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표되는 것이다. 또한 협동단체는 고유의 임무와 과업을 위하여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그들은 전체로서의 국가의 지도라는 통제를 받게 된다.

북한민법은 협동단체소유권이 내용에서 종래의 규정에 문화시설물과 그밖에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하였다. 이는 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제부문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 계 법 조	<p>민법 제37조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p>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협동농장 또는 기타의 협동조합들이 자기에게 속한 재산들을 국가의 법령과 인민경제 계획에 부합되게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협동단체소유권은 국가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한 형태이지만 협동적 소유가 그 사회화 정도에 있어서 국가소유보다 낮은데로부터 국가소유권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p> <p>민주조선(1991. 4. 26.) :</p> <p>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하여 협동단체소유에 대한 민법의 규제는 국가소유에 대한 규제와 구별되는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협동적소유 -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집단의 공동적 소유. 사회주의 사회에서 협동적소유는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밑에 발생한 사회주의적소유의 낮은 형태이다. 협동적소유는 전인민적소유와 함께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이룬다.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p>
------	---

### ○ 개인소유권

북한에서도 부분적이나마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한다. 북한의 개인소유권은 소지자의 소유에 국한되므로 자본주의하에서의 사적 소유의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결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의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용품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 소비품 등이 개인소유권의 대상에 포함된다. 협동농장원들의 부업경영 생산물과 그 생산을 위한 약간의 소농기구들도 개인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각종 수매기관과 농민시장도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종래 사회주의국가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자본주의적 소유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여 왔지만 최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타사회주의국가들 보다 개인소유권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해온 북한에서도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민법은 개인소유권의 대상에 관하여 소득, 국가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 또는 부업경영에서 나온 생산물, 상속·증여 받은 재산, 그밖에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이라 하고(제58조), 이밖에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개인재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대비하는 북한의 입장변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p>관 계 법 조</p>	<p><b>민법 제37조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p> <p><b>민법 제58조 :</b>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p> <p><b>민법 제59조 :</b>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p> <p><b>민법 제60조 :</b>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p> <p><b>민법 제61조 :</b>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 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p> <p><b>민법 제62조 :</b>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p> <p><b>민법 제63조 :</b>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p>
<p>북한용례</p>	<p><b>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b>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사회적 생산물 중에서 자기에게 돌려지는 소비수단을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사회주의 소유에 립각한 국영경리와 협동경리 및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 그 원천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비적 소유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소비수단이다. 개인 소유권의 개별적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생활상 수요를 위하여 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우리사회의 공동생활 규범에 맞게 개인소유 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하여야 한다.</p> <p><b>민주조선(1991. 4. 26.) :</b>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이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이점에서 개인소유는 그 어떤 사적경리를 위한 소유, 사적소유와 구별된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구입한 재산, 공민이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이루어진다.</p> <p><b>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b>          개인소유의 재산을 자기 뜻대로 차지하며 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공민의 권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생산물 중에서 자기에게 돌려지는 소비수단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 비법적 점유

북한에서 비법적 점유는 소유권자의 재산보호와 경제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비법적 점유는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정당한 근거가 없이 남의 재산을 차지하는 행위로서 범죄행위에 의하거나 국가경제기관 일군의 착오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비법적 점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소유권자는 그 점유자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점유가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 때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준 자로부터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40조 :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정당한 근거가 없이 남의 재산을 차지하는 행위. 우리나라에서 비법적 점유는 낡은 사상 잔재를 버리지 못한 일부 불건실한자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며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의 사업상 착오로 인하여 생기기도 한다. 소유권자는 자기재산을 비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것을 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소유물반환청구권). 다만 재산의 점유자가 그 재산을 자기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리가 상대방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넘겨 받았을 때에는(점유가 선의인 경우)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없다(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인 경우 제외). 소유권자는 이 경우에 재산을 넘겨준자로부터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민주조선(1991. 4. 26.) : 소유권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기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 만들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공동소유권

북한민법에서도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인정되고 있다. 즉, 수인이 지분에 따라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공동소유재산의 점유·이용·처분은 공동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물을 분할할 수도 있으며, 분할이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소유자들의 지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42조, 제43조).

북한민법상 공동소유의 개념은 남한민법상의 공유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민법상 공동소유는 막연하게 공동소유자의 합의에 의해 이용·처

분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하여 지분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소유자 간의 구속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남한민법상 공유가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주의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다르다.

관계법조항	<p>민법 제42조 : 소유권은 여럿이 몫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하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p> <p>민법 제43조 :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 가질 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는 소유권.</p>

### ○ 기업소

북한에서 기업소는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직접 조사진행하는 경제단위를 말하는데, 국가기업소는 이를 국가가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기업소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일체의 공장 기업소들을 특급·1급·2급·3급 기업소와 도영기업소, 기타 지방공장, 기업소 등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특급기업소는 특수생산물(군수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소로서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평양방직공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1급기업소는 종업원 5천명 이상을 가진 주요제품생산공장·기업소를 말하며 희천공작기계공장이 그 예이다. 2급기업소는 종업원 3천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소로서 낙원기계공장, 순천제약공장 등이 해당된다. 3급기업소는 종업원 5백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소로서 함흥제사공장, 평양 방직기계공장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도영기업소는 각 시·도에서 관장, 운영하는 기업소를 말한다.

한편 북한은 1970년대 들어서서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고 기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종의 기업연합체로서 연합기업소를 형성하였다. 이는 생산활동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공장·기업소들이나 원료 및 연료생산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기업을 하나로 묶어 계영생산체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종의 '트러스트'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체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종전의 협동생산체제에서 나타난

기관·기업소의 '본위주의'를 극복하고 계열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소·공장들에 연대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생산을 정상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려는 데에 있다. 처음 금속·화학·광업분야에서 시작된 연합기업소의 형태는 건설 및 기계 분야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관계법조	민법 제44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 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가 조직하고 관리운영하는 기업소.

### ○ 국유화

북한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1946.8.19), 「북조선 지하자원·삼림지역 및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1947.12.22), 「물수재산권리에 관한 규정」(1948.11.16) 등을 통해 국가소유권제도를 확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전체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개인이 경영하는 소규모의 공장·기업소와 상업에 대해 6·25전쟁 이전은 물론 휴전후까지도 부족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이른바 '장려·이용·제한'이라는 명목의 정책을 통해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집단화와 같이 도시의 수공업자들에 대한 생산협동반화, 중소상공업자들의 협동반화,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된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 등 세가지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상·공업부문은 농업부문과는 달리 완전 국유화되었다고 한다.

관계법조	민법 제44조 :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 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의 소유로 만드는 것.

○ 경영상 관리권

북한민법은 제47조에서 경영상 관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 기업소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의 범위 내에서 국가재산을 점유·이용·처분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개별기관들의 관리권은 국가소유권에 귀속되며 국가소유권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경영상 관리권은 국가소유권의 적절한 실현을 위해 국가기관, 기업소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국가소유권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에 종속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경영상 관리권은 비록 국가소유권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지만 경영상 독자성을 가진 법인(국가기관·기업소)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직접 그 소유권을 실현하는 행정관리권과는 구별된다. 한편 경영상관리권은 기관·기업소의 임무범위 내에서 이용·처분 등 소유권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권리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민법 제47조 :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리용·처분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4. 26.) : 국가소유권은 또한 실현방법에 있어서 특성을 가진다. 협동단체나 개인소유권에서는 그 소유권자인 개별적 협동단체나 공민이 소유권을 직접 실현하나 국가소유권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자기의 기관, 기업소들을 통하여 소유권을 실현한다. 국가자신이 자기의 소유권을 직접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개별적 국가기관, 기업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경영상 관리권이라고 한다.

○ ‘국가재산 리용권’

북한민법은 제49조와 제50조에서 국가소유의 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한 협동농장의 이용권과 국가가 지어준 살림집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용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재산이용권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산을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관리하는 방법 이외에 국가재산 가운데에서 고정재산을 협동농장에 넘겨주어 협동농장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국가자금으로 농촌기본건설을 하거나 농민용주택을 건설하는 일이 이것

에 해당한다. 이러한 협동농장의 국가고정재산이용권은 제한없이 무상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가기관, 기업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적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이에 관하여 “협동농장의 부담을 줄여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시책의 원만한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독특한 규범들, 국가소유의 재산적 고정재산들에 대한 협동농장의 리용권에 관한 규범과 국가가 지어준 살림집에 대한 근로자들의 리용권에 관한 규범을 특별히 설정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인과 단체의 소유를 대부분 금지하면서 그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국유화한 다음 이용권이라는 명목의 제한된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 인민을 위한 것인지는 의구심이 많다. 그래서 이 이용권은 전시적이고 장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법 제49조 :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트랙토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 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 준 고정대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 수 있다.</p> <p>민법 제50조 :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p>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4. 26.) : 민법은 국가소유권제도에서 협동농장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시책의 원만한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독특한 규범들, 국가소유의 생산적고정생산들에 대한 협동농장의 리용권에 관한 규범과 국가가 지어준 살림집에 대한 근로자들의 리용권에 관한 규범을 특별히 설정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p>

○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소득)

북한민법상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는 개인소유의 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58조). 이는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분배물로서 개인소득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기초이며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개인소유권의 가장 주된 내용을 이룬다.

노동에 의하여 얻어진 분배물은 개인주택 등 다른 개인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매매·임차·증여 등 처분행위의 목적물로 될 수 있지만,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개인소유의 인정은 한편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소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불로소득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왔다. 북한도 개인소유의 일부인정과 함께 불로소득의 금지원칙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북한에서 각종 소득물의 개인소유는 권리의 행사뿐만 아니라 그 귀속의 형태 면에서 제한되는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관계법조항	<p>민법 제58조 :</p> <p>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4. 23.) :</p> <p>우리나라에서 개인소유의 기본원칙을 이루는 것은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소유가 사회주의소유와의 관계속에서 그로부터 파생된 소유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이 빨리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체계적으로 불어가는데 따라 근로자들이 개인생활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사회주의분배원칙 -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다시 말하여 일한 것만큼 분배하여주는 원칙.</p>

### ○ 가정재산

북한에서 말하는 가정재산은 개별재산과 개인소유재산의 하나로서 “공민이 가족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을 말한다. 가정생활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은 그것이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로 이루어진 것이든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가정재산에 포함되며, 가족성원 전체의 소유가 된다. 가정재산에 대해서는 개별적 가정성원들의 기여정도에 따른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것은 오로지 가정의 유지와 가정성원 전체의 복리에 이용될 뿐이다.

한편 개인재산에 있어서 그 재산이 고가의 물품이 아니고 사치품의 성격을 띠지 않는 한 배우자 각자의 의복이나 장신구 등은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

에 속하여 개별재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관계 법 조 항	민법 제59조 :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6.) : 가정재산에는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이루어 놓은 재산, 가정생활기간에 개별적성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저금한 돈이 포함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가정살림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품.

### ○ 터 밭

북한은 1958년 11월 24일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잠정)」에서 “조합은 조합원용 채소전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경우에 따라 공동소유토지중에서 매농호당 30~50평의 터밭을 줄 수 있다”(제6조)고 하여 터밭에 대한 농호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토지법(1977)은 협동농장건물의 터밭이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제한하고 있다(제13조).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서 정한 터밭의 면적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농호의 터밭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일정 토지는 조합농호의 개인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며 당해 농업협동조합의 집단적 소유로 되기 때문이다. 이 권리는 일종의 배타적인 개인경작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사적 소유가 완전히 금지되고 있는 북한에서 터밭의 경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난에 처하고 있는 북한에서 터밭경리는 북한주민 사이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이를 통한 초보적인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 법 조 항	민법 제58조 :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집터에 딸린 밭.



○ 상속(유언상속)

북한에서 상속은 종래 자본주의적 착취제도의 일종으로 보아 북한정권수립 당시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 가족법을 제정함으로써 상속을 가족법의 일부로 포함하여 상속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상속을 인정하는 목적이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민법은 제63조에서 개인소유재산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북한 가족법의 상속 및 유언과는 별개의 조항으로서 개인재산권의 보장책으로서의 상속과 유언을 강조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63조 :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4. 23.) : 상속은 공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가족법정제도이다. 상속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유언 - 세상을 떠난 사람이 죽기전에 부탁하여 남긴말. 유언상속 - 사망자의 유언에서 지적된 사람이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행위.

第3節 債權債務에 관한 用語의 概念

I. 一般規定에 관한 用語

○ 채권·채무

채권채무관계는 자본주의국가는 물론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민법상 기본제도로써 경제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제도이다. 북한은 민법상 채권채무제도의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데 있다. 채권채무제도는 채권채무관계의 법적 형식을 통하여 기관·기업소·단체들이 인민경제계획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계획규율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강조된다.

둘째,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팔고사기계약, 작업 봉사계약,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의 자재 또는 상품공급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제도 등은 인민소비상품이나 주택건설을 대상으로 하는 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의 충족과 연관된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거래관계를 규제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해주는 거래관계에 속한다.

셋째,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는데 있다. 불법가해의 손해보상채무제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제도, 그밖의 물건반환청구 내지 계약상 손해보상청구에 관한 규범들은 모든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속한다.

북한은 채권·채무에 관한 개념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북한민법은 제64조에서 채권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고,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민법의 특징중 하나로서 남한민법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북한민법에 의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되는 경제관계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예컨대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양도하는 거래관계, 물건에 대한 점유권 또는 이용권만을 인도하는 거래관계, 일정한 작업수행의 결과를 인도하거나 일정한 봉사를 제공하는 거래관계,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를 침해함으로써 발생시킨 손해를 보상하는 거래관계 등 다양한 경제관계에 있어서 설정된다.

북한민법상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 계약, 일방적 법률행위, 불법가해, 부당이득 등에 기초하여 발생하게 된다.

관 계 법 조 항	<p>민법 제64조 :</p> <p>이 법에서 채권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5. 8.) :</p> <p>채권채무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는 언제나 대응하며 채무를 떠난 채권이나 반대로 채권을 떠난 채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권채무관계를 간단히 채무관계 또는 채권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채권 - 기관, 기업소 호상간에 자재나 상품을 주고 받을 때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이루어지기까지 이미 준 물건에 대한 값을 받을 권리. 빛을 받아내는 것과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p> <p>채무 - 기관, 기업소 호상간에 자재나 상품을 주고 받을 때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이루어지기까지 이미 받은 물건에 대한 값을 물어줄 의무. 빛을 갚는 것과 관련하여 지는 의무.</p>

○ 채권자·채무자

채권자 및 채무자는 채권채무관계에서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북한민법상 채권채무관계는 그 당사자가 2인 혹은 그 이상인가에 따라 두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와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로 나뉘어진다. 이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두사람 이상인 경우, 다시말해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인 경우에 그들이 가지는 채권 또는 채무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법적 의의를 갖게 된다. 그 채권채무가 연대적 성질인가 혹은 분할적인가에 의해 이를 연대채권채무관계와 분할채권채무관계로 나뉘어진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65조 :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 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 수도 있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8.) : 채권채무관계에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채권자라고 하며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통 한사람씩이나 어느 한편이 여럿이거나 량편이 다 여럿인 경우들도 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채권채무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라고 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채권자 - 빚을 받아낸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조직체. 채무자 - 빚을 갚을 의무를 진 사람이나 조직체.

○ 인민경제계획

북한민법은 제66조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을 채권채무관계 설정기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경제생활은 계획에 의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모든 물자와 자원은 계획적으로 이용되며 모든 공장과 기업소, 모든 사람들은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 이에 의해 인민경제계획과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은 북한의 채권채무관계 설정원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인민경제계획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는 일반적으로 당해 계획과제만으로, 즉 계획과제에 기초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획과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비로소 자재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농산물을 인도하며 기본건설공사를 진행하며 화물을 운반하는 데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4조 :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 민법 제66조 :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p>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5. 8.) : 채권채무관계는 저절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경제계획문건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밖의 법률적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당의 결정정책과 현실적 조건. 과학적인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사회주의국가의 계획.</p>

○ 손해보상

북한에서 표현하는 손해보상은 남한민법상 손해배상의 개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북한민법상 채무위반의 경우 채무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채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는 완전보상의 원칙에 의하여 정해진다. 여기서 채무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손해에는 기존재산이 감소된 경우의 적극적 손해와 새로이 증가되어야 할 재산이 증가되지 못한 경우의 소극적 손해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손해보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북한민법은 동지적 협조와 방조의 원칙, 사회주의적 소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원칙에서 비롯되는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손해발생방지조치 또는 손해증대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감소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손해를 보상받을 당사자가 국가기관·기업소·단체인 경우에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68조 :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어 생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어 손해가 커진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민법 제133조 : 짐받는 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 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고조서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p>
--------------	--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남에게 재산적 손실을 주었을 때 그것을 메꾸어 주는 행위. 남의 재산을 파괴하였거나 계약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며 보상은 원상회복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돈으로 한다. 보상 -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그대신으로 물어주는것 또는 그렇게 무는 돈이나 물건.</p>
-------------	---

○ 가격규률(가격통제)

북한에서 가격은 기관 또는 기업소가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가격제정 및 적용과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라고 개념지우고 있다. 가격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격제정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의 전문가가격제정기관에 의한 통제이다. 전문가가격제정기관은 모든 경제부문에 당의 가격정책 집행행형을 시달하고 가격에 대한 감독과 검열을 실시하여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각종의 경제적 및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가의 전문가가격제정기관들은 가격결정의 원칙과 절차,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격통제는 가격결정기관 이외에도 경제계획 및 통제기관, 은행기관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계획기관과 통제기관들은 경제계획의 작성과 모든 계획 지표들의 수행실적의 평가를 위해 적용된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은행기관들은 기관·기업소들의 재정계획과정에서 계산수단으로 이용된 가격과 국가자금 공급 및 대부업무와 관련된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원에 의한 통제는 재정 통제와 은행통제로 구분된다. 전자는 예산수입·지출과정을 통한 통제로서 국가주권기관과 행정집행기관, 그리고 은행기관에 의해 행해지며, 기관·기업소 내부적으로 이루어진다. 후자는 은행의 영업활동을 통한 통제로서 화폐에 의한 통제를 말하며, 북한의 단일은행(조선중앙은행)이 국가자금과 신용 등 기관·기업소에 대한 모든 자금공급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69조 : 채권채무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의식적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가격 - 돈으로 표현된 상품의 가치 곧 상품의 가치가 화폐라고 하는 일반적 등가물을 통하여 표현된 것.</p>

○ 분할채권채무관계

북한민법상 분할채권채무관계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나 채권이 분할적 성질을 가지는 채권관계를 말한다. 다수당사자의 채무나 채권이 분할적 성질을 가지는 채권관계이다. 다시말해 분할채권이나 분할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이다. 분할채권은 채권자가 두사람 이상으로서 각자 일정한 부분의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고, 분할채무는 채무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각자 일정한 부분만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이다.

분할채권채무관계가 분할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각자 자기에게 할당된 채무이행의 부문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진다. 여기서 청구권을 실현한 채권자는 그 채권관계에서 분리된다. 한편 분할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분할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들은 각자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의 부분만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채무 부분을 이행한 채무자는 해당 채권관계에서 분리된다.

이와 함께 북한민법은 분할채권이나 분할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분할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 개개인이 가지는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권의 상이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혹은 그 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권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제72조).

관계법조	<p>민법 제70조 :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 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p> <p>민법 제71조 :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들은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p> <p>민법 제72조 : 분할채권자들이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들이 지는 의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5. 8.) :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각자가 채권이나 채무를 몫으로 나누어 가질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수도 있다.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일반적으로 분할채권이나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연대채권이나 채무는 법이나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그 대상이 나눌 수 없을 때 설정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여러 채무자들이 저마다 일정한 몫의 의무를 리행할데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채무.</p>

○ 연대채권채무관계

연대채권채무관계는 다수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가 연대적 성질을 갖는 채권채무관계를 말한다. 북한민법상 연대채권채무관계가 연대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중 어느 채권자든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 연대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연대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다수의 채무자 모두를 상대로 하거나 혹은 그 개별적 각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의 전부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다수의 연대채무자들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제73조).

또한 다수의 채무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만일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면 그 이행한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자들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4조). 여기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내부적 채무부담은 그들 사이에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것이 없으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수의 채권자들이 연대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중 한사람의 채권자라도 채무의 전부를 이행받으면 채권관계는 전체적으로 소멸된다. 채무를 이행받은 채권자는 이행받은 것 가운데에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할당되는 부분을 그들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된다(제74조). 이 때 나머지 연대채권자들은 채무를 이행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권을 가지게 된다.

관 계 법 조 항	<p>민법 제70조 :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 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p> <p>민법 제73조 : 연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연대채무자들은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p> <p>민법 제74조 : 채무를 전부 리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연대채권자는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 줄 의무를 진다.</p> <p>민법 제75조 : 연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서 다른 연대채권자들의 리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연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것은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p> <p>민법 제76조 : 채권자가 한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었던 몫만큼 다른 연대채무자들의 몫은 적어진다.</p>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채무를 진 여러사람이 채무의 리행에 대하여 그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채무관계. 우리나라에서 연대채무는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 공민들사이에만 생긴다. 사회주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있어서는 연대채무가 그들의 업무활동 및 책임에서의 독자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채무의 리행을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동시에 요구할 수도 있고 매개 연대채무자에게 따로따로 요구할 수도 있다. 연대채무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채무를 전부 갚았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는 다 소멸되어 일부 갚았을 때에는 리행 못한 부분의 채무가 전체 연대채무자에게 남는다. 연대 채무를 다 갚은 연대 채무자는 그가 엄쳐 부담한 부분의 보상을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평등한 몫으로 청구할 수 있다.</p> <p>민주조선(1991. 5. 8.) :</p> <p>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각자가 채권이나 채무를 몫으로 나누어 가질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일반적으로 분할채권이나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연대채권이나 채무는 법이나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그 대상이 나눌수 없을 때 설정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빚을 진 여러사람이 빚을 몰데 대하여 저마다 다 책임지는 빚관계.</p>
------	---

○ 구상권

북한은 구상권에 관하여 남을 대신하여 돈을 물었거나 물건을 제공한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한다. 북한 민법은 이에 관하여 제74조에서 다수의 채무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만일 채무자 중 한사람이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면 그 이행한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권은 주로 연대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보상금을 문 국가보험기간이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문 보상금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구상권이라고 한다.

관계법조항	<p>민법 제74조 :</p> <p>채무를 전부 리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연대채권자는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해당하는 몫을 나누어 줄 의무를 진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할 본래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에서 구상권을 주로 연대채무관계에서 생긴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보상금을 문 국가보험기간이 보험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문 금액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구상권이다. 구상권 제도는 사회주의적 소유와 공민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나아가 제3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부당획득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p>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남을 대신하여 돈을 물었거나 물건을 제공한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현대적으로 진 빚을 혼자서 갚았을 때에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가 돈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이 권리를 가진다.
------	---

○ ‘채무리행지연’

북한민법상 채무의 이행지연에는 채무자에 의한 이행지연과 채권자에 의한 접수지연의 두가지가 있다. 채무이행의 지연에는 채무자가 적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적시에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연’이라고 하고, 후자는 ‘채권자의 접수지연’이라고 한다.

먼저 전자의 경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이행지연으로 인하여 채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것과는 별도로 이행지연된 본래의 채무 자체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연된 채무의 장래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채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음 채권자의 접수지연은 남한민법상 채권자지체의 개념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80조 :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채무자는 또는 채권자의 허물로 인하여 기일보다 늦어져서 진행되는 채무리행, 채무리행에 대한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를 채무자지연,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를 채권자지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채무리행지연은 ① 채무리행 기일이 지나도록 채무가 리행되지 않고 있으며 ② 채무가 제때에 리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당사자들중 어느 일방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 생긴다. 두가지 조건들 중 어느하나라도 없을 때에는 채무의 리행지연으로 되지 않는다. 채무리행지연에 허물이 있는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제정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허물있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리행의 접수를 거절당할 수 있으며 허물있는 채권자는 리행불가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채무리행 지연의 법적효과는 채무자, 채권자들이 채무리행에서 책임성을 높이며 특히 계획과제의 성과적 수행을 적극 추동하는 작용을 한다. 민주조선(1991. 5. 8.) :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에 리행하여야 하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한꺼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또한 채무를 법이나 계약이 정한 곳에서 리행하여야 하며 법이나 계약이 리행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돈을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된 채무는 부동산소재지에서, 그 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나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 경제관리

북한은 경제관리에서 그 원칙을 “사회주의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설명한다. 그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당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시키는 원칙,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원칙,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지도 및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당의 중앙집권적 지도강화, 군중노선 관철 등을 통해 생산자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열의를 고취시킴으로써 물질적 자극의 결여로 야기되는 생산성저하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경제관리원칙은 중앙계획당국이 결정한 경제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90조 :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적 노동 과정을 조직지휘하며 경제를 운영해나가는 활동. 경제관리는 집단 노동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사회제도에서나 다 필요하나 그 목적과 성격, 기능은 사회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관리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자각적인 로동을 지휘하며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II. 計劃에 基礎하는 契約에 관한 用語

○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북한에서 1947년 이후 실시된 계획경제는 인민경제계획으로써 실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기관·기업소·단체 상호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는데 ‘계획적 계약’ 또는 ‘경제계약’이라고 한다.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다는 것은 국가계획이 계약의 쌍방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시달되어 계약의 체결이 의무성을 띠는 것을 의미하며, 기관·기업소·단체들 간

의 계약이더라도 각기 부과된 계획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에 부수적으로 맺는 계약은 일반계약에 해당하게 된다.

북한민법상의 계획적 계약은 국가의 경제계획에 종속된 것으로서 계획 과제의 변경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효력이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계약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주의 민법상 특유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이 계약은 계획의 효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계약당사자에는 자주성과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엄격한 제약하에서 체결되는 계약인 것이다.

북한민법은 자재공급계약, 상품공급계약, 농업생산물수매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화물수송계약 등 다섯가지의 계약에 관하여 계획적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법 제90조 :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5. 10.) : 계획적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호상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그밖의 계약들은 일반계약에 속한다. 계획적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지며 계약을 맺는데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 인민경제계획과제가 추가되거나 조절될 때에는 그에 따라 계약도 변경된다.</p>

### ○ 계획기관

북한경제는 단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경제, 유일적 지휘하에 움직이는 경제로서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경제계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하여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무원의 각부 및 위원회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설치하여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경제계획상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거론하는 주관주의와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타파하고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한다고 주장한다.

관 계 법 조	<p>민법 제91조 :</p> <p>계약당사자들은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p> <p>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p>
북한용례	<p>김일성저작선집(19권)(467-468면) :</p> <p>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계획기관들은 우리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경제작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기관들은 군대로 말하면 작전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입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나라의 경제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통제하는 기관. 사회주의하에서 계획기관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작전국과 같은 역할을 한다.</p>

○ 자재공급계약

북한에서 자재공급계약은 북한 민법에 의하면, 기관·기업소·단체들이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따라 상업적 형태를 취한 주요자재의 수수계약을 말한다(제94조). 이 계약은 기계설비, 원료 및 자재를 체결의 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매매계약과 다르며,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자재 등을 수수하는 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만이 그 당사자로 되는 점에서도 다르다(제95조제1항).

자재공급계약은 계획적 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의 성질을 갖는데, 특히 매매계약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즉, 자재공급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자재를 공급하고, 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매매계약의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약의 실현이 철저히 국가계획에 따르고 있다는 점, 계약당사자가 사회주의적 조직에 한정된다는 점, 그 계약의 이행이 일반적으로 장기의 분할부인 점, 그리고 계약의 체결을 서면으로 하는 점 등에서 일반적 의미의 매매계약과는 다른 특색을 지닌다. 이 계약이 지니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의 당사자는 자재상사와 자재공급세부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와 단체들인데, 특히 이들 중 자재상사가 중심이 된다. 계약당사자가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자재공급계약이 국가와 그 밖의 단체 사이의 생산물분배관계를 매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민개인이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자재공급계약에서 뿐만 아니라 상품공급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이 계약이 대상으로 하는 물건은 국가의 세부계획에 따라 거래되는 기계, 설비, 원료, 자재 등의 생산수단에 한정된다. 이 점에서 주로 소비품의 이전을 매

개하는 매매계약과 큰 차이가 있다.

셋째, 이 계약은 계약의 자유가 전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계획적 계약이다.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기본적 내용이 계획문건 자체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엄격한 계획규율의 요구에 적응해서 의무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 공급할 자재의 품종, 수량, 규격 및 공급기간 등이 계획과정 자체에서 미리 소정되는 것은 이 계약이 계획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삼고 있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도 계약의 상대방의 선택과 내용의 자유가 인정되는 매매계약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넷째, 이 계약에서의 자재의 공급은 계속적 또는 장기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속적 또는 장기적인 공급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각 기관에 부과된 계획과제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북한법에 의하면 이 계약의 이행방법으로 연간, 분기, 월별제를 취하고 있는데, 계속적 장기적인 이행방법은 반드시 이에 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섯째, 이 계약은 서면형식을 취하여야 하며 구두형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재의 부문별 공급기관과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들이 엄격하게 준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p>민법 제94조 :</p> <p>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p> <p>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 데서 상업적 형태를 리용할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5. 10.) :</p> <p>자재공급계약은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계획적계약으로서 자재공급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원료와 자재, 기계와 설비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공장, 기업소들에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사업. 자재공급 사업은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관리사업에서의 중요한 조직 사업이다.</p>

### ○ 상업적 형태

북한은 상업에 관하여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소재 공급사업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상업조직과 체계가 국유화되어 있고 동일제품에 대해 유일가격제를 원칙으로 하는 북한에서 상업유통이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에서 당연한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상업은 국가유일체제하에서 상품 공급을 위한 유통 내지 관리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국영기업소 상호간, 국영기업소와 협동조합간, 국영기업소와 개별노동자간, 협동조합과 개별노동자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영상업, 협동단체상업, 농민시장상업 등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94조 :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데서 상업적 형태를 리용할 때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와 상품의 경제적 사명 및 유통조직 형식에 의하여 구분되는 상업의 유형. 상업형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는 소유형태이다.

### ○ 공급자·수요자(자재공급계약상)

북한에서 자재공급계약상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된다. 이 때 공급자가 자재의 부분적 공급기간에 공급해야할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재값의 7%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할 책임이 따른다. 또한 법이 정한 중요대상에 대한 자재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몇배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렇듯 상품공급계약에서 공급자에게 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국가계획경제의 수행상 당연히 강조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민법이론상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에 면책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를 보면, 자재공급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미 계약된 자재공급기간과 수량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재공급기관과 수량위반이 수요자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도 면책된다. 또한 수요자가 대불지급능력이 없어서 공급자가 자재공급을 중지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그리고 수요자가 자재를 체화, 사장시키거나 낭비하여 자재공급을 중지한 경우도 면책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수요자는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공급기간과 수량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 때의 위약금의 내용은 공급자의 경우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요자는 인도된 상품의 양과 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수령하여야 하며, 사고조서 등에 근거하여 공급자 또는 수송기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95조 :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기계, 설비, 원료,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공급하는 사람이나 기관.

○ 상품공급계약

북한에서 상품공급계약은 북한 민법상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상품을 수수하는 계약이다. 즉 공급자가 계획에 따른 일정한 소비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고, 수요자는 그것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제102조). 북한법은 러시아나 중국법과는 달리 상품공급계약을 또 다른 하나의 전형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론의 근본구조에 있어서는 자재공급계약과는 큰 차이가 없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국가적인 상품세부배정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공장, 기업소, 도매상업기업소 및 소매상업기업소인데, 때에 따라서는 공장 및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나 수매기업, 협동농장도 당사자로 될 수 있다(동법 제104조). 그런데 상품공급제도는 “생산기업소 - 도매상업기업소 - 소매상업기업소”라는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세 당사자 중 도매상업기업소가 중심이 되어 상품유통을 촉진·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각 당사자 사이에서 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게 보아 매매계약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으나, 이 제도의 핵심이 국가계획경제에 따른 상품의 공급에 있다는 점에서 매매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큰 특성이 있다.

다른 한편, 이 계약의 당사자로는 위에 든 주체에만 한정되고 개인은 결코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소매상기업소로부터 상품을 넘겨 받게 되는 최종의 단위는 개인임에 틀림없으나, 개인은 소매상기업소로부터 단순히 구입하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그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될 수밖에 없다.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상품세부배정계획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들인데, 대체로 일반소비상품과 수산물, 민수용석탄, 목재, 시멘트 및 농부산물이 그 중요한 것들이다.

<p>관계법 조항</p>	<p>민법 제102조 :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옮겨 련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공급계약 - 국가의 물자배정계획에 기초하여 한편 당사자(공급자)가 약정된 조건에 맞게 제품을 상대방에 공급할 의무를 지고 상대방 당사자(수요자)는 그 제품을 받고 대금을 제때에 물 의무를 지는 사회주의적 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계획적 계약의 한 형태. 공급계약은 매매계약과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구별된다. ①매매 계약에서는 개별적 공민이 당사자로 될 수 있으나 공급계약에서는 사회주의적 기관, 기업소만이 당사자로 될 수 있다. ②매매 계약은 소비자가 주로 대상이지만, 공급계약은 주로 생산 수단이 대상으로 된다. ③매매 계약은 임의의 시기에 어떤 소비수단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체결될 수 있으나 공급계약은 제정된 기간에 국가의 물자 배정계획에 예견된 물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정된 기관, 기업소들 사이에서 체결된다. ④매매 계약에서는 계약조건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일정하게 좌우되며 계약체결이 그들의 자유에 맡겨진다. 그러나 공급계약에서는 계약조건이 기본적으로 해당계획과제 의하여 미리 결정되며 계약체결이 당사자들에게 의무적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의 물자배정계획에 기초하여 한편 당사자(공급자)가 약정된 조건에 맞게 제품을 상대방에게 공급할 의무를 지고 상대방 당사자(수요자)는 그 제품을 받고 대금을 제때에 물 의무를 지는 사회주의적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자재공급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상품을 품종, 금액, 날자, 질, 규격과 같은 일정한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해 놓은 계약. 김일성저작선집(3권)(430면) : 지난날에는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물자를 제때에 대주지 않았습디다. 자재를 보장하는 것도 우에서는 종이쪽지나 떼주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다 생산자들이 책임 지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들과 그밖의 다른 책임적인 일꾼들이 생산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자재를 얻으러 돌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이며 자본주의적 사업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재를 우에서 아래로 날라다 주는 체계가 서게 되어 직장들은 자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본신사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 주문제

북한의 상업정책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제한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형태로 점차 개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잔재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북한은 1958년 농업협동화를 완료한 이후 상업유통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창고 및 수송수단 등을 배치하



고, 도매 및 소매상업기관은 주문제에 기초하여 생산기관으로부터 상품을 인수하고, 주민들의 상품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급하는 공급제위주의 상업정책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주문제는 생산일군들과 사업일군들의 협조에 기초하여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생산공급하는 제도로서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자기의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 상업에서 합법칙적 요구라고 강조된다. 주문제는 북한의 상업유통정책에서 계획적 공급을 위한 중요한 정책상 원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02조 :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옮겨 연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생산일군들과 사업일군들의 협조에 기초하여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생산공급하는 제도, 주문제는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자기의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 상업에서 합법칙적 요구로 된다.

### ○ 도매상업

북한에서는 모든 재화의 생산·분배가 중앙집권적 형태를 띠고 있는 상업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상업망에는 도매업과 소매업이 기본이 되고 있다.

도매상업은 중앙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중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업소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계획에 따라 소매업소에 상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도매상업의 종류에는 중앙에 개설되는 중앙도매업과 각도에 개설되는 도 도매소 이외에 1~2개 시·군의 상품 공급을 관할하고 있는 직물도매소, 신발도매소, 육류도매소, 수산물도매소 및 농산물도매소 등이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04조 :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공장,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공장,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상품을 도거리로 팔고사는 상업, 생산 기업소로부터 도매상업 기업소로, 도매상업기업소로부터 다른 도매상업기업소로, 도매상업기업소로부터 소매상업기업소로 상품이 류통될 때 이루어진다.

## ○ 소매상업

소매상업은 규모에 따라 상점, 매점, 매대로 구분하고, 취급품종에 따라 전문상점과 비전문상점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류, 채소, 일용품, 의류 등의 품종별로 나뉘어져 있다. 그밖에도 여러 상품을 종합 진열·판매하는 종합상점도 있다. 도시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소매상으로는 백화점을 들 수 있다. 생산공장이나 사업소 또는 조합별로는 소매상구실을 하는 직매점이 있으며 농촌의 리 단위에서는 국영상점이 소매상의 구실을 하고 있다. 아울러 주문판매나 이동판매와 같은 특수 판매조직이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04조 :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공장,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공장,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 곧 직접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

## ○ 국가수매

북한에서 농장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곡물은 모두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식량만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가수매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수매는 각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생산한 곡물과 농장원들의 여유곡물을 국가에 수매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품을 화폐형태로 교환하려는 주민들의 욕구를 실현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실량과 농산물의 계획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식량자원을 통일적으로 관장하는 동시에 통제하기 위해 수매 및 고급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일체계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매사업의 목적은 양곡의 공급원과 소비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장악함으로써 양곡의 공급과 소비를 통제하는 데에 있다. 또한 식량공급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식량의 낭비를 방지하고 비축을 꾀하는 데에 두고 있다. 아울러 양곡가공시설을 개선하여 도정실수율과 출미율을 높이고 부산물의 가공과 이용을 극대화하는 데에 두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09조 : 수매기관이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양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수매 - 국가기관에서 주민이나 협동경리로부터 농산물, 소비품 등을 사들이는 것.

○ 농업생산물

농업생산물은 농촌경리 부문에서의 생산물. 농업생산물에서 주되는 것은 알곡을 비롯하여 축산물, 남새, 과일, 공예작물, 누에고치 등이 열거되고 있다. 북한민법은 수매의 대상으로서 '양곡'외에 '원료'를 규정하고 있는데(제109조), 원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고기, 사과, 채소, 누에고치, 잎담배, 양털, 목화, 아마, 삼, 소가죽, 개가죽 등이 그 중요한 것으로 열거되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09조 : 수매기관이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양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농촌경리 부문에서의 생산물. 농업생산물에서 주되는 것은 알곡을 비롯하여 축산물, 남새, 과일, 공예작물, 누에고치 등이다.

○ 농업생산물수매계약

북한에서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북한민법에 의하면, 국가수매계획에 따라 수매기관이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으로부터 농산물을 수매하는 계약을 말하며(제109조 제1항), 상무, 유상계약이다(제110조).

이 계약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농산물 즉 양곡과 원료를 국가계획에 따라 동원하고 나아가서는 농장원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여(제111조), 계약당사자는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방법에 관하여는 반드시 합의를 보아야 한다.

북한민법은 제112조 이하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수매계획에 따라 정해지나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제112조). 둘째, 수매품의 포장기와 용기는 원칙적으로 수매기관이 보관한다(제113조). 셋째, 특히 수매기관에게는 수매에 있어서의 검사의무와 수매 후의 보관책임이 지워진다(제115조, 제116조).

북한에서 수매방법으로는 계획수매, 자유수매, 계약수매, 교역수매 등이 있다.

첫째, 계획수매는 양곡을 비롯한 유지작물, 과실류, 가축 등과 같은 농축산물에 대해 적용되며, 협동농장에 미리 시달된 수매계획에 의거하여 중앙에서 정해진 수매가격으로 협동농장이 수매기관, 기업소와 수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둘째, 자유수매는 계획수매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수매계획이 생산자에게 시달되지 않으며, 수요공급관계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수매가 진행된다. 그 대상은 계획수매 품목을 제외한 농축산물, 대나무 가공품 등이다.

셋째, 계약수매는 수매기업소와 협동농장 또는 농장원들간에 매매조건을 미리 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에 수매하는 방법이다.

넷째, 교역수매는 농민들에 대한 수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매대금을 농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으로 지불하는 수매방법으로 물물교환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수매품과 교환되는 상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09조 : 수매기관이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양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10.) :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국영농장, 협동농장과 수매기관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수매 - 국가기관에서 주민이나 협동경리로부터 농산물, 소비품 등을 사들이는 것.

### ○ 기본건설시공계약

북한에서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건설기업소와 건설 등을 관리운영할 기관·기업소·단체 사이에 맺는 계약으로서 시공자가 일정한 건설공사를 진행할 의무를 지며 건설주가 완공된 건설물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계약은 전문적인 국가건설기관에 맡겨서 하는 건설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급제도는

독립채산제도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민법은 이 제도를 그 속에서 규율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법은 각종의 공장, 광산, 도로, 주택 및 공공시설 따위와 같은 중요 부분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본건설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그것이 지니는 경제계약적 성질로 말미암아 일반도급계약에서 떼어 내어 특수계약의 형식으로 규율한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일반적인 예로 이루어지며, 기본건설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으로 불리우는 계약을 말한다.

북한민법상의 기본건설시공계약이란, 시공주(수급인)가 기본건설계약에서 제시된 일정한 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주(도급인)에게 넘겨 줄 의무를 지며, 다른 한편 건설주는 그것을 제때에 접수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제117조, 제118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은 작업봉사계약과 함께 도급계약의 한 형식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기관, 기업소 및 단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 작업봉사계약과 다르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주기관, 기업소(도급인)와 시공주기관, 기업소(수급인)이 되며, 개인은 제외된다. 이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국가기본건설계약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17조 :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10.) :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건설기업소와 건설물을 관리운영할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시공 -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하는 것.

### ○ 건설주

북한민법상 건설주는 시공주가 공사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조건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 또한 자기의 과실로 설계계산이 초과되었거나 또는 그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보다 초과된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설계상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건설주는 건설시공의 질을 보장

하기 위하여 시공내용을 검열통제하여야 하며,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주는 잘못된 공사와 완료하지 못한 공사를 부당하게 실적에 포함시켰을 때에는 그 실적확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계법조	민법 제118조 :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건설을 주문하고 완공된 건설물의 관리자로 주인으로 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기관, 기업소, 단체, 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을 직접 맡은 전문기관인 시공주에게 건설을 위탁한다.

### ○ 시공주

북한민법상 시공주는 기본건설계획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공사를 제때에 착수하고 공사완공일을 엄격하게 지킬 의무와 시공의 질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시공주는 임의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설계변경은 법적 절차에 따라 건설주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시공주는 완성된 건설물을 인계한 후 1년 내에 시공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관계법조	민법 제118조 :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건설주의 주문에 따라 건설물을 계약대로 직접시공하는 전문건설 기업소.

### ○ 준공검사

북한민법상 준공검사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부하시운전이 완료되었을 때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완성된 건설물은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인도·인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조업이 허용된 건설물의 경우에는 부분별 준공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5조).

준공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준공검사승인서와 인도인수조서를 작성하여 시공주와 건설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	민법 제123조 :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하는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었을 때에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해당 건설대상의 시공이 완전히 끝나다음에 설계와 규정이 요구대로 준공되었는가를 검사하는 것.

○ 부하시운전

준공검사를 위한 설비의 부하시운전을 할 때는 건설주가 주관하여 시행하며, 여기에 시공주와 설계기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물의 성질상 부하시운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점검사와 '무부하시운전'을 거쳐 인도·인수한다. '무부하시운전'은 시공주가 주관하며, 이때에도 설계기관과 건설주는 입회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시공주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시운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건설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	민법 제123조 :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하는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었을 때에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부하 - (말겨지거나 들췌어진) 부담. 시운전 - 교통수단이나 기계같은 것을 새로 만들었거나 크게 수리하였을 때 시험적으로 하여보는 운전.

○ 화물수송계약

북한에서 화물수송계약은 북한민법상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수송계획에 따라 운수기관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서 '짐보내는 자'는 화물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운수기관은 그 화물을 운반하여 수화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제125조, 제126조).

종래의 수송계약은 철도계약만을 계획적 계약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민법전은 그 범위를 한결 넓히고 있다. 유상의 쌍무계약이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운수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이며, 개인은 당사자로 될 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화물의 이름, 수량, 보내는 곳과 닿는 곳, 화물을 싣고 부리는 방법, 송화인과 수화인의 이름에 관하여는 반드시 합의를 보아야 한다(제127조). 화물수송계약에 관한 규정들은 그 밖의 일반수송계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134조) 이 규정이 적용될 범위는 매우 넓다.

송화인은 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운송기관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반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126조).

송화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화물을 제때에 운송기관에 넘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운수기관은 그 화물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할 의무가 있다(제129조).

송화인은, 달리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할 책임을 지며, 운수기관은 화물을 수화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잘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를 진다(제129조, 제130조).

운수기관은 화물이 도착하면 곧 수화인에게 통지해야 하며(제132조), 도착된 화물에 사고가 있어 수화인으로부터 사고조사작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133조제2항).

수화인은 화물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계법령	민법 제125조 :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할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10.) : 화물수송계약은 국가의 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운수기관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화물수송 -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원료, 연료, 자재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철도, 자동차, 배, 관, 삭도, 벨트콘베아, 비행기 등으로 실어 나르는 것.

### Ⅲ. 計劃에 基礎하지 않는 契約에 관한 用語

#### ○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일반계약)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일반계약)'에 관하여 북한민법은 제3장 제135조 내



지 제23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계약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는 일반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일반계약에 관한 규정들이다.

전자에 관한 규정은 일반계약의 의의(제135조), 계약의 성립(제136조), 계약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제137조), 합의의 내용(제138조), 계약의 종류(제139조), 계약체결의 형식(제140조), 부동산계약체결의 형식(제141조),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제142조), 계약의 취소(제143조), 계약의 이행과 하자문제(제144조~제146조) 그리고 삼자를 위한 계약(제147조)에 관한 규정들이다. 이들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148조 이하의 일반계약에만 한정되므로 전술한 계획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후자에 관한 규정은 매매계약(제148조~155조), 작업봉사계약(제156조~제165조), 보관계약(제166조~제177조), 빌리기계약(제178조~제184조), 위탁계약(제185조~제192조), 여객운송계약(제193조~제199조), 저금계약(제200조~제204조), 보험계약(제205조~제212조), 위임계약(제213조~제220조), 꾸기계약(제221조~제225조), 은행대부계약(제225조~제229조) 그리고 합동작업계약(제230조~제234조)이다.

북한에서 일반계약은 많은 경우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에 체결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서도 체결되기도 한다. 북한은 일반계약에 관하여 “국가의 일반적 시책에 의한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잘 미치도록 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논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인민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나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사업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35조 :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계약 - 민법상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킬데 대한 두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민주조선(1991. 5. 10.) : 일반계약은 많은 경우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에 체결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 호상간에 체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계약은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한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잘 미치도록 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논다. 인민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나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사업은 많은 경우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현된다.

○ 승낙

북한민법은 제136조에서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일방당사자의 제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당사자가 그 제의에 그대로 응하지 않고 그 제의와는 다른 내용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당사자가 새로운 제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계약체결절차는 남한민법상 계약의 체결절차와 다르지 않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36조 :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8.) :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대상, 기간, 값 같은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를 본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 희유금속

북한에서 희유금속은 얻기 힘든 유색금속으로서 휘귀한 금속을 말한다. 이 금속은 땅속에 비교적 적게 분포되어 있거나 매우 흩어져 있으며 그 성질이 비교적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얻기 힘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이 금속은 예컨대 월프람, 몰리브덴, 티탄, 탄탈, 인디움, 갈륨, 게르마늄, 셀렌, 텔루르, 토륨, 우라늄 같은 것을 비롯하여 70여가지가 있으며, 그 성질에 따라 경희유 금속, 난용성 희유금속, 희토류희유금속, 방사성 희유금속으로 나눈다. 이에 대해 희유금속은 원자력 공업, 전자공업 등 새로운 기술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금속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희유금속은 국가의 승인하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과 국가통제품과 함께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37조 :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희유금속, 그 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	---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5. 8.) :                  국가의 승인밑에서만 가질수 있는 물건이나 희유금속, 그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희유한 금속이라는 뜻으로 얻기 힘든 유색금속. 땅속에 비교적 적게 분포되어 있거나 매우 흩어져 있으며 그 성질이 비교적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얻기 힘들다. 월프람, 몰리브덴, 티탄, 탄탈, 인디움, 갈리움, 게르마니움, 셀렌, 텔루르, 토리움, 우라늄 같은 것을 비롯하여 70여가지가 있으며 그 성질에 따라 경희유 금속, 난용성 희유금속, 희토류희유금속, 방사성 희유금속으로 나눈다. 원자력 공업, 전자공업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많이 쓰인다.</p>
-------------	--

○ 불로소득

북한민법은 제138조에서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목을 통해 북한이 이익추구를 위한 계약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일반계약은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한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잘 미치도록 하는 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국가주도의 분배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소비생활 관련부문에 한하여 일반계약을 용인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앞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제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p>관계법조</p>	<p>민법 제138조 :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대상, 리행기간, 값 같은 본질적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공민들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 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 다른 사람의 로동의 열매를 착취하여 얻는 소득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경제적 근원을 두고 있는 착취사회의 고유한 현상이다.</p>

○ 매매계약상 합의

북한민법상 매매계약은 매매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합의에 관한 의사표시는 특별히 서면형식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요식행위이다. 매매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목적물이 지정과 가격의 결정은 필요적 합의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민법상 매매계약의 대상물 및 가격은 당사자가 언제나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보면, 북한민법 제152조에서 열거한 물건들은 그 등급기준과 값이 미리 공시되고 당사자는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도인인 소매상

업기업소는 언제나 주민의 수요에 따라 물건을 확보하고, 그 필요에 따라 반드시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50조). 다만, 개인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합의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다.

관계법조	민법 제138조 :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대상, 리행기간, 값 같은 본질적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공민들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 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8.) : 계약이란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쌍방 당사자들이 합의를 말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합의 - 서로 뜻이 맞는 것.

### ○ 계약의 본질적 조건

북한민법상 '계약의 본질적 조건'은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합의 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합의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러한 본질적 조건에 합의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의 본질적 조건은 구체적인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계약이든 동일하게 해당되는 조건은 계약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재공급계약, 상품공급계약, 농업생산물수매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화물운송계약 등에 있어서 계약의 대상에 관한 합의는 계약의 본질적 조건에 해당한다.

북한민법상 계약의 본질적 조건은 남한민법상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	민법 제138조 :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대상, 리행기간, 값 같은 본질적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공민들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 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계약의 내용(조건)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 조건(내용)이다. 계약의 본질적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대상과 가격 및 계약당사자가 포함된다. 민주조선(1991. 5. 8.) :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라는데 있으며 이점에서 계약은 또한 당사자의 단독적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행위와 구별된다.

○ 증거력이 있는 계약

계약체결에 있어서 사회주의민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민법은 형식적인 문서주의를 배격하면서 실천적 견지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경우에 한해서 서면형식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계획적 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고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되거나 유효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즉, 말로써 성립된 계약은 재판할 때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민법상 계약의 체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체결원칙과는 다른 점이다.

관 계 법 조	민법 제140조 :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간,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말로 맺을 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면과 같은 증거력이 있는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예심, 검찰, 재판기관이 당사법정책에 기초하여 제기된 사건의 사실, 사정들을 밝히고 확정하는데 토대로 되는 자료. 민주조선(1991. 5. 8.) :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말로 맺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맺을 수도 있으나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맺은 계약이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의 원칙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의무를 지니는 계약이므로 그 이행은 각 당사자가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북한민법도 이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제142조). 예를 들면 팔고사기 계약에서 그 당사자들은 물건을 인도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일방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상대방당사자는 자기의 의무이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원칙은 상무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상의 견련성에 관련된 원칙으로서 남한민법에도 규정하고 있다(제536조).

관계법조항	민법 제142조 :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당장결정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 두는 것.

### ○ 팔고사기계약(매매계약)

북한민법상 팔고사기계약은 일반 당사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으로서 남한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북한 민법상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나 경영상이나 경영상의 관리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며, 매수인은 그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제148조). 이 계약은 일반계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민법이론이 매매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민법 및 중국민법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점에 있어서는 각국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매매의 당사자, 목적물의 범위 등에서 서로 다른 바도 적지 않다. 북한민법상 매매계약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매계약은 일정한 물건이나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상품공급계약이나 농산물수매계약과 그 성질을 같이 하며, 임대차계약 등의 대차계약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둘째, 상품공급계약이나 농산물수매계약이 계획적 계약임에 반하여, 매매계약은 일반계약이다. 이러한 면에서 매매계약은 전이자의 계약의 체결방식, 목적물 및 당사자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물론 매매계약도 국가의 총체적인 상품유통계획의 체계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획과정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아니다.

셋째, 매매계약은 쌍무, 유상, 비현물계약이다. 이러한 점에서 증여, 대차계약등과 차이를 이룬다.

그러나 북한의 팔고사기계약은 주로 국영소매상업망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소비용품을 사거나 기관·기업소 등이 사무용품을 사는 경우 또는 농민시장을 통하여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관계에 한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매매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p>관계법조</p>	<p>민법 제148조 :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5. 8.) : 우리 근로자들은 유족하고 문화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용품과 문화용품, 식료품들을 낮은 값으로 상점에서 사는데 이 경우에 상점과 근로자들 사이의 거래는 법적으로 볼 때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되며 담보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한편 당사자는 일정한 물건을 다른편 당사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다른편 당사자는 그 물건을 넘겨 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지는 계약. 물건의 소유권이냐 경영상 관리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계약이다.</p>

○ 사는 자(매수인) · 파는 자(매도인)

북한민법상 매매계약의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생산수단 또는 국가계획하에 있는 농산물 등의 매매는 계획적 계약에 해당하며 이른바 팔고사기계약과 달리 취급된다. 일반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지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해져 있어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공장·기업소가 생산하여 계획적 계약에 따라 공급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매상업기업소만이 매도인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농축산물과 농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에 대해서는 수매기관만이 매수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0조, 제152조).

한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효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도인은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물건을 매도할 수 있는 자는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이 있어야 하며, 처분권이 없는 자임을 알고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매도인은 보증기간 동안 매각물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을 지며, 매수인이 수매기관인 경우 국가계획에 따라 기본수매품종의 등급기준과 같은 가격을 공시해야 하며 계약상 목적물을 약정기간내에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매수인은 수매대상이 되는 물건을 수매장소까지 운반할 책임을 지며 수매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는 책임은 수매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법 제149조 :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 자는 물건을 사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 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 자가 물건을 판다는 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매수인 - (물건을) 사서 받는 사람.                  매도 - 팔아 넘기는 것.</p>

### ○ 농민시장

북한에서 농민시장상업은 상업형태의 하나이다. 농민시장은 국영상업이 중심 역할을 하는 데 비해 그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은 1958년 8월 '내각결정 제140호'에 의해 농촌시장이 없어진 대신 생겨난 유통기구로서 협동농장 농민들이 개인부업으로 생산한 농·축산물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장소로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영상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시장에는 곡물류와 공산품에 대한 거래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농민시장은 국영 및 협동단체가 모든 유통체계를 총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농민들이 개인부업 차원에서 생산한 여유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일정한 장소에서 직접 매매하게 하는 형태이다. 이 시장은 상설적으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군단위로 1~2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개설된다.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은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닭·야채류·달걀·오리·토끼 등의 가축이며, 가격은 시장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북한은 농민시장이 자본주의적 잔재형태로서 뒤떨어진 상업형태라고 하여 이 시장의 확대를 제한하여 개인터발의 크기를 제한하고 농민시장의 규모를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공업화되고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어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게 될 때 농민시장은 완전하게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영상업체계를 통한 소비품공급이 부족하고 수매가격이 낮기 때문에 농민시장에는 매매금지품목에까지 암거래가 형성되는 등 오히려 북한경제의 낙후성에 따라 그 거래 품목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법 제155조 :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살 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 것은 금지한다.</p>
------------------	---



<p>북한용례</p>	<p>김일성저작선집(23)(465면) :                  농민시장이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 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파는 상업의 한 형태입니다.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파는 상업의 한 형태 또는 그러한 상업활동이 진행되는 일정한 장소. 농민시장은 사회주의 사회에 있는 상업형태의 하나이지만 자본주의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될 때 농민시장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p>
-------------	---

○ ‘되거리’(전매)

북한에서 ‘되거리’는 어떤 상품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비싸게 팔아 넘기는 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전매행위를 의미한다. 북한민법에 의하면, 농촌에서 부업으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농민시장에서만 직거래를 할 수 있고, 매입한 물건을 비싼 가격으로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55조).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155조 :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할 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 것은 금지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 상품을 사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비싸게 팔아 넘기는 일</p>

○ 작업봉사계약

북한민법상 작업봉사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주문받은 일을 하여 그 결과를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을 부탁한 상대방은 그 작업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게 되는 약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계약은 공민이 물건을 제작하거나 수리·가공하거나 그 밖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작업하는 자(수급인)는 주문 받은 일을 완성하여 그 결과를 작업을 맡긴자(도급인)에게 넘겨 줄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한다(제156조, 제157조). 이 계약은 도급계약의 한 형식이며 쌍무, 유상계약이다.

작업의 내용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양하나 적어도 계획적 계약인 기본건

설시공계약은 여기서 제외되고, 작업봉사제도의 취지에서 미루어 보아, 자동차나 선박 등의 기계설비 등의 수리, 보수를 비롯하여 이에 유사한 물건들의 제작이나 가공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작업을 위한 자재나 부속품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이 부담한다(북한민법 제160조제1항). 만약 도급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물품에 대한 검사의무가 있다(동조제2항).

둘째, 수급인은 작업용의 물품을 '소중히 다루고' 소비기준과 기술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맞게 사용하며, 쓰고 남은 자재는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161조):

셋째, 수급인은 작업기일을 지켜야 하는 바, 그 기간 내에 작업을 끝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63조).

넷째, 수급인은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제164조).

다섯째, 도급인은 작업결과를 제때에 인수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수급인이 소정의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56조 :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 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잘 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맡은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상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해당한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지는 계약. 일용품의 수리, 가공등 분야에서 널리 적용된다.

### ○ 보관계약

북한민법상 보관계약은 물건의 보관자가 그것을 보관한 뒤 임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며, 임치인이 이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67조). 보관계약은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하고 물건을 수취인에게 넘겨주거나 수취인이 물건을 인수하고 보관증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유상의 요물계약이라 할 수 있고, 크게 보아 남한민법상 임치에 해당한다. 북한민법상 보관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관계약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공민들 사이의 보관계약에서는

보관료의 수수가 금지된다(제167조제2항).

둘째,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체결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68조제2항).

셋째, 수취인은 보관물을 성실히 보관하여야 하고(제170조), 임치인은 그 물건을 보관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을 미리 수취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제169조).

넷째,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치인은 제때에 보관물을 찾아가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인수해 가지 아니하면 별도로 정해지는 고율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제172조).

다섯째, 보관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계약의 체결없이 국가사회단체의 재산을 보관 관리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제175조, 제176조). 여기서 표현하는 법적 의무없이 타인의 물건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는 남한민법상 '사무관리'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보관계약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공민이 법적 의무없이 국가·사회협동단체 또는 공민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보관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성질상 보관관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66조 : 공민이 물건을 맡기고 건사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보관계약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호상협조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편 당사자(맡기는 사람)가 보관시킬 물건을 상대방에 넘겨주고 상대방(맡는 사람)은 그것을 책임적으로 건사하였다가 돌려줄 의무를 지는 계약

### ○ 빌리기계약

북한민법상 빌리기계약은 대주는 차주가 물건을 일정기간 이용하도록 넘겨 줄 의무를 지고, 차주가 사용료를 부담하고 그 물건을 사용한 후 이를 대주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한다(제178조). 종래의 북한민법이론에 의하면, 빌리기계약의 제도적 목적은, 첫째로 기업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 설비를 방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소의 독립채산제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련된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둘째로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들이

대차계약을 통하여 과중한 자금부담없이 필요한 물건을 때에 따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데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민법은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같은 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 계약에 따라 한다”(제177조제1항)고 하고, “빌리기 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이행하여야 한다”(동조제2항)고 그 목적을 규정하였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오히려 두 번째의 목적에 치중하고 있다.

빌리기계약은 원칙적으로 차주에게 사용료 지급의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남한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가까운 대차관계라 할 수 있으나, 남한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주로 부동산대차에 보다 중점이 놓여지는 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그 대상을 주로 도서나 생활용품 등의 이용에 보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빌리기계약은 도서, 특허물, 녹음 및 녹화물 같은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빌릴 때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제179조제1항)고 하고, 또한 “공민들 호상간의 빌리기 계약에서는 사용료를 주고 받을 수 없다”(동조제2항)고 하고 있다. 이 계약은 남한민법상의 ‘사용대차’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민법의 빌리기계약은 임대차도 아니고 사용대차도 아닌 특수한 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민법 제177조 :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이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는 계약.

### ○ 보증금

북한민법은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환을 전제로 임차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보관받는 보증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84조). 이러한 보증금제도는 남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용료 지급방법의 하나인지 순수한 담보의 성질에 불과한지는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금지하는 북한체제상 이러한 보증금제도는 임차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순수한 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법조	민법 제184조 : 보증금을 설정하고 맺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 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보증하기 위한 담보로 내는 돈.

○ 위탁계약

북한민법상 위탁계약은 기업소, 단체가 판매, 수치 또는 그 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한 재산거래행위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자는 그 결과를 인수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85조, 제186조).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제186조제2항),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게 넘겨 주어야”(제187조) 하기 때문에 그 성질은 요식·요물계약이다.

위탁제도의 목적은 적은 노력과 자금으로써 국가사회의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발휘시키는 데 있다(제185조제2항)고 보아 민법전이 처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계약은 기관, 기업소 및 단체만이 위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위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거래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남한민법상의 위임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관계법조	민법 제185조 :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구매나 그 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노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한편 당사자(부탁받은 사람)가 상대편 당사자(부탁한 사람)로부터 부탁받은 법률행위를 자기의 이름과 부탁한 사람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상대편은 이에 대해 보수를 물 의무를 지는 계약. 위탁계약은 일정한 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부탁받은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며 보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부탁받은 사람과 부탁한 사람사이의 계약 곧 부탁받은 사람이 부탁한 사람의 이름과 부담으로 부탁받은 법률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부탁한 사람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물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물건의 구매나 판매에서 리용된다.

## ○ '려객수송계약'

북한민법상 여객수송계약은 기차,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의 운수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은 운수기관에 소정의 값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운수기관은 여객을 여행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한다(제193조, 제194조).

종래 북한민법은 철도운송계약만을 전형계약으로 제시하고 그 밖의 운송계약을 전형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민법은 운송계약을 두 가지 전형계약으로 나누었는데 그 하나는 화물수송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여객수송계약이다. 또한 민법은 모든 여객운송관계를 계획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 계약을 일반계약으로 돌려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 계약에 관한 북한민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객수송계약은 운수기관이 발권한 때에 성립한다(제194조제2항).

둘째,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에게 의료봉사나 도중식사를 비롯한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제195조).

셋째, 여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수기관은 적당한 다른 운수수단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제196조)

넷째, 여객은 학령전 어린이를 무료로 데리고 탈 수 있으며, 소정량의 짐을 가지고 탈 수 있다(제198조).

다섯째, 여객은 운수수단과 시설 및 비품을 아껴야 하고, 소정의 여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수기관은 그 여객에게 손해배상을 시키거나 또는 운수수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9조).

북한은 여객운송계약은 화물운송계약과 함께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 보급하여 계획과제의 정확한 수행을 보장하며, 인민의 편의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두고 북한은 고객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인의 자유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규정들은 선언적이고 선전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민법은 이러한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운수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제재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여객은 단지 수동적 지위에 머물러 있어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주장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 계 법 조 항	<p>민법 제193조 :</p> <p>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여행은 여행수송계약에 따라 한다.</p> <p>여행수송계약은 인민들의 여행상 안전과 편리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수송계약 - 한편 당사자(수송인)가 짐또는 여객을 일정한 장소까지 실어다 줄 의무를 지고 다른편 당사자(짐을 보내는 사람 또는 여객)가 그에 대하여 제정된 운임을 물 의무를 지는 계약.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운수수단들이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송인으로는 언제나 국가 또는 협동단체 수송기관이 나선다. 짐을 보내는 사람은 기관, 기업소, 단체이거나 개별적 공민이다. 수송계약은 수송수단의 종류에 따라 철도수송계약, 자동차수송계약, 해상수송계약, 강하수송계약 및 항공수송계약으로 구분되며 수송대상에 따라 화물수송계약과 여객수송계약으로 나눈다.</p>

○ 저금계약

북한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저축과 인출행위를 민법상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민법상 저금계약은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경우에, 저금기관이 돈을 저금해 두었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지출해 줄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한다(제201조제1항).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증서를 발행해 준 때에 성립한다(제201조제2항).

저금계약제도는 유희자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이용하고, 다른 한편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00조제2항).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금하고자 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제202조). 저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저금기관은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주어야 한다(제202조제2항).

둘째, 공민은 어느 때나 저금할 수 있고 출금할 수 있다(제203조제1항).

셋째,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204조).

북한에서 주민들의 금융기관의 이용실태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북한 현실로는 북한주민은 생활비 이외에는 현금취득의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은행이용은 생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북한에는 일반 시중은행이 존재하지 않고 특수목적에 의해 설립된 국가경영의 은행이 있으며, 1980년대 후반 합영법에 의해 외국과의 합작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합작금융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들 은행들도 그 목적상 일반주민들의 이용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00조 :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계약은 놓고 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정한 액수의 돈을 저축하고 해당비율의 리자나 당첨금을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돈을 맡긴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나 기한이 되었을 때에는 돈을 내주어야 한다.

○ 저금기관

북한민법은 저금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조선중앙은행 산하에 '저금소'를 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도 북한주민의 가입을 장려하는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대외경제개방과 관련하여 외화예금을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고율이자를 지급하는 예금과 외화적금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국가에서와 같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것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북한은 주민들의 유희자금을 효과적으로 끌어내어 산업자금화 하기 위하여 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저금소의 규모는 보통 평양시의 경우 15평정도이고, 지방은 3평정도이다. 직원은 소장과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군단위점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저금소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는 보통저금, 준비저금, 추첨제저금 등이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00조 :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계약은 놓고 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저금소 - 은행에 속해 있으면서 저금사업을 맡아하는 신용기관.

○ 저 금

북한민법에는 저금의 종류, 이자율 등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북한은 금융상품에 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역할에 참여한 노동자·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삶의 질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북한에서 저금은 금



금융상품으로서 개발되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외화확보노력과 암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화폐와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금융상품을 사용하기에는 아직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북한에서 저금의 종류에는 이른바 '준비저금', '보통저금', '추첨제 보통저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준비저금은 20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예금하기로 계약하고 수시로 예입하였다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달성되면 연리 3.6%의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저금을 말한다. 보통저금은 남한에서의 보통예금과 같은 것으로 예입과 인출이 자유로운 저금으로서 이자율이 연 3%이다. 그리고 추첨제보통저금은 보통저금의 일종으로서 따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분기마다 실시하는 추첨에 의하여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복권형태의 저금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01조 :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출 의무를 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 때에 맺어진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당장 쓰지 않는 돈을 계약된 조건에 따라 리자나 당첨금을 받으면서 은행기관이나 그 밖의 신용기관에 저축하는 것 또는 그렇게 저축한 돈.

○ 보험계약

북한민법상 보험계약은 보험에 가입한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그 공민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한다(제206조).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때에 성립하며(제206조제2항),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개인인 공민에 한한다.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인체보험은 다시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및 화재보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민법상 보험계약제도는 뜻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며, 유류자금을 동원이용함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제205조제2항). 그 내용에 관하여 다음에 개관한다.

첫째, 인체보험가입자는 소정의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그 뒤 보험료

를 납부하면 그때부터 보험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제209조).

둘째, 인체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보험기관은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가입자에게 만기 보험금을 지급한다(제210조).

셋째, 재산보험가입자는 소정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사고없이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납부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이 된다(제211조).

넷째, 재산보험가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곧 보험기관에 알리어 손실 감소를 위한 조치를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이 삭감되거나 전적으로 받지 못할 수가 있다(제212조).

다섯째, 보험가입자나 보험보상금 수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다(제207조).

여섯째,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지급한 보험기관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제208조).

북한의 보험제도는 남한의 보험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보험제도는 보험기관이 국유화되어 있는 점, 보험가입이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라는 점, 법인의 보험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관계법조항	<p>민법 제205조 :</p> <p>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놓고 있는 돈을 동원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국가보험기관이 일정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보험증권에 표시된 사람(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할 의무를 지며 보험에 든 사람이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물 의무를 지는 계약.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의하여 직접 보험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의무보험을 제외한 모든 자원적 보험이 국가보험기관과 보험에 들 사람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보험에 든 사람과 보험기관사이에 맺는 계약. 보험기관은 보험에 든 사람에게 사고가 났거나 기간이 끝났을 때 보험상금 또는 보험금을 물 의무를 지고 보험에 든 사람은 보험기간에 계약한 일정한 보험금을 물 의무를 진다.</p>

### ○ 보 험

북한은 보험에 관하여 해당한 기관에 미리 정해진 액수의 돈을 시기별로 물게

하고 계약에서 밝혀진 사고가 생겼을 때나 계약 기한이 찼을 때 제정된 액수의 목돈을 받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보험제도는 자연 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막아주기도 하고 공민이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죽었을 때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북한민법상 보험은 인체보험(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양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종류에 따라 특별규정을 두어 구별하고 있다(제205조~제212조).

관계법조항	민법 제205조 :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 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놓고 있는 돈을 동원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해당한 기관에 미리 정해진 액수의 돈을 시기별로 물게 하고 계약에서 밝혀진 사고가 생겼을 때나 계약 기한이 찼을 때 제정된 액수의 목돈을 받는 제도, 사회주의 국가의 보험제도는 자연 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막아주기도 하고 공민이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죽었을 때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보험기관

북한은 1946년에 국가와 민간의 공동으로 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54년에 이를 폐지하였다. 이로써 북한에서 보험업무는 국가가 독점하는 업무가 되었다. 그후 북한은 신용업무에 관한 국가의 통일적 관리를 위하여 1964년에 국가보험사업을 대부기능까지 담당하는 산업은행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1976년에는 산업은행이 중앙은행에 통합되면서 보험업무도 조선중앙은행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06조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진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국가에 의하여 유일적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자로서는 언제나 국가보험기관이 나선다. 국가보험기관의 기본의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 인체보험(계약)

북한에서 인체보험은 일반 주민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의무적 인체보험과 자원적 인체보험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먼저 의무적 인체보험은 피해보험의 형태로서 운임에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음 자원적 인체보험은 근로자(16세 이상 55세 이하)들이 국가기관과 계약을 맺어 이루어지는데 3년, 5년, 10년, 20년의 단위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로 자기 임금의 1%를 보험료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인체보험을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이는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민법상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 등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민법 제209조 :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과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으며 보험료를 물면 그 때로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북한응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공민들이 노동능력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처하여 실시하는 보험. 인체보험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배려를 반영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인체보험 - 자연 재해 또는 불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형성하고 리용하는 국가 보험의 한 형태. 인체보험계약 - 한편 당사자인 공민은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물 의무를 지며 다른 편 당사자인 보험기관은 그 공민이 사망하거나 보험기간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내줄 의무를 지는 계약.

○ 재산보험

재산보험은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한 형태를 말한다. 북한민법은 재산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납부의무 외에 보험사고발생사실의 보험기관에 통보의무 및 손해확대방지대책 수립의 의무 등(제212조)의 보충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민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에서 동지적 협력과 방조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래서 북한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국가재산과 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의 융성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는 의미에서 절약규율보장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11조 :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연 재해나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 위임계약

북한민법상 위임계약은 공민이 재산행위와 그 밖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수임자는 위임받는 행위를, 위임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임자는 수임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 받는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한다(제213조, 제214조).

위임계약은 공민만 체결할 수 있고 무상으로 하고 있다(제214조제2항).

위임계약의 대상은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법률적 의의를 갖는 행위"에 걸쳐 행해질 수 있으나, 입양이나 유언과 같이 본인 자신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성질상 위임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215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임자는 위임받는 범위 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으나, 수임사항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할 수도 있다(제216조).

둘째, 수임자는 자기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위임자가 책임을 진다(제217조). 또한 위임자는 자기의 과실로 말미암은 수임자가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제219조제2항).

셋째, 위임자는 위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수임사항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제218조), 위임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임자가 처리한 결과를 곧 접수하고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제219조제1항).

넷째,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제220조).

관계 법 조	<p>민법 제213조 :</p> <p>공민이 재산거래와 그 밖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한편 당사자(위임받은 사람)가 다른편 당사자(위임한 사람)로부터 위임받은 행위를 그의 이름과 부담밑에 수행할 의무를 지는 계약. 우리나라에서 공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민사거래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사이의 계약.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한 사람의 이름과 부담으로 행위를 하여 위임한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는 계약이다. 공민이 자기에게 온 소포를 다른 사람을 시켜 찾아오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리용된다.</p>

○ 꾸기계약

북한민법상 꾸기계약은 공민들 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대차함에 있어서, 대주는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고 차주는 동일액의 돈이나 종류와 양이 같은 물건을 대주에게 변제할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한다(제221조제1항, 제222조제1항). 이 계약은 대주가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때에 성립되므로(제222조제2항) 요물계약이다.

북한의 꾸기계약은 종래 소비대차계약으로 관념되어 “법이 규정하였거나 당사자의 약정이 특별히 있을 때에만 유상이다”라 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상소비대차를 인정한 바 있으나, 현행법은 “이자 또는 이자형태의 물건을 주고 받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제221조제2항)고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유상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민법상의 소비대차계약과도 다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차주는 기한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으나, 차주는 기간 중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223조).

둘째, 계약기간 만료 후 목적물을 상환할 때에 같은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다른 물건으로써 상환할 수 있다(제224조).

관계 법 조	<p>민법 제221조 :</p> <p>공민들 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 받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어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꾸어준 자는 어느때든지 꾸어준 돈을 몰도록 꾸어쓴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 ‘리 자’

북한에서 일반주민 사이의 꾸기계약에 있어서는 이자가 없지만, 이자의 개념은 있다. 북한의 저금제도에 있어서는 예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를 지급한다(‘저금’ 참조). 일반주민에 대해 꾸기계약에서 이자가 없다는 것은 점을 통해 북한에서 일반주민은 돈을 거의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체제의 본질이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생산신용을 위한 이자부금융소비대차는 금융자본의 형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동맥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생산의 역할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하게 되므로 꾸기계약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21조 : 공민들 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 받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 민법 제229조 : 대부받은 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더 높은 률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저금한 돈에 대하여 일정한 비례로 덧붙여 주는 돈. 낡은 사회에서 남에게 돈을 꾸어주고 본값 밖에 더 받는 일정 비율의 돈.

○ 은행대부계약

북한민법상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부를 함에 있어서,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자에게 화폐자금을 대출해 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 자는 그 자금을 이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은행기관에 상환할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한다(제225조제1항, 제226조제1항). 다시말해 은행대부계약은 은행이 대출을 받

고 대출받은 자가 일정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약정을 말한다.

은행대부계약의 기본목적은 국가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화폐자금을 아끼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체결하고 이행시키는 데 있다(제225조제2항). 따라서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이 계약은 여러 가지 특징을 띠게 되는데, 특히 같은 성질의 신용계약인 꾸기계약과 구별된다. 그 차이점을 좀더 보면, 첫째로 후자는 계약당사자가 공민 상호간임에 반하여 전자는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둘째로 전자는 계약의 대상물이 금전에 한정됨에 반하여 후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물건도 그 대상물이 된다. 셋째로 전자는 언제나 대부계획을 전제로 하여 체결됨에 반하여 후자는 어떠한 계획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넷째로 전자는 대부금의 사용목적이 정해지는 것이나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섯째로 후자는 언제나 무상임에 반하여 전자는 언제나 유상이다.

또한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상대방에게 대부금을 인도한 때에 성립되기(제226조제2항) 때문에 요물계약의 성질을 띤다.

다음에 은행대부계약의 주요내용을 개관한다.

첫째, 대부받는 자는 대부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을 은행기관에 담보하여야 한다(제227조제2항).

둘째, 대부받는 자는 대부금을 지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한전에 회수하거나 차후의 대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228조).

셋째, 대부받는 자는 대부금의 원본과 이자를 소정의 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다 높은 비율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제229조).

북한에서 은행대부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으며 기관·기업소·단체와 산업은행 사이의 계약형태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있다. 더욱이 개인간의 소비대차의 경우도 제도의 특성상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만큼 북한주민이 이를 통한 자금을 마련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p>관계법조항</p>	<p>민법 제225조 :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율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맺고 이행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은행이나 신용기관 등 금융 기관이 일정한 기간안에 되돌려 받는 조건 밑에서 수요자에게 자금을 꾸어주는 경제관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부는 높은 비율의 리자를 전제로하여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잉여가치를 짜내는데 리용된다.</p>



○ 은행(기관)

북한에서 은행은 조선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단일은행체계를 기본틀로 하고 있다. 기타은행은 조선중앙은행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있다. 즉, 북한은 단일은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를 전체로 하여 통일적으로 자금을 계산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다수은행제와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다. 다음에 북한의 은행에 관하여 개관한다.

첫째, 조선중앙은행은 예산자금의 유일한 공급기관으로서 남한의 한국은행, 특수은행, 예금은행 및 보험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에 대한 감사 및 국가재산 관리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좀더 보면, 화폐의 발권업무, 통화조절업무, 전국적 결제업무, 예산출납 및 국고업무와 함께 귀금속의 수매 및 관리기능을 한다. 또한 상업은행기능으로서 예금 및 대부업무를 하며, 공급기관으로서 각 기관, 기업소에 자금을 대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내보험업무의 기능을 한다.

둘째, 무역은행은 국립외화전문취급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의 산하기구이다. 이 은행의 주요업무는 무역결제업무와 지불 및 보증업무, 무역환율 결정, 외화태환권(외화와 바꾼 돈표) 발행, 북한원화와 외화의 교환비율 결정 및 공표 등이다.

셋째, 기타 외환은행으로서 금강은행과 대성은행이 있다. 금강은행은 기계, 금속, 광물, 화학제품 등의 수출입과 무역회사의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다. 대성은행은 대성무역, 조선만경무역상사 등의 대외결제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기타 은행으로 조선창광신용은행과 조선국제신용은행 등이 있다. 조선창광신용은행은 당 기계공업부 직할로, 조선국제신용은행은 당 중공업부 직할로 설립된 것으로 국방 등 특수자금취급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합영·합작금융기관으로 이들은 합영회사, 무역회사, 기타 외국기업에 대한 투융자 및 대외송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합영은행들이 설립되고 있다. 그러한 은행들로는 조선락원금융회사, 조선합영은행, 코레스은행, 고려상업은행, ING동북아시아은행 등이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25조 :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금을 융통하는 기관 곧 놓고 있는 화폐자금을 건어들여 수요자에게 꾸어주며 자금 공급과 결제 및 현금출납 같은 것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 화폐자금

북한은 화폐에 관하여 “상품세계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주고 교환을 중개해주는 일반적인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화폐정책에서 유일성·계획성·공고성을 강조함으로써 화폐유통의 중앙집권화와 계획성에 의해 민족적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화폐는 경제 각 부문의 생산량을 화폐형태로 표현하고 있어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된다. 그러나 가격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북한에서 상품의 실제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사유재산제가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서 화폐의 가치척도의 기능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척적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국영상업망을 통해 상품이 유일가격으로 계속 공급될 경우에만 발휘된다.

북한에서 화폐는 경제의 계획적 운영과 생산물의 생산 및 분배에 대한 계산 및 통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행정적 통제에 의해 의존하고 있는 북한경제체제하에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간의 실질적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따라서 화폐는 회계단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25조 :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재산의 화폐적 표현.

○ 재정규률(재정통제)

북한에서 재정의 개념은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 분배, 이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라고 한다. 재정이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 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재정활동이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를 비롯한 정무원 및 지방행정경제위원회에 재정감독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에서 재정에 관한 통제는 그 주체에 따라 국가주권과 행정적 집행기관들에

의한 통제, 재정은행기관들에 의한 통제, 부문재정관리기관에 의한 통제, 기관·기업소의 내부통제 및 사회적 통제로 구분되며, 통제시점에 따라 사전통제, 경상 통제, 사후통제로 구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통제의 방법으로 '재정총화제도'와 '원에 의한 통제'(‘가격규률’참조)가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25조 :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재정과 관련한 규률. 사회주의 사회에서 화폐자금을 형성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제도이다.

○ 합동작업계약

북한민법상 합동작업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주택이나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그에 대한 이용권을 나누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고, 작업참가정도에 따라 작업결과의 이용권을 나누어 갖는 계약을 말한다(제230조제1항, 제231조제1항).

합동작업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한다(제231조제2항). 즉, 요식계약이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반드시 합의하여야 할 내용은 ① 작업의 대상 기간 및 질서, ②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③ 작업결과를 나누는 원칙, ④ 합동작업대표의 권한이다(제232조).

둘째, 계약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들은 합동작업대표를 선출하며, 선출된 대표는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33조).

셋째, 합동작업대표는 작업결과의 분할이용에 대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제234조).

관계법조항	민법 제230조 :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국가소유에 속하는 화폐자금.

#### IV. 不當利得에 관한 用語

##### ○ ‘부당리득’

사회주의민법의 일반례와 마찬가지로, 북한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원인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자가 그 이득을 반환하는 제도이다(제235조). 부당이득반환제도는 불법행위제도와 함께 법정채권 채무관계의 중요한 발생기초의 하나가 된다. 이 가운데 후자는 언제나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전자는 전혀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남한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다르지 않다.

북한민법상의 이 제도는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의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재산도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 그 주된 목적은 오히려 국가 및 협동단체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민법상 차지하는 중요성은 자못 큰 것이다.

다시 말해 부당이득이라 함은 적극적 이득과 소극적 이득의 양자를 포함하는 것인데, 특히 소극적 이득이라 함은 마땅히 지출해야 할 재산을 지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말한다.

이 반환관계는 부당이득의 실금반환을 그 원칙으로 삼는데, 북한민법은 “부당이득자는 그 이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그 이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 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제236조)고 하고, 또 그 반환은 현물반환이 원칙이고, 현물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액반환을 할 수 있다(제237조).

또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의 반환시까지 부담한 보관비용이나 반환에 따르는 필요비는 보상 받을 수 있으며(제238조), 반환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바치도록 되어 있다(제239조).

관계 법 조	민법 제235조 : 법적 근거없이 남의 손실 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 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10.) : 부당리득해위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남의 손실밑에 리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레하면 자기와 성명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온 물건을 자기에게 보내온 것인줄 잘못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가 이에 속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리로운 것 또는 그러한 소득.

## 第4節 民事責任과 民事時效制度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民事責任에 관한 用語

#### ○ 민사책임

북한민법은 제4편 제1장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남의 민법상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제240조)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함께 민사책임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민법의 ‘민사책임’에 대한 규정 중 제252조~제254조의 규정은 모두 채무 특히 계약불이행책임에 관한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북한민법이 규정하는 민사책임의 종류는 ① 재산의 반환, ② 원상회복, ③ 손실보상, ④ 위약금, 연체료 등의 제재금의 지급, ⑤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들 민사책임은 형편에 따라 병합하여 적용될 수 있다(제242조).

민사책임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나, 행위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제241조)고 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등에서 이 원칙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보면, 16세 미만의 행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책임을 지며,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을 동안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를 통제할 의무를 지는 자가 책임을 진다(제243조). 또한 16세에 달한 부분행위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본인이 책임을 지나, 그의 지급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책임을 진다(제244조).

관계법조	<p>민법 제240조 :</p> <p>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5. 10.) :</p> <p>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남의 민법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법상 의무를 어겼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허물이 있는 경우에 지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자(예하면 미성인 또는 정신병자)가 남의 민법상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감독자가 그에 대한 민사책임을 진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공민, 기관, 단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상 또는 인격적 관계.</p>

○ 위약금

위약금은 계약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물기로 약정한 돈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책임의 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위약금은 법에 의하여 설정된 법정위약금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되는 약정위약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북한에서 위약금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와는 관계없이 징수하게 된다고 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한 기업소는 약정된 위약금과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이렇게 위약금이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은 계약 및 계획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42조제4호 :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10.) : 민사책임의 형태에는 재산의 반환, 원상복구,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등이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계약상의 의무와 계약조건을 어기었을 때 상대방에게 무는 돈.

○ 병합

북한민법상 병합은 채권자의 자격과 채무자의 자격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병합인 경우에도 채권채무관계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경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기업소·단체 상호간에는 병합의 발생빈도가 낮으므로 채권관계 소멸원인으로서의 의의는 낮다.

북한민법상 병합제도는 남한민법상 채권관계의 소멸원인의 하나인 혼동으로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경우(제507조)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42조 : 제242조 민사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반환 2. 원상복구 3. 손해보상 4.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5.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 민사책임은 정상에 따라 병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합병.
------	--------------------------------

○ ‘특수불법행위’의 성립

북한민법상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제245조). 또한 관리하고 있는 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실체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짐승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제249조).

한편 국토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북한민법 제250조). 아울러 “기관, 기업소 및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비과실책임을 진다(제255조).

관계법조	민법 제245조 :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하는 민사책임을 진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불법행위 - 법에 어긋나는 행위. 공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인권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북한민법은 제252조 내지 제254조에서 계약불이행책임으로서의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계약체결쌍방의 책임(제253조), 계약의 변경·취소와 손해보상청구권과의 관계(제254조), 그리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채무 특히 계획적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252조).

이에 대한 효과를 보면, 불법행위자는 불법적으로 점유한 목적물을 현물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물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값을 배상하여야 한다(제246조). 또한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시켜 주어야 하며,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

류의 다른 물건이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값으로서 변상하여야 한다(제247조).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해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48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제251조).

그리고 정당방위 또는 긴급재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제256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것으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입자는 해를 입은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5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책임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행정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과 병과할 수 있다(제258조).

관계법조항	민법 제252조 :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 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을 어긴 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채무리행불가능 -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들의 허물 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유(불가항력적사유)로 말미암아 채무를 리행할 수 없게 된 상태. 우리나라 채무관계에서 리행불가능은 채무관계를 맺을 당시에는 채무가 리행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후에 이르러 그것을 리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생긴다. 리행불가능은 흔히 채무의 대상이 없어졌을 때에 생기며 그 경우에 책임문제는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결된다.

○ 위법행위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위법행위는 당의 정책을 반영한 국가의 법을 어긴 행위라고 한다. 북한에서 법이 보호하는 사회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형식상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을 통하여 음폐된 형태로써 수행된다 하더라도 그의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외관상 법을 위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위법적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법행위는 법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범죄, 행정적 및 규율적 위법행위와 민사상 위법행위로 구분된다. 여기서 민사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약금, 손해보상 등의 제재가 따르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58조 : 민사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의 법과 규정의 요구를 어기는 행위.



## II. 民事時效에 관한 用語

### ○ 시 효

북한민법은 시효제도를 총칙편에 규정하지 않고 독립적인 편을 만들어 민사책임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북한민법상 시효제도는 개인간의 권리관계의 확정 이외에 주로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의 결제관계를 적시에 신속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독립채산제와 계획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민법이 민사시효제도를 총칙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편에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시효제도의 내용을 보면,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 상호간에는 1년, 기업소 사이에서는 6월, 기업소 사이의 특수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3월, 예산제국가기관·기업소의 채권의 경우는 그 채권이 발생한 후 예산년도가 경과할 때까지를 시효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시효는 당사자이 주장이 없어도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이 강제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시효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무주물로 인정되어 법정의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에 귀속된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59조 : 민사상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판, 중재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10.) : 민사시효제도는 특히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재정규율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작용을 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권리를 얻게 되거나 잃게 되는 시간상의 효과. 시효제도 - 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는 데 따라 시효를 인정하는 법제도.

### ○ 예산년도

북한에서 예산년도(남한에서는 회계기간이라고 한다)는 1년이며,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예산편성구조는 기본적으로 예산수입부문과 예산지출부문에 의해 있으며, 예산 수입·지출항목은 각각 행정기관조직별,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되고 있다. 북한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권한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와 정무원에 부여되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62조 : 예산제 국가기관, 기업소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이 발생한 예산연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예산을 집행하여 총화하는 일정한 기간.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시작과 끝이 꼭같지 않다.

○ 시효연장

북한민법상 시효의 연장제도는 시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만큼 연장해줌으로써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제267조). 이는 본질적으로 시효의 정지제도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시효연장이 법이 정한 정지사유 외에 소송이나 중재를 적시에 제기할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들이 시효연장의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소유물반환청구의 제기에 있어서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것 또는 불법가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제기에 있어서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사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유는 반드시 불가피한 사정이어야 하며 단순히 '딱한 사정'과 같은 것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65조 :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 안에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민법 제267조 :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 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효기간안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 받는것.

○ 시효정지

시효의 정지는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가 있을 동안만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북한의

민법이론상 시효의 정지사유로는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지불유예를 선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현역병사 또는 하사관이거나 전투상태에 있는 군관인 경우, 청구대상이 상속재산인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이 경우에 시효는 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 안에만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시효를 정지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65조 :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 안에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만큼 시효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그동안 시효가 정지 된다.

### ○ 시효중단

북한에서 시효중단제도는 시효기간경과 이전에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효기간을 처음부터 새로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사유로는 채권자가 재판이나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은행을 통하여 제기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상호간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등에 시효기간이 중단된다(제266조).

관계법조항	민법 제266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면 그 때로부터 시효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10.) : 민법상 권리는 법이 정한 기간안에 재판이나 중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강제절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를 민사시효라고 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효의 진행이 끊어지는 것.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끝나면 시효기간은 그때부터 새로 계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구자가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한 경우 또는 의무자가 자기의 의무를 승인한 경우에 시효가 중단된다.

○ 휴식일

북한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직업 또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 예컨대 군인의 경우 달력상 목요일은 경리일이며 토요일은 작전개시일, 일요일은 작전요일 또는 전투요일로 하고 금요일을 휴식일로 정하고 있다.

노동자·사무원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는 수요일, 함경남도는 목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매월 1일, 11일, 21일 등을 정하여 10일에 하루씩 쉬고 있으며, 실제로는 노력동원 등의 이유로 인해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휴가는 사회주의노동법에 의하면 연간 14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과제 완수 및 노력동원 등으로 대부분 휴가를 반납하거나 관혼상제나 김장철 때 주로 휴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271조 : 민사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명절일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쉬는날.

## 第4章 北韓家族法上 用語의 概念

### 第1節 家族法の 基本에 관한 用語의 概念

#### ○ 가족법

북한 가족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1장에서 총칙규정으로 '가족법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7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보면, 가족법의 제정목적(제1조), 결혼의 의의와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제2조), 가정의 의의와 이에 대한 국가보호(제3조), 후견과 이에 대한 국가의무(제4조), 상속과 이에 대한 국가의무(제5조),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이익보호(제6조), 가족법의 규제대상(제7조) 등이다.

둘째, 제2장에서 결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결혼연령, 근친금혼범위, 결혼등록, 결혼무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3장에서 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하여 육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인격적·재산적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제4장에서 후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후견의 목적과 후견인의 자격, 후견인의 권한 및 의무, 후견에 대한 감독 등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제5장에서 종래 민법의 대상으로 삼았던 상속을 가족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법정상속의 순위와 몫, 상속거부조건, 유언상속, 상속기간 등이다.

여섯째, 제6장에서 가족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의 「법학사전」에 의하면, 가족법의 개념에 관하여 “결혼 및 혈연관계 그리고 다른 가족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이라고 하고, “가족법은 우리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며 혁명의 후계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데 복무한다”고 하여 그 사명을 밝히고 있다. 이어 “가족법은 남녀평등권원칙, 모성과 아동들을 국가적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원칙, 엄격한 일부일처제원칙, 자녀의 리익을 위주로 한 친권실현의 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부부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에 대한 규제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가족법의 규율대상에서 상속관계에 대한 부분은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의 가족법에 관한 정의는 위의 정의에 상속의 개념을 포함한 것이 된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가족법은 결혼관계, 혈연관계, 입양관계 및 상속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범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가족법은 결혼관계, 부부관계, 자녀의 양육과 교양문제, 가정재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규제한다고 하여 이른바 ‘가정재산제도’라는 독특한 규제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1조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p> <p>결혼 및 혈연관계 그리고 다른 가족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범부문. 공화국가족법은 우리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며 혁명의 후계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데 복무한다.</p> <p>민주조선(1991. 5. 23.) :</p> <p>공화국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하며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결혼 및 혈연관계, 다른 가족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부분법.</p>

### ○ 사회주의대가정

‘사회주의대가정’이라는 용어는 북한이 1990년 가족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북한의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제도 및 가족제도를 그 기초로 삼고 있으며, 가족법에서 명시한 목표를 사회주의적 대가정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사회주의 사회는 개개의 가정들이 모여져 이룩된 하나의 대가정이므로 사회의 이익은 가정 및 가정성원의 이익으로 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은 가정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북한 가족법은 근로자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일을 더 잘 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가족법의 임무는 기실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용어는 서로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를 넓혀 그만큼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견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회주의 가족법은 종래 친족부양의 범위를 부부, 부모와 미성년자녀간에 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양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친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부양의무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런 면에서 사회주의대가정에서 강조하는 이면을 보면, 국가의 부양의무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이 용어의 개념은 사회주의 이념의 후퇴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계법조	가족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3.) : 온 사회가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자면 가정부터 공고화되어야 한다.

### ○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최근 북한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의 보장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북한에서 말하는 인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보면, 북한에서 인간의 존엄이란 자유민주국가에서의 그것과 다른 의미임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대해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한다. 즉,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사상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대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 즉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라고 한다. 이에 전자를 견지하는 지도적 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후자를 견지하는 지도적 원칙은 인민대중에 의지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적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수령과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그 독창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에 대해 수령의 지

위와 역할의 절대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추가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주체사상의 재해석과 체계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이 제기한 것이다. 이 때부터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계관이라는 점과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은 모두 인간개조와 계급적 사상의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바로 '혁명적 수령관'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말하는 인간중심 내지 인간 존중이란 자유민주국가에서 의미하는 '휴머니즘'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p>관계법조</p>	<p>가족법 제4조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p>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5. 23.)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적 존재인 사람을 이르는 말. 자연의 변화 발전 법칙에 복종되어 자연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고유한 사회적 운동법칙에 따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물질세계에서 유일한 자주적 존재이다. 인간은 자연의 변화발전 법칙에 복종되어 자연과 운명을 같이하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에 고유한 사회적 운동법칙에 따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김정일). ※ 존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위엄.</p>

### ○ 친척

북한은 친척이란 자기의 혈족과 배우자의 혈족들중 육친적으로 가까운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친척은 법이 예견하는 범위안에서 일정한 법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 또는 상속권의 설정 등이다.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의 일방과 그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사이에는 동거생활의 조건하에서 서로 부양의무와 상속권의 설정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친척관계는 근친혼의 금지 또는 사회보장의 수혜 등과 관련한 법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북한가족법은 제10조에서 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사이의 근친혼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북한가족법은 혈족과 인척에 관한 정의를 두지 않음으로써 그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석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호적제도를 폐지한 북한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한국적 관습을 토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7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자기의 혈족과 배우자의 혈족들중 육친적으로 가까운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 자기의 혈족들 중에서 출생을 기준으로 하여 한계혈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직계혈족이라 하며(레하면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등) 그렇지 않으면서 공동의 선조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을 혈족관계이 가깝고 먼 것을 직계혈족에서는 대수로, 방계혈족에서는 촌수로 나타낸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기 혈족과 혼인관계를 통하여 혈연적 가까운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

## 第2節 結婚 및 家庭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結婚에 관한 用語

#### ○ 결혼

결혼성립을 위하여 결혼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근대결혼법의 일반원리이다. 북한가족법도 일찍부터 여성에게 남자와 동등한 결혼의 자유를 부여하고, 결혼당사자 본인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을 금지하여 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른 입법례에 비하여 훨씬 적극적으로 혼인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북한은 결혼에 관하여 가정형성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결혼을 떠나서 가정자체를 생각할 수 없으며, 가족법은 일단 맺은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할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2조 :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3.) :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결혼을 떠나서 가정 자체를 생각할 수 없으며 가정의 공고화를 기대할 수 없다. 공화국가족법은 일단 맺은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할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남녀가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
------	---

### ○ 자유결혼

북한 가족법은 제8조제1항에서 공민의 자유결혼의 권리를 규정하여, 결혼이 결혼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가족법은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남녀의 자원적 합의'로 표현하며, 이는 결혼당사자 본인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결혼시기와 배우자 선택을 주동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민사규정에 있어서는 "동시적 사랑과 진정한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바 있다. 자원적 결합·자원적 의사의 합치가 있기 위해서는 결혼당사자가 자기의 행위를 분별할 줄 알며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이 결여된 자, 예컨대 정신병자나 정신박약자의 혼인은 무효로 취급된다.

아울러 북한에서 당사자의 자원적 합의는 혼인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부모 등의 동의문제이다. 이는 가족법상 명시된 규정은 아니나, 가족법이 부모 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의 의견이나 충고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자녀들의 이익을 위하여 생활상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자녀의 혼인에 대한 부모의 배려는 부모와 자녀의 정상적인 관계를 공고하게 하며, 자녀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동지적 사랑을 혼인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북한이 자유결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이상은 국가정책이나 당의 간섭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더욱이 북한의 가족법이 자원적 결합과 함께 혁명적 이념에 기초한 동지적인 사랑의 결합을 강조함으로써 자유결혼의 이상이 훼손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	가족법 제8조 :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	---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3.) : 자유결혼의 권리는 결혼나이에 이른 모든 남녀가 그 어떤 사회적인, 가정적인 구속도 받음이 없이 결혼시기와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봉건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남녀가 서로 뜻이 맞았을때 자유롭게 하는 결혼.
------	--

○ 중혼(금지)

중혼금지의 법리는, 마르크스·엔겔스의 가족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가족법에 있어서는 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도 일찍부터 일부 일처제를 가족법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하여 왔다. 또 이 때에는 일부일처혼이 아닌 모든 혼인관계 주로 축척금지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북한가족법은 제8조제2항에서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혼은 법적 형식을 갖춘 혼인관계 있는 자가 다시 새로운 혼인관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이러한 중혼은 국가신분등록기관이 등록을 거부하며 등록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신분등록관계에 실질적 심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중혼의 성립은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로 된 자가 소재불명이 취소되어 재혼관계가 부활되거나,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혼의 이혼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8조 :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3.) :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이것은 미혼상태의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에만 결혼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결혼관계를 해소시키기 전에는 거듭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안해나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결혼하는 것.

○ 결혼연령

결혼연령은 결혼할 때 도달해 있어야 하는 국가적 기준연령, 즉 자기행위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로서 그 나이에 도달한 이후라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나이이다. 따라서 결혼연령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는 않는다.

결혼연령에 관하여 북한가족법은 변화를 보여왔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는 조혼의 습속을 타파한다는 취지에서 남자 만18세, 여자 만17세로 규정하고 있었다(제6조). 이 때에는 결혼연령에 달하지 못한 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까지 하면서 조혼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민사규정」에서는 “의무교육을 마치고 국가사회생활에 참가하여 사업에 익숙하며 독자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할 수 있는 나이”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연령을 적시하지 않고 있었다. 가족법전이 제정되기 직전의 한 문헌에 의하면 “의무교육을 마치고 국가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라는 민사규정을 인용하면서도, 행위능력을 취득하는 연령을 만17세로 보고 만17세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정신장애가 있는 자는 행위무능력자로 인정되며 이들은 혼인할 수 없다고 하여 성년연령은 만17세가 기준연령임을 밝히고 있었다.

북한가족법은 제9조제1항에서 결혼연령을 남자 만18세, 여자 만17세로 규정하여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의 그것과 다시 일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 제2항에서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하여 민사규정의 취지를 답습하고 있다. 중국결혼법이 결혼연령을 남자 만22세, 여자 만20세로 규정하면서도 만혼만육을 장려하고 있는 태도와 유사하다. 만혼만육을 장려하는 것은 계획출산의 실행이 결혼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로 선언되어 있는 중국결혼법(동법 제2조제3항)의 당연한 귀결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가족법이론이 이를 결혼의 자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나, 북한사회에서도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실현을 뒷받침하려는 대책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p>관계법조항</p>	<p>가족법 제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p>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5. 23.) : 결혼나이는 결혼할 때에 도달해 있어야 하는 국가적기준나이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규정한 나이에 이르면 꼭 결혼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나이가 아니며 공민들이 실지로 결혼할 당시의 나이를 가리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실지에 있어서 법적인 결혼 나이와 결혼할 당시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결혼연령에 이른 공민들이 일부일처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합의에 도달했을 때에 성립되며 양편당사자들의 참가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p>

○ 근친혼(금지)

일반적으로 각국은 일정한 근친자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친혼금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각국의 전통과 습속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윤리적 요청과 생물학적 이유를 들어 가급적 그 범위를 좁게 한정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지켜져 왔고 그 뿌리는 매우 깊다. 때문에 북한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결혼이 금지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중국적으로 립법적 해결을 기대케 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민들의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온 생활풍습과 감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니, 이 각도에서 볼 때 아마 다른 어떤 사회주의국가들의 립법에서 보다는 우리에게 그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최근의 입법에서도 오랜 전통과 민족적 풍습에 근거하여 일정한 근친자간의 혼인을 금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직계혈족과 그 밖의 가까운 친척사이에 있는 사람”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단순히 가까운 친척사이로만 표현하여 구체적인 금혼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종래의 한국관습을 토대로 구체적인 금혼범위를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가족법은 제10조에서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구체적인 금혼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석상의 문제는 남는다. 왜냐하면 북한가족법은 혈족의 정의나 인척의 계원등을 어디에서도 밝혀 주고 있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을 어떻게 한정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10조 :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3.) :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전통적 풍습과 민족적 감정, 우리 사회의 건전한 도덕적 풍모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인척: 혼인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친척. 혈족: 피줄이 같은 관계에 있는 겨레붙이

○ 결혼등록

북한가족법은 제11조제1항에서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인정되

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즉, 혼인은 해당 신분등록기관에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반영된 결혼등록신고서를 심의하고 공민등록증에 등록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혼인성립과정에서 등기나 등록을 요구하는 목적은 당해혼인관계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또 그러한 관계를 국가적으로도 확인받게 하려는 데 있다. 사회주의가족법이론은 여기에 더하여 혼인등록이 지니는 합목적성을 강조한다. 북한가족법이론도 혼인등록제도를 채택해야 할 이유로서 “결혼의 국가등록제도는 우리에게서 국가적 사회적 이익의 견지로부터서와 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이 제도는 공민들의 결혼에 대해 우리 국가의 깊은 관심을 표현하면서 사회에 대해서나 개인에 대해서 유익한 방향에서 결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희망스럽지 못하거나 해로운 결혼의 발생을 방지하는 국가의 적극적 작용을 보장하여 개별적 결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승인의 형식으로” 되는 점을 들고 있다. 혼인관계성립에 대한 단순한 국가적 승인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원칙의 틀에 맞는 혼인관계를 의지적으로 창출하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가족법상 혼인등록은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이른바 창설적 신고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점에서 출생이나 사망등록과 구별된다.

관계법조	가족법 제11조 :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결혼은 …… 랑편당사자들의 참가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민주조선(1991. 5. 23.) :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은 남녀는 부부생활을 할 수 없으며 결혼등록을 한 때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 신분등록(기관)

북한에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이란 사람들이 나서부터 늙어죽을 때까지 그들의 모든 생활을 잘 틀어쥐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먼저 출생자를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잘 키우고 공부를 시키며 다 자라난 다음에는 결혼도 하고 직업도 가지도록 돌봐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북한에서 신분

등록은 주민들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주며 끊임없이 배려하고 있는 인민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인 주민행정사업의 하나이다.

또한 신분등록은 북한에서 등록자들간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기초로 된다. 예를 들면 양자등록은 양자와 양부모간에 새로운 가족법관계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친부모와의 기존관계를 소멸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신분등록은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공민의 신분등록은 북한의 외교대표부 또는 영사기관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	가족법 제11조 :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출생, 결혼, 리혼, 립양, 파양,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공민들의 신분상 변화를 국가적으로 등록하는 제도 민주조선(1991. 5. 23.) : 다른 나라에서 사는 공민들의 결혼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기관에 할 수 있다.

○ 령사대표(기관)

북한은 영사대표기관에 관하여 “영사를 자기나라와 자기나라 공민 또는 법인의 경제문화적 및 법률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며 주재국과 친선단결을 강화발전시킬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영사대표기관은 주재국 내에서 국제법과 국제관계, 양국간에 체결된 영사조약 그리고 주재국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특권과 특전을 향유한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영사대표기관의 기능은 ① 영사영역내에 있는 북한공민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② 북한공민의 교육과 문화교양사업을 방조하며, ③ 공민과 법인의 경제법률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④ 공민에 대한 후견을 실시하며, ⑤ 공민에 대한 신분을 등록하고 각종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한다.

관계법조	가족법 제12조 : 다른 나라에서 사는 조선공민들의 결혼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할 수 있다.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외교 혹은 령사관계가 설정되어있는 나라의 일정한 지역내에 설치하는 재외대표기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상대국의 수도 또는 그밖의 일정한 곳에 가 있으면서 자기나라와 그 나라와의 협정이나 합의에 의한 경제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기나라의 공민이나 법인들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재외대표의 책임적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 = 령사대표</p>
------	---

○ 결혼의 무효인정

결혼무효는 무효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인민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한다(북한 민사소송법 제24조 내지 제26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원고로 될 수 있는 자는 무효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혼인연령위반, 중혼, 근친혼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 및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제소권자로 된다. 공익과 관련된 요건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3자나 검사도 제소권자로 되는 것이다. 또 공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합의의 결여가 무효원인인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는 다른 무효사유에서 찾을 수 있는 공익성이 후자의 경우보다 작기 때문이다.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를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와 검사에게 무효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이 경우는 선의인 배우자에게만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혼인당사자 일방이 정신병자인 경우에는 악의의 당사자로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상대방 배우자와의 정상적인 혼인생활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으므로 이때에는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후견인이나 검사도 원고로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13조 :</p> <p>이 법 제8~10조에 위반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p> <p>가족법 제14조 :</p> <p>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문제는 이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해결한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5. 23.) :</p> <p>강제결혼, 2중결혼, 결혼나이위반, 근친결혼은 무효이며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효력이나 보람이 없는 것.</p>



## II. 家庭에 관한 用語

### ○ 가정

가정이라는 용어는 종래 가족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가족법에서는 가족이라는 용어 대신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 가족법은 가정의 의의와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구법상에서는 “가정은 사회의 세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가족법에서는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를 두고 단순한 용어의 변화인지 또는 이념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북한의 1992년 헌법개정에도 반영되었다. 1992년 헌법은 제77조에서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3조 : 가정은 사회의 기층 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북한용례	<p>김일성저작집(15권):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입니다.</p> <p>민주조선(1991. 5. 23.) :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온 사회가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자면 가정부터 공고화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생활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화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사회의 한 세포</p>

### ○ ‘남편과 안해의 관계’(혼인과 부부관계의 발생)

북한가족법은 제16조에서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만 규정하여, 남한민법에서와 같이 혼인에 의해 배우자라는 친족관계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금혼범위와 관련하여 인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음을 볼 때,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 일방과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떠한 범위에 속하는 자가 인척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종래의 한국관습을 토대로 하여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의 현실적인 혼인생활은 여전히 가취제의 영향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계친자관계에 대한 초기의 북한가족법이론은 이를 법정친자관계로 보지 아니하였다. 계자의 실친이 있는데도 그를 쳐놓고 계친에게 친부모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친자관계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었다. 그리하여 계친과 계자 사이에 부양의 권리의무만 인정된다고 하는 당시 소련법의 실례를 따라, 계친은 미성년의 계자 및 요부양상태의 성년계자를 부양하여야 하며, 성년계자는 요부양상태의 계친을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 이들 사이의 부양의무는 가족생활의 실태나 일반 법의식을 고려할 때 실친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같은 성질을 띠나, 부양료는 고정액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해석론이 언제부터 전환되었는지는 모르나 최근의 가족법이론은 계친자관계를 법정친자관계로 보고 있다.

북한 가족법은 제29조에서 계친과 계자 사이를 법정친자관계로 보고, 계친자관계가 성립되면 실친자관계는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계모자관계의 성립만을 인정하여 오던 종래의 관습과도 다르고 계친과 계자 사이에 부양관계만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는 러시아연방공화국법과도 다른 태도이다. 계부 또는 계모와 그들의 부양·양육을 받는 계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는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는 중국법과 유사하다.

관 계 법 조 항	민법 제16조 :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6.) : 남편과 안해는 가정에서 기본을 이룬다.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와 자매관계, 조부모와 손자녀관계 등 모든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부부관계로부터 파생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남편: 부부가운데서 남자를 이르는 말. 안해: 부부가운데서 여자를 이르는 말.

### ○ 부부별성주의

북한가족법은 제17조에서 부부별성주의, 즉 성불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

데, 이 원칙은 과거에도 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제18조가 성명변경절차를 규정하나, 이는 혼인에 의한 성명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법의 입장은, 혼인 중 부부는 부부 일방의 성을 공통의 성으로 선택하거나 각자의 혼인전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러시아 연방공화국법과는 다르지만, 중국법의 그것과는 유사한 것이다. 참고로 중국혼인법은 제10조에서 부부쌍방은 각각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권리를 갖는다고만 규정하여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부부가 각기 자기의 성을 사용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점은 북한법과 다르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17조 :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6.) : 부부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부부는 결혼후에도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부부의 동등권리(부부의 동거·협조의무)

북한에서의 부부가 동거해야 함은 혼인제도의 본성적 요구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당연히 인정된다. 또한 동거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혼인생활의 장소가 중요한 관건으로 된다. 가취제의 오랜 전통이 유지되어 온 한국의 경우 법의 규정이 어떠한 혼인생활장소는 부의 주소나 거소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실제도 크게 다르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북한가족법은 일찍부터 부부는 각각 자기의 주소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왔다. 처가 부의 주소나 거소에서 동거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해방이라는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또 여성해방은, 여성을 단지 남성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 가족법은 제17조와 제18조에서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처럼 부부는 각자 자기의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의 사회노동과 사회생활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주의가족법은 이 때문에 혼인의 효과로서 동거의무를 법정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18조 :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6.) : 부부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부부는 결혼후에도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 부양의무

북한 가족법은 제19조에서 “남편과 안해는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상호부양의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가족법의 일반적 태도이나, 부양청구권의 성립요건이나 계혼후의 부처부양제도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공화국법이나 중국법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함은 부부관계의 본질로 보아 당연하다. 아무리 부부 각자의 경제생활이 보장된다는 사회주의사회라 하더라도 부부 상호간의 부양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부부 사이의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는 법적 의무라기 보다는 도덕적 의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주의가족법의 태도이다. 북한의 가족법은 제19조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다.

북한 가족법은 제19조에서 부양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배우자의 노동능력상실만을 규정한다. 따라서 노동능력이 있는 한 부양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러시아 연방공화국법에서와 같이 임신중이거나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의 처에게 부양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북한가족법이론은 모성과 유아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 보호원칙에 근거하여 이러한 경우 처의 부양청구권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왔다.

한편 북한에서도 이혼후의 부부부양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독자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을 때에는 재판소가 일정한 기간 그를 부양할 의무를 타방에게 부여하고, 재판소는 부양료청구권자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 및 당사자 쌍방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혼후의 부양료의 액수와 그 지불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재판소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양료의 일시지급을 명하거나 재산분할을 통하여 부양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액수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경제생활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액수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19조 : 남편과 안해는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린이, 늙은이, 불구자, 장기환자등과 같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나 직업을 가지지 않은 가정부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
------	---

○ ‘리 혼’

북한가족법은 제21조에서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단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여 채택된 바 있고 사회주의가족법이 취하는 정형에 속한다.

북한가족법이론에 의하면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부부가 그 관계를 계속할 만한 정치·도덕적 기초를 상실한 경우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은 사회와 혁명의 이익의 견지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즉, 이혼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이 혁명에 이로울 때는 그것을 승인하며 해로운 때는 그것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낡은 사상잔재와 결부된 이혼이나 크지 않은 환경 문제, 정치적 문제와 결부된 이혼을 적극 방지하여 가정의 공고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혼이 거부될 수 있는 것이다.

혼인파탄의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진 일이나, 그 가장 큰 기준은 사회주의가족의 강화와 미성자녀의 보호이다. 이 기준은 북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것이나, 북한민법상 이혼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 중 몇몇 중요한 사유로는 당사자 합의,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 부부로서 준수해야 할 도덕적 의무 경시, 사회주의공동생활준칙에 모순되는 행위, 소재 불명 등을 들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p>가족법 제20조 :</p> <p>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p> <p>가족법 제21조 :</p> <p>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p> <p>가족법 제22조 :</p> <p>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p>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리롭지 못할 때 결혼관계를 끊어버리는 법적 제도. 공화국법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리익과 함께 국가적 및 사회적 리익, 혁명의 리익이 견지에서 리혼문제를 규정하고 있다.</p> <p>민주조선(1991. 5. 26.) :</p> <p>부부관계는 재판소의 리혼판결에 의해서만 없앨수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법적으로 부부관계를 끊고 갈라지는 것.</p>
------	---

### ○ 이혼절차 및 효과

북한가족법은 제20조제2항에서 “리혼을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시한다. 따라서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북한의 재판실무에서는 쌍방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 부르고 이 경우에는 이혼이 용인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일방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기되는 이혼은 분쟁이혼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하나, 부부가 합의하여 제시하는 이혼소송은 당사자 어느 일방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만 1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 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는 사건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이혼사건은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의 효과에 관해서는, 먼저 이혼에 의해 부부간의 신분관계는 소멸하므로 타방 배우자의 혈족 사이에 인정되었던 인척관계도 소멸된다. 또한 부부의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었던 그 밖의 권리의무도 소멸된다. 아울러 배우자라는 신분관계가 소멸하므로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다.

다음 혼인 중의 부부재산관계는 이혼에 의해 종료되고,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해 취득되어 가정재산을 이루었던 재산은 분할하게 된다. 재판소는 이혼을 승인하는 경우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이외의 효과로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이혼에 의해 종료되나, 일정한 경우에는 부양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북한가족법은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나, 이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20조에서 재판소가 이혼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이혼후의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를 아울러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래 민사소송

법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즉, 재판소는 이혼을 승인하는 경우 부양청구자의 노동능력과 그들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양료의 액수나 지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 양육 이외의 사항에 관한 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은 현행가족법의 일반적 법리이다. 북한가족법도 이를 당연시하여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이혼이 친자관계에 미치는 효과중 실제적 의의를 지니는 것은 자녀의 양육문제이다.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이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재판소가 양육권자를 정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녀의 이익에 합당하다면 부 또는 모로 하여금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p>가족법 제20조 :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p> <p>가족법 제21조 :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흑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p> <p>가족법 제22조 :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이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리롭지 못할 때 결혼관계를 끊어버리는 법적 제도. 공화국법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리익과 함께 국가적 및 사회적 리익, 혁명의 리익이 견지에서 리혼문제를 규정하고 있다.</p>

○ 양육(비)

북한가족법은 제22조에서 이혼의 경우에 자녀양육자는 자녀의 양육과 교양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맡아 키운다는 자녀양육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자녀가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의 범위내에서 재판소가 정하도록 하고 있

다. 아울러 제24조에서 각 자녀양육비부담의 범위와 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가족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존시키고 있는 것은 자녀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소가 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비의 산정은 10~30%의 범위내에서 재판소가 정하도록 하여 유동적 비율에 의한 양육비의 산정을 제시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되는 자녀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수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다소 비법률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p>관계법조항</p>	<p>가족법 제22조 :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p> <p>가족법 제23조 :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그가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 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p>
<p>북한용례</p>	<p>민주조선(1991. 5. 26.) : 부부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양육자는 자녀의 양육과 교양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맡아 키우는 원칙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자녀가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p>

○ 재혼(계부, 계모): 계친자관계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혼인관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즉 재혼에 의해 계부모와 계자녀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성질상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관해 북한가족법은, 계친자관계는 친부모자녀의 관계와 같고 친계자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의 실부모와의 관계는 소멸한다고 하여 이를 법정친자관계로 보고 있다. 계친자관계는 실친의 재혼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계이므로 혼인의 해소에 의해 소멸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자의 생부나 생모가 사망하여 계친과의 혼인관계가 소멸된다고 해서 계친자관계가 일률적으로 소멸되고, 소멸되었던 실친과의 친자관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관계법조항	<p>민법 제24조 :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 줄 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p> <p>가족법 제29조 :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5. 26.) :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사이의 관계와 똑같다.</p>

○ 혈 연

북한가족법은 제25조에서 친부모자녀의 관계가 혈연에 의한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친부모자녀관계의 확정에서 있어 혈연적 요소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입법적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친부모자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성립한다고 할 것이가에 대해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 모친과 부친의 확정에서 있어서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겠지만, 부자관계의 식별은 모자관계처럼 출산과정을 직접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게 된다(이에 관해서는 '친부모자녀관계' 참조).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25조 :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혈통상의 연줄, 멜레야 멜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비겨이르는 말.</p>

○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사생아)

북한가족법은 제25조에서 결혼생활 이외의 과정에서 출생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혼생활 이외의 과정에서 출생한 자녀를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종래의 태도와 다르다. 북한은 적서차별의 전통적 관습이 모친계통이 확정된 자녀를 부친계통이 확정된 자녀에 비하여 천시하는 봉건적 관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면에서 남녀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배격해왔다. 이 규정은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25조 :</p> <p>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5. 26.) :</p> <p>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남녀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와 같으며 그 자녀는 사회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규제는 사람의 인격을 가장 존중하며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생기발달하게 키워야 할 우리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p>

### ○ 주민행정(기관)

북한에서 주민행정기관은 북한의 행정기관체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입양과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종래 입양은 양친으로 될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북한의 1948년 헌법상 지방인민위원회가 주민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후 1992년 헌법은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방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제141조),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도(직할시), 시(구역)·군행정경제위원회를 규정하였다(제147조). 이에 따라 해당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주민행정기관이 된다. 혼인등록의 경우와는 달리 입양의 경우 등록에 앞서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관계당사자의 희망과 동의가 양자의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의 심의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주민행정기관의 심사결과 양친으로서의 자질이 도덕적으로 부족하거나 건강상의 장애로 인해 양친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입양은 입양신청자에 대한 해당 지방 주민행정기관의 승인 이후 이에 근거하여 신분등록기관에서의 등록에 의해 성립하게 된다.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26조 :</p> <p>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p> <p>가족법 제32조 :</p> <p>립양은 양부모로 될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p>
-------	---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사회주의 사회에서 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국가의 관리활동,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이 해야 할 첫째가는 임무로서 출생자를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잘 키우고 공부 시키며 다 자란 다음에는 결혼도 하고 직업도 가지게 하며 병을 치료하고 잘살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배려를 돌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p> <p>김일성저작선집(16권)(40면) :</p> <p>주민들에 대한 행정이란 사람들이 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들의 모든 생활을 잘 틀어쥐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민주조선(1991. 5. 26.) :</p> <p>후견의무수행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기관이 한다.</p>
------	--

○ 자녀의 성(姓)

북한가족법은 자녀의 성에 관하여 전통에 따라 부성추종주의를 따르고 있다. 다만, 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모성을 따르나, 그 후 부가 확정되면 부성으로 변경된다. 부모의 성을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해 준다. 여기서 북한가족법이 출생시에 정해진 성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성불변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은 남한법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 절차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법상 그 경우를 보면, 「공민이 신분변경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제18조에 의한 변경, 이성양자가 성립된 경우, 계친자관계가 성립하고 계친과 계자녀의 실친 간에 합의 또는 계자녀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자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혼이나 혼인무효의 경우에도 성은 변경되지 아니하나, 부가 반역자이어서 자녀의 품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모는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부성이 변경되면 자녀의 성도 부성에 따라 변경된다. 한편 자녀의 이름도 출생등록을 할 경우에 부모가 부여한 이름을 등록하고 이는 변경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26조 :</p> <p>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아버지를 따라 이름우에 붙이는 혈족에 의한 칭호.</p>

○ 자녀교양

친권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가족법은 제27조에서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라고 규정하여 부모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은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특정한 이념이나 신념·종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자녀를 교양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자라나는 새 세대를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자로 만든다는 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부모는 공산주의 건설자의 도덕률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를 교양하며 그들의 육체적 발달, 교육 및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어린이를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자로서 교양하여야 할 과업은 국가적 견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녀교양의 의무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그래서 어린이 보육·교양기관을 설치하여 그 운영과 관리를 직접 담당한다던가 폭 넓은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등의 일은 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북한이 「어린보육교양법」이라는 법령을 통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교양을 국가가 직접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가 담당하는 자녀에 대한 교양적 역할이 도외시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북한 가족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양의무를 강화하는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부모의 자녀교양역할이 부모의 자유로운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지 않다. 북한에서 부모의 신조, 신념, 가치 등이 어떠하든지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잘 교양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또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교양 의무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법적 의무로 되고, 단순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갖게 되는 의무라고 할 수 없다.

관 계 법 조	<p>가족법 제27조 :</p> <p>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워야 한다.</p> <p>가족법 제28조 :</p> <p>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p>
------------------	--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5. 26.) :</p> <p>미성인자녀를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도덕적 의무일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공민의 법적의무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부모들이 아들딸들을 교양하는 일 또는 그 교양. 자녀교양에서 기본은 새 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다.</p>
------	---

### ○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부양의무

북한가족법은 제28조에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자녀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북한법만의 특징은 아니며 사회주의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이에 의하면, 신체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자기 생활을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물론 사랑과 존경, 배려와 같은 정신적·비물질적 의무는 연령이나 노동능력의 상실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부담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 때 노령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보조금액이 타인으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부양의무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모든 성년자녀에게 동등한 부양의무가 부여된다.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28조 :</p> <p>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p> <p>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5. 26.) :</p> <p>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뿐아니라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p>

### ○ 친부모자녀(관계)

모자관계는 임신과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관계이다.

북한에서 모자관계는 출생사실 산원(산부인과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인민반장의 확인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한다. 이 증명에 의거하여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데, 출생등록시 모(母)로 기재되는 것에 의하여 모자관계는 확정된다. 이 때 그 등록은 혼인등록이나 이혼등록과는 성질이 다른 보고적인 것이다. 따라서 모자관계발생의 근거는 모자로서의 혈연적 관계의 존재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가족법은 제25조제1항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출생등록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일단 출생증에 모로서 기재된 자는 재판을 통하여 모자관계부존재의 반증에 의해 모로서의 지위가 부인되기까지 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기초도 혈연적 관계의 존재에 있다. 모자관계의 혈연적 연계는 분만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쉽게 입증될 수 있으나 부자사이에는 그 사실의 확정이 문제가 있을 경우 쉽지 않다. 그래서 각국은 혼인도의를 기초로 부부가 혼인중일 때에는 자녀의 출생이나 포태가 혼인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부자관계의 발생을 확정하고 있는데, 이를 친생추정제도라고 한다. 북한에서도 자가 혼인중 출생하고 신분등록기관에 부자관계로 등록되면 부와 자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외의 자의 법적 지위문제에 관하여 북한은 모성과 자녀의 이익보호를 가족법의 이념중의 하나로 강조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1948년 헌법은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제23조)고 하여 혼인외의 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하기도 하였다. 이는 친자관계를 혼인의 효과와 결부하지 않고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의 자와 동등하게 보는 현대법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법은 혼인외의 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인지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29조 :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6.) : 부모와 자녀관계는 가정성원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피줄에 의해 발생한다.

## ○ '립양'(양친자관계)

북한은 가족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립양의 설정에 관하여」라는 단행법령을 통하여 양자제도를 규율하여왔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가족법은 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은 제30조에서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양제도가 어린이들의 양육과 보육을 위하여 보다 좋은 가정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취지에 바탕한 것이다. 따라서 성년에 이른 자는 양자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양자는 미성년자로서 성별, 혈연 등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그 수에도 제한이 없다고 볼 것이다.

한편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기혼 또는 미혼을 불문한다. 다만, 북한법은 성년에 달한 자만이 양친으로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양자제도가 양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설정된다는 취지에서 보면 당연히 이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 이외에 양친으로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더 갖추어야 한다. 입양의 목적이 부모를 대신하여 양자의 적당한 교양을 보장하며 그의 건강과 생활조건을 배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기 「립양의 설정에 관하여」에서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재판에 의하여 친권을 박탈당한 자, 법률행위 무능력자, 파산자, 양자로 될 자보다 연소한 자는 그 자격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북한 가족법은 제30조제2항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 밖의 양자녀를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 등은 입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에 의해 양부모는 양자녀를 양육·보양할 의무를 부담하며 미성인양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양자녀도 양친의 친자녀와 같은 순위로 양친의 재산상속에 참여하며 양친 또한 양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년이 된 양자녀에게 부양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성양자가 성립된 경우 양자의 성은 양부의 성을 따르게 되며, 여자가 단독으로 입양할 경우에는 역시 양모의 성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부가 사망한 뒤 잔존 배우자가 고아를 입양하고 양모가 원할 경우에는 사망한 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며, 양자의 이름도 항렬과 돌림에 맞추어 바꿀 수 있다고 북한은 실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입양의 효과는 양친과 양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양친의 혈족과의 관계에도 친족관계를 발생하게 한다. 반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면 양자와 그 친부모 및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존재하였던 법률적 연계, 즉 양자와 종전의 가족성원간의 권리의무관계는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30조 :</p> <p>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 밖에 양자녀를 보육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입양할 수 없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친부모와 친자녀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친부모와 친자녀사이에서와 같은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법적제도.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주로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게된 미성년아동들에게 훌륭한 가족적환경을 지어주며 그들의 양육과 교양을 위하여 좋은 조건을 지어줄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양아들과 양딸 자기가 낳지 않고 데려다 기르는 아들과 딸. 입양 - 친부모와 친자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에서와 같은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우리나라에서는 친부모를 잃었거나 친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교양하며 그들에게 건전한 가정적 환경과 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다.</p>

### ○ 파 양

파양은 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북한가족법은 제34조에서 협의파양과 재판상 파양 두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북한의 「입양의 설정에 관하여」의 규정에서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먼저 협의파양의 경우, 양자녀가 입양 후 성년에 달한 때에는 양자녀와 양부모, 계속 미성년인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의 합의가 있고 그에 대한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다음 파양에 관해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재판에 의해 해결하게 된다.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양친, 성년에 달한 양자, 미성년인 양자의 실친이나 후견인 등 관계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임의의 자나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에까지 확대되어 양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들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북한법은 재판소가 파양청구를 승인하여야 할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파양은 해당 주민등록기관의 승인이나 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후 등록되고 그와 동시에 출생증이 다시 교환교부된다. 아울러 입양에 의해 발생하였던 모든 권리의 무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입야아에 의해 소멸되었던 입양 이전의 부모와 그밖의 친척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양친의 성을 따랐던 경우에는 다시 실부나 실모의 성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관계법조	<p>가족법 제34조 :</p> <p>파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 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양부모와 양자녀 관계를 없애는 것. 립양에 의하여 설정된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합의절차나 재판절차에 의하여 없앨 수 있다.</p>

○ 가정성원과 부양의무

북한 가족법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족관계의 발생과 소멸은 법률관계의 원인, 즉 출생, 혼인, 인지, 입양, 사망, 이혼, 파양 등의 개별적 법률관계에 의해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친족으로서의 효과에 대해서도 친족관계의 효과의 발생을 해당 법률관계마다 사안별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가족법은 부양과 관련하여 일정한 가족성원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법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주의법은 초기에 사적 부양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부와 친자 사이의 일차적 부양만을 인정하고 그 밖의 가족성원간의 부양은 공적 부양문제로 다루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공적 부양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해 점차 사적 부양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가정의 강화라는 요청에 따라 사적 부양의 범위를 넓히는 사회주의법의 일반적 경향을 따르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북한가족법은 다음의 부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조부모와 손자녀의 부양의무이다. 북한가족법은 조부모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나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제35조제1항)고 하여 조부모와 손자녀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부모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의 손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성년에 달하였거나 노동능력이 없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모나 배우자가 없고, 있더라도 그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손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물론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조부모가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성년에 달한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동조제2항).

둘째,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이다. 북한가족법은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제36조)고 하여 형제자매 사이에 인정되는 도덕

적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의무는 부양능력의 유무나 그 요건의 충족여하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돌볼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돌볼자가 없다는 것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성원간의 부양의무이다. 북한가족법은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가족성원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부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가족성원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는 증조부모와 증손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사위와 장인·장모, 삼촌숙과 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같은 가족성원중 부양능력이 있는자가 없는 경우에는 따로 사는 그들의 부모나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하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넷째, 따로 사는 근친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의 부양의무규정을 두고 있다(제38조). 여기서 미성년자와 노동무능력자 및 무자력자에 대한 국가의 부양책임은 사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이러한 부양의무조항에서 북한가족법은 물질적 원조 뿐만 아니라 사랑, 존경, 돌봄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법적 의무라기 보다 도덕적 의무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p>관 계 법 조</p>	<p>가족법 제35조 :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p> <p>가족법 제36조 :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 돌볼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p> <p>가족법 제37조 :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가정성원들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함께 사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p> <p>가족법 제38조 : 이 법 제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 준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혼자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성인)을 부양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그런 의무를 지지 않은 다른사람에게 그 의무를 넘길 때 그에게 내어주는 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대한 부양문제가 정치도덕적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므로 부양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p>

## ○ 개별재산(부부재산계약 및 법정재산제)

북한가족법은 제39조에서 가정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행해질 수 있다고 밝혀주고 있어 북한재산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부부는 각자 민사법률관계의 권리주체이고,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이용,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민사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요건을 갖춘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성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가족법이론도 일찍부터 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해왔다. 부부는 가정생활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서로 법률적 독립성을 갖는 만큼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재산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보았다. 이를 부정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지금에 있어서도 그 이론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개방정책과 관련하여 개인재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부부재산계약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 사회와는 달리 부부재산계약을 통하여 부부의 재산관계가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북한 가족법은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부양관계만을 직접 규정할 뿐 그 소유·관리관계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정재산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여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도 다른 가족성원들 사이의 재산관계와 함께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종래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와 관련하여 합동재산·합동소유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처리하던 태도와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 제7조는 제4조의 기본정신을 구체화하여 “혼인전의 부 또는 부의 재산은 각기 소유에 속한다. 결혼생활중에 부부가 소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법정재산제의 원칙적 내용을 선언한 바 있다. 또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한편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이 가정재산이다. 즉, 가정생활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은 그것이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로 이루어진 것이든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가정재산에 포함되며 가정성원 전체의 소유로 된다. 따라서 가정재산에 있어서는 개별적 가정성원들이 그 형성에 공헌한 바에 따른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것은 가정의 유지와 가정성원들의 복리에 이용될 뿐이

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부부가 상속·증여 이외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은 가정재산을 구성하며, 각자의 지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정재산은 “리혼 또는 그밖의 사유로 갈라져 나가는 경우 개별적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즉, 가정재산은 자녀가 혼인하거나 또는 양자로 될 경우나 부부가 계혼할 경우에는 분할된다. 가정재산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가정재산의 토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계혼에 의하여 가정재산을 분할할 경우 그들의 몫은 균등하며, 개별재산과 개인용품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관계법조	가족법 제39조 : 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 나가는 경우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북한용례	민주조선(1991. 5. 26.) : 가정생활과정에는 리혼이나 그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 나가는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이 경우에 가정의 재산을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으로 나누고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는 원칙에서 처리하게 된다.

### 第3節 後見에 관한 用語의 概念

#### ○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일반적으로 무능력자를 보호·감독하며, 또한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후견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나, 가족법상 독립된 장을 두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법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사회주의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를 절대적 행위무능력자와 제한적 행위무능력자로 구분하고 그 보호기관으로서 전자에는 후견인을, 후자에는 보좌인을 두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하였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가족법은 이를 후견제도로 통합하고 보좌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후견은 미성년자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은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는 경우 또는 부모가 있더라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가족법은 부모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의하면, 부모도 친권자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후견인의 자격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친권자인 부모의 성질상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신체상의 결함이 있다고 하여 그 모두를 행위무능력자로 볼 수 없으며, 신체상의 결함을 이유로 재판소에서 무능력선고를 받아야 한다.

북한법상 후견감독기관은 '주민행정기관'이다(가족법 제42조 및 제45조, "후견인 또는 보좌인선정 및 감독에 관하여" 제2항 6호). 주민행정기관은 후견인의 후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감독하여 후견인이 임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적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주민행정기관' 참조). 후견제도는 친권의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후견사무에 대한 규정은 대체로 친권의 내용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다. 따라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그의 대리인으로 되고, 피후견인을 보육·교양하여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친권은 친자 사이의 자연적 애정을 기초로 하지만, 후견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법이 관여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후견은 피후견인이 성년도달, 능력의 회복, 피후견인의 사망 등에 의하여 종료하며, 후견인의 사망, 결격사유의 발생, 사퇴 또는 해임에 의해서도 종료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북한의 가족법은 후견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그 비중은 크지만, 그 세부적인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p>관계법조항</p>	<p>가족법 제4조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p> <p>가족법 제40조 : 미성인과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p> <p>가족법 제41조 :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병 등 기타의 신체상 결함으로 말미암아 민법상 행위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후견은 열네살 미만의 어린이와 재판소로부터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선고된 성년자(레하면 정신병자, 정신박약자)의 인격, 그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다.</p> <p>민주조선(1991. 5. 26.) : 후견은 미성인과 정신병 등 기타의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성인을 위하여 설정한다. 미성인의 경우에도 16살에 이르면 자기가 받은 노동보수의 범위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16살에 이르지 못하면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p>

## 第4節 相續에 관한 用語의 概念

### ○ 상 속

북한가족법에 상속관계를 포함시킨 것은 사회주의가족법으로서 북한가족법의 두드러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가족법이 가정을 재산적으로 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재산관계가 생활의 필수적 분야이므로 가정이 재산적으로도 공고화되어야 하며, 재산적 공고화가 실현되어야 가정의 공고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른바 사회주의가족법의 강화론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상속법은 개인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연장으로서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속은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재산적으로 공고히 하고 가정성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듯 상속의 부양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법상 상속제도의 일반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의 상속제도상 상속인을 법정하거나 상속의 효과와 관련하여 혈연상속의 원리만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바로 이러한 성격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에서 법정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유언상속은 그에 종속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상속제도가 성문법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민사규정」에서부터이다. 「민사규정」 이전에는 민법초안이나 해석론을 통하여 규율되었는데, 이는 상속대상으로서 개인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대상이 극히 한정적이었던 북한실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5조 :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p> <p>가족법 제46조 :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공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민법상 제도.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민주조선(1991. 5. 26.) : 상속은 공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가족법정제도이다.</p>

○ 상속의 개시

상속은 공민의 사망에 의하여 개시된다. 자연사망인 경우는 물론 공증기관의 사망인정에 의해서도 상속은 개시된다. 그러나 북한법은 상속개시시기와 관련하여 사망인정의 경우는 명백하지 않다. 북한민법은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를 사망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일반실종의 경우 사망선고일에, 특별실종의 경우 위난발생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 구소련의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속개시장소에 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최후의 주소지가 상속개시장소이고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주지를 상속개시장소로 볼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가족법 제46조 :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공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민법상 제도.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람이 죽은후 그의 재산을 넘겨 받는 행위

○ 상속인(법정상속)

현대법은 법정상속인으로 혈연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의 두 종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법은 상속의 부양적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상속인의 종류에 관해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를 말한다. 상속인의 범위는 근대상속법이 혈연상속인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것에 비해 그 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가족법은 부양의무자를 형제자매까지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근친자도 부양의무자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가족법은 혈연상속인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로 한정하지 않고 "가까운 친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6조제3항). 여기서 가까운 친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는 결국 부양의무를 부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속인의

순위에 관해서는 북한가족법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부모이고,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조부모·형제자매이며, 제3순위는 가까운 친척이 된다.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46조 :</p> <p>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p> <p>가족법 제47조 :</p> <p>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 상속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거부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p>
북한용례	<p>민주조선(1991. 5. 26.) :</p> <p>법정상속은 상속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전형적인 형태로서 미리 법에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재산의 분배순위가 결정되는 상속이다. 법정상속의 첫째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이며 둘째 순위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이며 셋째 순위는 가까운 친척들이다.</p>

○ 상속결격사유

상속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사회상규를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는 등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그의 상속권을 상속권은 부정된다. 이는 상속법이 사회주의가족을 화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가족법은 법정상속인일지라도 피상속인을 생전에 몹시 학대한 자, 피상속인을 부양·간호할 의무를 지고도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은 자, 상속조건을 고의로 만든 자 등에 대해서는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p>가족법 제48조 :</p> <p>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은 자, 상속조건을 고의로 만든 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p> <p>상속이 시작된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 혹은 그들이 모든 법령 또는 유언에 의하여 상속권을 빼앗긴 경우에 그 상속재산은 상속인결여재산으로 간주되며 국가로 넘어간다.</p> <p>민주조선(1991. 5. 26.) :</p> <p>법이 정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은 경우,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 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p>



○ 대습상속

북한가족법은 상속순위에 관계없이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고 규정하여(제49조)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남한민법에서 제1순위와 제3순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대습상속의 요건을 보면,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야 하며, 피대습자는 자녀인 상속인에 한정하지 않으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자녀이어야 한다.

관 계 법 조 항	가족법 제49조 : 상속받기로 된 자가 상속시키는 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 순위를 차지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상속 - 사람이 죽은후 그의 재산을 넘겨받는 행위.

○ 유언상속

북한가족법은 제50조에서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해결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상속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언상속에 관하여 상속의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형태인 법적 상속에 관한 준칙을 특수한 실정과 요구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여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유언상속은 법정상속의 예외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언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정성원이 아닌 사람을 상속인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허용되는 재산은 개별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언자가 가정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도 그 가정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못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종래 피상속인이 의사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왔는데, 북한가족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유류분제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가족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에서의 종래의 해석에 의하면 유언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서면에는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3인 이상의 입회인의 증명이 필요하며, 유언장에는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렇듯 북한의 유언방식은, 남한에서의 유언방식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의 5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해 제한되어 있으며 그 절차도 복잡함을 알 수 있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50조 :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해결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망자의 유언에서 지적된 사람이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민법상 제도. 법적 상속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언상속제도를 두는 목적은 상속의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형태인 법적 상속에 관한 준칙을 특수한 실정과 요구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여하려는데 있다. 민주조선(1991. 5. 26.) : 법정상속과 함께 유언상속이 있다.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상속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공민이 사망한 시점에 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북한가족법은 이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북한법이론을 보면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하여왔다.

이 점에서 북한가족법이 제51조에서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여 채무상속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상속채무는 적극적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51조 :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피상속인의 빚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진다.

○ 상속기간

북한가족법은 제52조에서 “상속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6개월 안에 상속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받을 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라고 하여 상속기관과 상속인부존재시의 상속재산처리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등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상속이 개시된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 경우에도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기간을 정한 배경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확정시킴으로써 관련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데에 있다. 이는 남한민법에도 있으며, 예컨대 상속부동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그 공고기간 등의 사정으로 국고귀속시까지 최고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상속이 애초부터 문제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52조 : 상속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6개월 안에 상속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받을 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상속이 시작된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 혹은 그들이 모든 법령 또는 유언에 의하여 상속권을 빼앗긴 경우에 그 상속재산은 상속인결여재산으로 간주되며 국가로 넘어간다. 민주조선(1991. 5. 26.) : 상속은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 벌칙

북한가족법은 가족법을 위반한 공민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 가족제도와 단절과 사회주의적 가족제도의 이식을 위하여 각종법규에 법적 제재규정을 두어왔다. 예를 들면 「남녀평등권법령」은 제7조제3항에서 일부다처제, 처첩제도 및 공창·사창·기생제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법 시행세칙 제24조~제27조에서는 그 구체적인 행위별로 그 형량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가족법은 제54조에서 가족범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제재의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가족법의 하위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법적 제재가 형사처벌인지 행정적 제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백하지 않다. 다만, 이 법적 제재가 재판소의 판결과 판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상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관계법조항	가족법 제54조 : 이 법을 어긴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법적 제재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으로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법적 제재 - 민사법상 제재에는 손해보상, 위약금 등의 형태가 있다. 민주조선(1991. 5. 26.) : 가족법 제6장에서는 가족법을 어긴 공민에게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제재를 가할 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 第5章 北韓 民事訴訟法上 用語의 概念

### 第1節 民事訴訟法の一般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民事訴訟法の基本에 관한 用語

##### ○ 민사소송법

북한에서 민사소송법은 “민사사건을 취급처리함에 있어서 재판소, 검찰소, 해당 집행기관 및 기타 소송관계자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들의 활동 형식과 절차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은 1976년 1월 10일 비로소 민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동년 3월 1일)하였다. 그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일본 민사소송법을 참고하면서 각 개별규정과 이른바 ‘민주주의적 의식과 조선인민의 리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해 민사재판을 수행하여 왔었다. 1976년 민사소송법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완성과 법질서의 강화 및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 등을 그 사명으로 삼았으며,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계급적 ‘원썩’들과 온갖 법위반자들, 불건전한 요소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할 것을 그 과업으로 삼았다. 이에 그 사명과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민사소송에서의 대원칙으로서 김일성의 교시를 최고법규로 승인하고 재판소의 철저한 직권주의적 소송진행, 검사의 민사재판감시 강화, 인민대중의 광범위한 재판간여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민사소송제도는 사회주의권의 변혁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1994년 5월 25일 새로운 민사소송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1994년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이념적 색채를 완화하고, 민사소송의 실질적 분쟁 해결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새로운 민사소송법은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에도 소송주체를 인정하고 공민의 소송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에 대응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민사소송제도는 우리의 그것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계법조항	<p>민사소송법 제1조 :</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들의 민사사건들을 심리,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판소, 집행기관, 검찰소 기타 소송관계자들의 활동 및 이 활동과 결부된 재판계를 규제하는 법부문.</p> <p>김일성저작선집(제2권) :</p> <p>법이란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것만이 아닙니다. 인민경제계획도 법이며 국가 재정예산도 법입니다. 이것은 모두다 국가의 정책과 시책들을 법령으로 표현한것입니다. 소송법도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입니다.</p>

○ 민사소송활동

북한에서 재판소는 중요한 소송담당자로서 사건해결의 주인이라고 강조된다. 그래서 북한은 재판소로 하여금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하는 재판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재판소에게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지도적이고 결정적인 지위에서 광범위한 소송의 권리·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과 증거수집이 당사자의 책임에 맡겨져 있지 않고 재판소가 당사자의 증거에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결심에 의해 사건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주동적 내지 책임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그밖의 소송자의 접수, 재판의 준비와 심리, 제2심 절차 및 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도적인 소송당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가 배척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4년 민사소송법에서는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제2조)고 하고,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또한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제5조)는 조항과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제38조)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권주의를 약화시키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하는 요소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변론의 분쟁해결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관계법조	<p>민사소송법 제2조 :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p> <p>민사소송법 제4조 :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p> <p>민사소송법 제5조 :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민사소송 - 민사사건을 취급, 처리하기 위한 재판소, 집행기관, 검찰소 및 기타 소송관계자들의 활동. 민사소송에서 재판소, 소송당사자, 집행기관 및 검찰소들이 참가한다. 여기서 재판소의 활동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사법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인 하나이다.</p>

## II. 民事訴訟의 一般規定에 관한 用語

### ○ 판결

북한 민사소송법상 판결은 제1심 재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실체법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를 심리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규범을 해석·적용하여 내린 제1심 재판소만의 결론이다. 북한은 판결이 판정과는 달리 제1심 재판소에서만 채택할 수 있고 소송법상 문제에 관한 해결이 아닌 실체법상 권리와 의무를 종국적으로 심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판결은 재판소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되며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판결은 법령의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합법성과 근거성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하며,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배척되는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 판결은 무조건적이어야 하므로 의제자백판결, 일부판결, 중간판결, 조건부판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과 같으므로 완결적이며 조건부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이다.

판결은 재판구성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채택된다. 소수견해를 가진 재판부구성원은 자기의 의견서를 따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개되지 않는다. 북한 민사소송법상 판결은 재판심리가 끝나는 날에 바로 내리도록 되어있다(제132조). 또한 모든 민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제18조).

민사판결은 일반적으로 상소·항의가 없이 10일의 상소기간을 지났을 때 확정

되며, 확정판결은 남한의 민사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력, 기판력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7조 :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판정으로 해결한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채택한다. 판결의 채택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 참심원만이 참가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제1심재판소가 공판에서 사실심리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내리는 중국적인 결론. 판결을 통하여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들간의 법적권리와 리익에 관한 분쟁이 중국적으로 해결된다.

### ○ 판 정

북한에서 판정은 재판소가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관하여 내리는 해결이라고 한다. 판결은 제1심 재판소만의 재판 형식이지만 판정은 제1심, 제2심급 뿐만 아니라 재판 감독절차에서도 채택할 수 있는 재판형식이다. 남한 민사소송법상 결정 내지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판정은 준비적 판정, 저지적 판정, 종결적 판정, 특별판정으로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준비적 판정에는 사건의 이송, 재산담보처분, 증거보전, 판사의 배제, 당사자교체, 참가자의 인입, 판결집행의 연기, 집행원의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해당된다. 다음 저지적 판정에는 소장 접수거부판정, 심리연기판정 등이 있으며, 종결적 판정에는 화해판정, 원고의 청구포기를 승인하여 내리는 사건기각판정, 확정판결·판정을 고치는 판정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특별판정은 재판소가 재판심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제재의 내용은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행정적 벌금부과판정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판정은 사건의 제기에서 재판심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채택될 수 있다. 또한 그 주체에 따라 단독판정과 합의재판정이 있다. 전자는 주로 사건의 제기, 재판준비단계 또는 법에서 판사가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판정이고, 후자는 재판심리과정에서 재판소성원 전원이 내리는 판정을 말한다.

판정의 효력은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며 상급재판소



에 의견을 제기할 수 없으나 비상상소절차에 의해 확정판정을 고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소송관계자의 신청을 해결하는 경우의 확정판정은 재판소가 사정에 따라 그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38조).

<p>관 계 법 조 항</p>	<p>민사소송법 제7조 :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판정으로 해결한다. 민법 제136조 :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정으로 해결한다. 1. 사건을 이송하거나 소송당사자를 바꾸는 경우 2. 판사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처리를 끝맺는 경우 3. 재판심리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4. 소송관계자의 신청을 해결하는 경우 5. 재판심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판결을 제외한 제1심판소나 제2심판소의 모든 결정. 판정에는 사건의 기본문제를 심리해결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제1심판소의 해결(레컨대 배제신청용인판정) 상소, 항의사건에 제2심판소의 해결(레컨대 상소용인 또는 거부판정 및 비상상소, 재심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 각부의 해결) 등이 속한다.</p>

### ○ 검 사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검사에게도 민사소송담당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검사에게 소송절차의 광범위한 관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주의법제의 특징의 하나로서 북한도 이에 따르고 있다. 1994년의 민사소송법은 종래에 비해 검사의 민사소송상 역할을 축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소제기권, 재판심리에 참가할 권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문권, 심리종결과 관련된 의견진술권, 재판심리조서의 열람 및 내용에 대한 의견진술권, 판결·판정에 대한 항의권, 재심의 소제기권, 비상상소권, 판결·판정의 집행신청권 등의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민사소송에서 검사는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소송에 참가하게 된다. 검사는 법령의 정확한 준수와 그 집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 참가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소송제기권을 갖는 것은 소송의 개시에 있어서 처분의 자유를 당사자에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 부여된 소송제기권을 통제함으로써 사권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p>관계법조</p>	<p>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p> <p>민사소송법 제63조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사상 권리,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와 사회,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민사소송법 제94조 : 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및 공민들의 법령집행에 대한 감시를 기본업무로 하는 감찰기관일군. 검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하며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들의 반혁명적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기타 위법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국가사회재산과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위하는 정치일군이다. 사회주의나라에서 검사는 계급적원수들의 반혁명적 책동과 온갖범죄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며 국가, 사회재산과 인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전초선에 선 당의 정치적 보위자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검사는 착취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부르주아독재의 가장 악랄한 집행자의 하나이다.</p>

### ○ 재판심리

북한에서 재판심리는 재판소가 당사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참가시켜 증거를 조사·평가한데 기초하여 사건의 사리를 확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규범을 해석적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실제법상 권리의무문제를 해결하는 소송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북한은 재판심리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중심적이며 결정적인 단계이므로 당사자들은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마당인 재판심리절차에서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소송상 권리들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재판소는 지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전면적으로 발휘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북한은 재판심리절차에 있어서 소송담당자들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의 공개를 실현하고 사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양적 작용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현지공개재판 등 사상교양과 법적 투쟁을 옹계 결합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준비단계에서 판사는 제기된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길 준비가 되었을 경우 해당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고 검사, 당사자에게는 기일통지서를 보내며 증인과 감정인에게는 소환장을 보낸다. 재판에 넘기는

판정에는 재판기일과 증인, 감정인들과 재판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88조).

<p>관계법조항</p>	<p>민사소송법 제10조 : 국가 또는 국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p> <p>민사소송법 제92조 :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판결·판정의 집행 및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 또는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판사 혼자서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심리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p> <p>민사소송법 제93조 : 한 사건의 재판심리는 같은 재판소 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당의 사법정책과 공화국법에 립각하여 민사,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재판소의 권력적 활동.</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민사, 형사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재판소의 활동.</p>

### ○ 사실심리

북한의 민사소송에서 사실심리는 재판심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재판소가 직접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바로 이 과정에서 조사·심리되어 평가된다고 한다.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고지한 다음 원고에게 주장하는 사실은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한다.

사실심리는 대체로 당사자·증인·감정인에 대한 심리, 증거문서의 심리, 증거물에 대한 심리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의 차례로 실시하며 그것이 끝나면 소송당사자에게서로 질문하도록 되어 있다(제160조). 민사소송법상의 증인신문방식에 있어서 북한에서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그것과 다른 점이 있다. 남한에서 증인은 당사자와 재판부의 심문에 대하여 수동적인 답변만을 하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재판자의 소송진행에 따라 그가 해당사건에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진술한 후 그 다음 다른 소송당사자, 소송관계자의 질문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소송절차에 일반대중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그들의 의사를 재판에 반영하려는 의도에서 마련한 것이다.

<p>관계법조항</p>	<p>민사소송법 제16조 : 소송당사자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에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를 시작한 다음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었을 경우</p> <p>민사소송법 제103조 :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주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공판에서 판결의 토대로 될 증거들을 공개적으로 직접 조사검토하면서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확인하는 재판소의 소송활동. 우리나라 형사, 민사소송에서 사실심리는 공판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그것을 통하여 판결의 토대가 이루어진다.</p>

○ 제1심

북한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북한의 재판소의 소송실무에 있어서 재판관행 또는 행동양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를 보면, 재판소가 소송사건을 접수하면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소송장과 관계자료를 열람한 후 재판서기와 함께 분쟁발생의 현지에 나가 당사자 및 소송관련자들을 심문한 뒤, 조서를 작성하거나 물증·서증을 입수하며, 감정촉탁 내지 기관·기업소·단체 등에 조회 등을 통해 분쟁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당사자에 대해 설득과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관계가 드러나 판결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재판심리기일을 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법률적으로 보면, 소송의 제기, 재판준비절차, 사건수속의 중지·사건기각·화해 내지 청구포기, 재판심리절차, 판결 및 판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p>관계법조항</p>	<p>민사소송법 제18조 :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 사건은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건을 처음 맡아 재판하는 재판소가 제1심이 되고 그것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가 제2심이다. 2심제 심급만을 인정하는 것은 제1심재판에 인민들 자신이 직접 참가하여 사건을 정확히 심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여러 단계의 심급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있다. 1심재판만이 본래의 의미의 재판이고 제2심의 심리는 이 재판에서 법령의 요구가 지켜졌는가, 인정한 사실들이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심사한다. 인민 재판소는 언제나 제1심재판소이고 그것에 대한 제2심재판소는 도재판소이다.</p>

○ 제2심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상소제도에서 2심제를 취하고 있다. 즉, 소송당사자나 검사의 의견제기에 의하여 제2심 재판소가 제1심 재판소가 내린 판결·판정의 합법성과 근거성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여기서 소송당사자가 아닌 검사가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북한 민사소송제도의 특징의 하나이다. 북한은 이를 '항의'라고 하며, 소송당사자 등의 불복신청인 상소와 구별하고 있다.

북한에서 상소심은 제2심이자 최종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북한은 제2심이 최종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이른바 제한적 사실심, 제한적 속심, 이익변경·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불적용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제2심 재판소는 제1심 판결·판정의 정당성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상소이유와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제2심 재판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서면에 한정되며, 상소제기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그 이익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적 진실에 입각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의 상소제도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조되지만, 한편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를 지도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강화라는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8조 :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 사건은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건을 처음 맡아 재판하는 재판소가 제1심이고 그것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가 제2심이다. 1심재판만이 본래의 의미의 재판이고 제2심의 심리는 이 재판에서 법령의 요구가 지켜졌는가, 인정한 사실들이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심사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제일심판결의 합법성과 근거성에 대하여 그보다 높은 급의 재판소가 하는 심리.

○ 비상상소

북한에서 민사소송법상 비상상소는 소송당사자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희생하면서 사회주의법의 정신, 노동당의 사법정책,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말씀에 어긋나는 판결·판정을 파기하여 그들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사회주의 특유의 소송제도라고 설명한다. 이 제도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상에는 없는 제도이다.

북한에서 비상상소는 확정된 판결·판정의 위법성과 무근거성이 노동당의 사법정책의 정확한 법집행과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 매우 심증하고 본질적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 민사소송법상 잘못이 사건기록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57조), 그 구체적인 예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제158조). 중앙재판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해당 재판소에 해당 사건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비상상소의 제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다.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민사재판국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 해결하며, 중앙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제162조). 비상상소의 심리는 일절 비공개로 진행된다.

북한의 비상상소제도는 2심급제하에서 상급심이 하나의 법원에 귀일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제2심이 법령해석·적용에서 완전한 통일을 기할 수 없다는 상황에 기인하여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p>관 계 법 조</p>	<p>민사소송법 제18조 :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 사건은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민사소송법 제146조 :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p> <p>민사소송법 제156조 : 확정된 판결·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p> <p>민사소송법 제157조 : 비상상소는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다.</p> <p>민사소송법 제158조 :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확정된 판결, 판정이 당 사법정책에 어긋나며 근본적인 점에서 법을 위반하였을 때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함으로써 당 사법정책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소송상제도.</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날 때 그것을 중앙재판소에 제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는 소송상제도.</p>

○ 재심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재심은 판결·판정이 확정된 후 새롭게 판명된 사정에 따라 확정판결·판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다.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재심 내지 준재심제도와 유사하다.

북한에서 재심은 판결·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 소송당사자 또는 재판소성원이 사건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행위가 판명된 경우, 취소된 판결·판정이나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에 근거하여 판결·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제167조). 이는 비상상소와 마찬가지로 중앙재판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장만이 제기할 수 있다(제168조). 재판소와 검찰소는 스스로 또는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중앙재판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장에게 재심을 제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제기 신청기한은 해당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 민사재판국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하는데, 여기서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이는 중앙재판소가 모든 재심사건을 심리함으로써 재판통제 내지 재판감독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재심이 재심을 제기한 판결을 한 법원이 전속관할로 한 것과 다른 점이다.

<p>관계법조항</p>	<p>민사소송법 제18조 :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 사건은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민사소송법 제167조 :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확정된 판결·판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결·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li> <li>2. 판결·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재판을 끝낸 다음에 알려진 경우</li> <li>3. 소송당사자 또는 재판소성원이 사건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li> <li>4. 이미 취소된 판결·판정이나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에 근거하여 판결·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li> </ol> <p>민사소송법 제168조 : 재심은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p> <p>민사소송법 제169조 : 재판소와 검찰소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새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판결, 판정을 막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소송상제도. 재심은 형사 및 민사사건해결에서 우리 당사법정책과 프로테리아독재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법적수단의 하나이다.</p>

○ 소송장

북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직접 또는 우편, 기요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재판소에 서면인 소송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장에는 재판소의 명칭, 소송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 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해당한 증거를 기재하여야 하며, 피고의 수에 해당하는 소송장의 사본, 소재 불명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기관의 인증문건, 재산을 갈라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국가수수료 납부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장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은 남한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상응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청구내용은 강학상 '소송의 대상'이라고 하며, 청구의 근거로 되는 사실은 '소송의 근거'라고 한다. 북한에서 모든 소송은 소송의 대상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개개의 소송이 구체적으로 구별되는데, 이는 심판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관 계 법 조	<p>민사소송법 제20조 :</p> <p>소송장, 상소장을 비롯한 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가 그 기간을 늘여 줄 수 있다.</p> <p>민사소송법 제64조 :</p> <p>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장을 내야 한다.</p> <p>민사소송법 제66조 :</p> <p>소송장에는 재판소의 명칭, 소송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해당한 증거를 써넣는다.</p> <p>민사소송법 제67조 :</p> <p>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붙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고의 수에 해당하는 소송장의 사본</li> <li>2.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기관의 인증문건</li> <li>3. 재산을 갈라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li> <li>4.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li> <li>5.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li> <li>6. 국가수수료 납부증</li> </ol>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민사상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요구하여 재판소에 내는 원고의 소송문건. 소송장은 조종의 개시, 사건해결을 위한 재판소의 준비 및 피고의 답변준비, 공판심리의 방향설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송문건이다. 소송장에는 당사자 혹은 그의 대리인, 청구의 근거로 되는 사실과 증거, 청구의 내용과 소송가액 등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소송장에 공판준비에서 보충할수없을 정도의 큰 흠이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소송장의 접수를 보류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도와준다. 지정한 기간내에 원고가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는 그 소송장을 접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소송장은 특별한 형식이나 복잡한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누구나 쓰기 쉽게 되어 있다.</p>
------	--

### ○ 소송비용(국가수수료, 사건수속비용)

북한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그 내용에 따라 남한에서의 '소송인지'에 해당하는 구가수수료와 그 외 소송비용인 사건수속비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수수료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나 맞소송을 제기하는 피고, 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들이 지불하는데 정액수수료와 정율수수료가 있다. 정액수수료는 수수료의 액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건들에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정율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 비율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국가중재재판의 국가수수료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금액의 2% 정도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당사자가 기관, 기업소인지 또는 개별적 공민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기관, 기업소는 환치의 방법으로, 개별적 공민들은 수입인지를 사서 소송장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준비절차에서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 후 국가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사건수속비용은 증인, 감정인을 위한 비용이나 현장검증을 위한 비용 등을 말하는데, 신청한 당사자가 선납하여야 한다. 판결선고시에는 이러한 소송비용의 보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참고로 북한은 일본한자식 표현을 한글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자기들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서 '수속'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더욱이 '어음'이라는 용어도 '수형'이라는 일본한자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북한은 그 종류가 단순하고 액수가 적거나 그 비율이 매우 낮으며 소송료를 면제하는 경우들을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소송제기권을 행사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정은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1946년 「수수료, 일당 등 금액계정에 관한 건」에 의해 소송수수료 등은 일본법령에 정해진 금액의 10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p>관계법조항</p>	<p>민사소송법 제21조 :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사건수속비용이 속한다.</p> <p>민사소송법 제68조 : 다음과 같은 사건은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li> <li>2.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li> <li>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li> <li>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li> </ol> <p>민사소송법 제131조 : 재판소는 소송비용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고의 청구를 승인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거부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담시킨다.</li> <li>2. 이 법 제68조에 규정된 사건의 청구가 승인된 경우에는 국가수수료를 피고에게 물릴 수 있다.</li> </ol>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소송가격 - 재산상 분쟁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값. 우리나라에서는 소송가격에 의하여 재판수수료가 정해진다.</p> <p>수수료 - 수속값(수속하는데 드는 값).</p>

### ○ 재판심리조서

북한의 민사소송은 엄격한 구술주의에 의해 진행된다. 여기서 재판심리조서의 작성은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의 방식 및 내용, 당사자·증인·감정인의 말 등 실질적 기재사항에 관해서도 재판조서에 기초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남한 민사소송법이 변론조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점과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124조에서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안에 재판심리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 명칭, 재판소 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재판심리

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행위, 소송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재판심리과정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정, 소송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검사의 의견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심리조서 작성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조서에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정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판정에 의해 재판심리조서를 정정하게 하며,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판정에 의해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25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재판심리조서 외에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2조 : 재판준비 또는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든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예심, 공판준비 또는 공판에서 진행된 소송행위와 그 내용을 적은 법적근거문건. 우리나라에서는 예심단계에서 각종 심문조서, 수색, 압수, 검증 등 증거수집과 관련된 조서와 예심종결조서가 있으며 공판단계에서는 공판준비조서, 공판조서, 공판밖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검증 및 기타 증거수집행위와 관련된 조서가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 사건이나 사고 등을)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 ○ 판결서

북한에서 재판소는 원고의 청구자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증거문서, 증거물 및 담보처분한 재산에 관한 처리와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을 토의·결정한 후 판결을 채택한다.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제133조에서 판결서는 서두부, 서술부, 이유부, 결론부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서두부에는 재판심리 날짜와 재판소 명칭,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사건명과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를 작성한다. 서술부에는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을 작성한다. 이유부에는 재판소가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 판결에서 의거한 법규범을 적는다. 그리고 결론부에는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 소송비용의 부담, 판결의 집행방법과 상소, 항의 절차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관 계 법 조 항	<p>민사소송법 제22조 :</p> <p>재판준비 또는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든다. 제133조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판심리 날자와 재판소 명칭</li> <li>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li> <li>3. 사건명과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li> <li>4.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li> <li>5.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li> <li>6. 재판소가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li> <li>7. 판결에서 의고한 법규범</li> <li>8.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li> <li>9.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li> <li>10. 소송비용의 부담</li> <li>11. 판결의 집행방법과 상소, 항의절차</li> </ol>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판결문 - 판결의 내용과 근거를 적은 문서.</p>

○ 화해 · 청구포기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판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송취소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것을 판정으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청구포기나 화해만으로 바로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 재판소의 승인에 의해서 소송이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송의 개시와 심판대상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송의 종료에 있어서도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한의 민사소송법인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화해는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분쟁을 피하고 당사자간의 양보를 끌어냄으로써 진행중인 절차를 끝마칠 것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라고 한다. 그러나 재산관계소송이 아닌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이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화해만이 존재한다. 재산상 분쟁에서는 판사가 반드시 화해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화해가 당의 정책에 모순되거나 법규범에 위반한 경우 또는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화해의 승인을 거부하고 사건을 일반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혼사건의 화해의 경우에는 결혼관계의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사가 그 화해의 정당성 여부를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은 최근 가족법을 새로이 채택함으로써 이혼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혼재판절차도 반드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실에서 쌍방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인정하는 협의이혼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청구포기의 경우도 화해와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85조에서 재판소는 청구포기, 화해를 승인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동일한 대상과 근거에 기초하여 다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관 계 법 조 항	민사소송법 제25조 : 원고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서로 화해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5조 : 판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들이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송을 취소시켜줄 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판정으로 승인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좋지 않던 사이를 서로 이해하여 푸는 것.

## 第2節 訴訟主體와 證據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訴訟當事者에 관한 用語

#### ○ 소송당사자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되기 위한 당사자능력은 민사상 권리능력을 말한다. 민사상 권리능력은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북한민법과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법 등에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제 기관이나 독립채산제 기업소, 협동조합 등의 단체, 개별적 공민,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 합자회사, 외국인회사, 외국인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적격에 관해서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북한도 이에 관하여 “적격당사자로서 자격인정의 근거로서는 일반적으로 해당한 민사상의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기초로서의 사실들과 피고가 원고의 민사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에 관해서는 남한의 민사소송법과 그 개념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소송상 권리는 그 외향에 있어서 남한의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의 권리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북한의 민사재판에서는 소송절차의 규범화 내지 소송관계자에 의한 소송행위의 실질적인 권리의무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재판소의 소송행위도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조 :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계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 :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재판소의 올바른 판단과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장과 입증할 법적권리를 가지고 재판에 참가하는 소송의 담당자.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원고, 피고 및 그 대리인들이다.

○ 민사소송당사자

북한에서 민사소송담당자라는 용어는 소송법상의 용어라기 보다 강학상의 용어에 가깝다. 이 용어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전술한 민사소송의 사명과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판소와 검사 및 당사자 등이 사적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의 민사재판사업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민사소송담당자라는 사회주의적 개념을 도출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담당자는 소송의 발생이나 그 진행 및 종결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송행위를 수행하는 재판소, 검사, 집행원, 당사자, 참가자 등을 말한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3조 :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원고, 피고 및 그 대리인들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린이들이나 정신병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도 소송당사자로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만 소송행위를 그의 법정대리인이 맡아할뿐이다. 검사도 국가 또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기관이나 공민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로서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

○ 당사자 변경 및 인입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27조에서 이른바 당사자적격이 흠결시 당사자 변경 및 인

입제도를 규정하여 이를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는 남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를 기각하고, 확인의 소 및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요건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도록 한 것과 비교된다.

북한의 이러한 제도는 재판소가 지도적·결정적 지위에서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주의 민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송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인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편리한 제도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의 절차상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우려가 높다. 이는 소송당사자를 재판의 대상 내지 객체, 교육 및 교화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사회주의국가의 민사소송관을 반영한 제도인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제도는 남한의 민사소송제도에서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추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관계법조	민사소송법 제27조 : 재판소는 원고로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 있는 당사자로 바꿀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격 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인입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끌어들이는 것.

### ○ 공동원고(공동당사자)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28조에서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공동원고나 피고는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원고나 피고에게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소송의 개념을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공동소송에 참가하는 소송당사자를 공동당사자라고 한다. 북한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의 발생초기는 이미 여러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법상 관계가 맺어지고 있거나 기타 일련의 법률상 사정들(법률행위의 무효, 청구의 동종성 등)에 기인하는데, 남한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의 요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공동당사자는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비슷한 ‘개별적 책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변론주의 원칙이 배제되고 있는 북한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다만, 한 당사자의 절차적인 소송행위 또는 청구의 승인행위가 다른 공동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8조 :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공동원고나 피고는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자기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원고나 피고에게 맡길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원고 -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요구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 원고는 소송당사자의 하나이다.

○ 독립적인 청구권(독립적 청구권을 가진 참가자)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29조에서 “제기된 청구대상에 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 제6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한 민사소송법상 독립참가자소송과 유사한 제도인데, 북한은 이를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참가자’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당사자들 중에서 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사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남한 민사소송법상 독립당사자참가는 원고·피고 쌍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참가가 부적법하게 되는 점과 다르다.

북한의 경우 참가자는 원고·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소송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는데, 원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권리확인소송일 것이고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소송이나 확인소송이 될 것이다. 참가자는 원고·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소송제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국가수수료 등 소송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소송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9조 :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 제6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30조 :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할 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참가자 - 참가한 사람.
------	--

○ 독립적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 참가자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30조에서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할 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남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 참가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 참가자는 소송절차에서 청구를 승인하거나 화해할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당당자의 지위에서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문발급신청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민사소송법이 보조참가소송에 대한 판결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조참가인에게도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참가자가 참가하였을 경우 그 참가소송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그와 관련하여 그 이후 참가자를 당사자로 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있어 이른바 선결적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 선결적이라는 뜻은 나중의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선행한 재판소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판결의 상호의무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재판소의 관점에서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판결의 효력을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 남한에서는 판결의 효력을 보조참가인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	민사소송법 제30조 :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할 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참가자 - 참가한 사람.

○ 맞소송

북한의 민사소송에서 맞소송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과 동시에 심리해결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반소와 같은 개념이다. 맞소송은 독립된 소송이므로 소송제기의 실현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소송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맞소송은 재판심리전에 제기하는 원칙이란 사건에 따라 재판심리 후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사소송법 제30조 :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 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참가 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할 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p> <p>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3자가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이미 심리를 시작한 재판소에서 한다.</p> <p>민사소송법 제69조 : 피고는 제기된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소송은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법 제64조, 제66, 67조의 절차에 따라 제기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이미 제기한 원고의 소송과 동시에 심리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가 그 원고를 상대로 독립적인 청구를 제기하는 소송.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맞소송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청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맞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의 부당성을 반박하는 맞주장과는 구별된다. 맞소송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과 동시적으로 심리해결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큼 두 소송간에는 호상 연관성(소송근거에 있어서 종류가 같거나 채무의 맞비기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이 있어야 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민사소송에서 소송이 재판소의 심리중에 있을 때 원고의 소송상 청구와 관련이 있는 청구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피고의 제기(맞소송)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이 있든가 또는 원고의 청구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구라야 한다.</p>

○ 소송상 권리계승

북한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권리계승'은 사건이 완전히 심리해결되기 전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

간 결과, 그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건의 소송당사자로 나서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승계인의 소송참가 내지 소송인수와 유사한 제도이다.

북한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로 넘어가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참가와 인수라는 소송행위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새로운 당사자에게 승계된다. 이는 남한 민사소송법상 승계인의 소송참가·소송인수가 권리·의무의 승계인이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가하든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송에 관여하든지 간에 참가와 인수라는 일정한 소송행위가 필요하다는 점과 다르다. 또한 북한에서는 집행단계에 이르러서도 소송승계를 할 수 있는데 비해, 남한에서는 소송참가·소송인수는 소송계속중에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한 판결효력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가 소송상 권리계승인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남북한 민사소송 제도의 같은 점이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31조 :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당사자가 죽은 경우에는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앞 항의 경우에 이미 진행한 모든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민사소송에서 사건의 심리나 판결의 집행과정에 당사자 일방의 민법상 권리, 의무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결과로 생기는 소송당사자의 교체. 우리나라에서 소송상 권리계승은 흔히 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인이 재조직될 때에 발생한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상 권리계승이 있을 때에는 계승의 전후를 통하여 하나의 동일한 소송이 계속된다. 따라서 첫 당사자의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계승받은 당사자에게 그대로 넘어가며 첫 당사자가 수행한 모든 소송행위의 효과도 계승받은 당사자에게 그대로 미친다.

○ 대리인(위임대리)

북한에서도 남한과 같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위임대리는 노동관계나 위임계약에 의해 발생하는데, 노동관계에 기초한 위임대리는 기관, 기업체, 단체의 일군이 그 기관, 기업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이다.

또한 위임계약에 기초한 위임대리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거나 그밖의 일반공민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를 말한다. 위임대리인의 자격에 관해서는

변호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정신병자, 선거권박탈형을 받은 차를 제외한 모든 공민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p>민사소송법 제32조 :</p> <p>기관, 기업체,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를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미성년자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p> <p>민사소송법 제33조 :</p> <p>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행위를 맡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내야 한다. 당사자가 재판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그 사실을 기록한 재판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민법상 대리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원래 대리할 것을 위임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는 민법상 제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며 행위의 법적 효과가 돌아가는 사람을 본인 또는 피대리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리인, 피대리인으로는 개별적공민 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소, 단체도 될수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지닌 권한과 의무를 맡아서 행사하는 사람. 위임대리 - 위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 업무일군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대리에 속한다.</p>

### ○ 대리인(법정대리)

북한에서 법정대리는 미성년자와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자기 단체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단체가 나서는 이른바 '사회적 대리'도 법정대리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임의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사건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반드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의 서명과 기관공인이 있어야 한다.

관 계 법 조	<p>민사소송법 제32조 :</p> <p>기관, 기업체,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를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미성년자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p>
---------	--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대리를 하자면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되거나(법정대리) 본인에 의하여 부여된다(위임대리). 레컨대 어린이들과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이 하는 대리는 법정대리이며 지배인의 위임을 받고 자재상사의 업무일군이 자기 상사의 이름으로 다른 자재상사와 공급계약을 맺는 행위는 위임대리이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정대리 - 법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 미성년자녀를 위한 부모의 대리와 같은 것이다. 위임장 - 어떤 일을 책임지워 맡긴다는 내용을 적어서 본인에게 증거로 주는 문건.</p>
-------------	---

○ 소송대리인

북한 민사소송법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공민은 직접 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북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소송상 권리라는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는데 그 권리에는 일반적 권리와 특수적 권리가 있다. 전자에는 증거의 제출, 증거보충신청, 증거조사에 참가하여 질문할 권리, 변론에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청구의 포기, 승인, 화해, 판결로 해결받은 돈 또는 물건의 수령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북한 민사소송법은,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으로서 반소의 제기, 상소의 제기는 일반적 권리에 불과할 뿐 특수적 권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p>관계법조</p>	<p>민사소송법 제35조 :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소송대리인으로는 흔히 공민에 대해서는 변호사,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단체의 일군, 행위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그의 부모 혹은 후견인이 나선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법령, 규약 또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것은 대리권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위임장, 신임장 등)에 정식화된다. 소송대리인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민법상, 노동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재판소와의 관계에서는 소송당사자와 동일한 소송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소송대리 - 다른 사람이 원고나 피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법적효과가 원고나 피고에게 돌아가게 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 소송대리는 법이 정한데 따라 위임에 의하여 한다.</p>

## II. 證據에 관한 用語

### ○ 증거

재판은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우선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될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을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게 되면, 재판에 대한 신뢰는 깨질 우려가 많다. 따라서 법관의 사실인정은 우연적·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합리적이며 공정하도록 하기 위해 법관이 사실인정수단인 증거를 소송절차에서 드러내어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조사절차가 필요하다. 북한에서도 재판소를 비롯하여 소송당사자들이 수행하는 모든 소송활동은 당해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그를 조사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활동이며, 이러한 소송활동, 재판활동을 떠나서는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 증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상의 증거제도는 사건해결에서 과학성·객관성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사회주의 특유의 민사재판목적과 관련하여 몇가지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입증대상에 있어서 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진실발견주의를 지향한 점, 입증책임에 대신한 입증부담의 개념을 설정하여 재판소로 하여금 실제적 진실의 발견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직권탐지주의를 지향한 점, 자백의 구속력이 배제되고 있는 점, 증명과 소명을 구별하지 않는 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증인신문에서 교호신문제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점, 위증책임이 모호한 점, 변형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은 그 구성체계에 있어 증거에 관한 장을 다른 장에 앞서 규정한 것은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증거의 과학성과 엄격성을 보장함으로써 절대적 진실주의를 관철한다는 의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p>민사소송법 제36조 :</p> <p>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p> <p>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p> <p>민사소송법 제37조 :</p> <p>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p> <p>재판소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 수 있다.</p>
-----------------------	---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증거 - 예심, 검찰, 재판기관이 당사법정책에 기초하여 제기된 사건의 사실, 사정들을 밝히고 확정하는데 토대로 되는 자료. 증거재판의 원칙 - 판결의 기초로 되는 재판소의 사실인정이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공화국소송법의 원칙. 증거재판의 원칙은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불문하고 재판사건에서 입증의 대상으로 되는 모든 사실들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고 리해관계있는 당사자들이 참가한 공개한 공판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재판에서 과학성과 정확성을 기하며 리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상 보장으로서 공화국소송법의 로동계급성과 인민성을 보여주는것이다.

○ 증거문서

북한 민사소송법상 증거문서는 남한 민사소송법상 서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문자 또는 이에 갈음하는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하는 유형물을 의미하며, 북한의 민사재판에서도 해당한 물체의 외형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의의를 가지는 경우에는 증거문서가 아니라 증거물이 된다고 하여 증거문서와 증거물을 구분하고 있다.

북한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문서를 공식적 문서, 비공식적 문서, 처분문서, 조회보고문서, 단순서면, 공증서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보면, 공식적 문서는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가 일정한 형식·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하고, 비공식적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분문서와 조회보고문서의 구분은 남한에서의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분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공증서면은 국가공증기관이 작성한 문서로서 남한에서의 공정증서 내지 인증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36조 :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 : 소송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같은 것을 증거로 보존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조서를 만든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증거로 되는 문서.

○ 증거물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증거물은 그의 형태, 품질 기타 외형상 특성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확정하게 하는 온갖 물체를 의미한다. 이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검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장소 등 검증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증거물을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나 제3자는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이를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반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심리장소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물이 있는 장소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북한도 이를 현장검증이라고 한다. 검증물에 대한 증거조사시기는 재판정에서 할 경우는 재판심리절차에서 시행하나 현장검증의 경우에는 재판심리절차뿐만 아니라 재판준비단계에서 판사 1인이 별다른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물은 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증거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당사자나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사건기록에 첨부할 수도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사소송법 제36조 :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p> <p>민사소송법 제52조 : 소송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같은 것을 증거로 보존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조서를 만든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는 필요한 법률사실들을 확정하는데서 재판소에 도움을 주는 소송상 수단들과 일정한 법률적 결과의 발생, 즉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과 결부된 사정들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사실들을 말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증거로 되는 물건.</p>

○ 증 인

북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재판소에게 말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은 민사재



판에서 증인의 말을 옳게 이용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재판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가시켜 그들의 힘에 의해 입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고, 따라서 재판소는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광범위한 군중들 가운데서 특히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의의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없이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의 말을 옳게 이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정신병 그밖의 신체적 결함으로 사건에 대한 해당사실을 옳게 이해할 수 없거나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건의 일방당사자와 친척관계,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설사 타방 당사자가 그를 증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소는 그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증인으로 채택된 자도 그러한 이유등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적 신분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 하더라도 해당기관의 특별한 승인절차없이 증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이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에서 공무원 등 특정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에 대하여 직무상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사소송법 제42조 :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해당 사실을 옳게 이해할 수 없거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자는 증인으로 될 수 없다.</p> <p>민사소송법 제43조 : 증인은 알고 있는 사실을 직접 써낼 수 있으며 진술내용이 잘못 기록된 경우 그에 대하여 고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민사소송법 제44조 : 증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p> <p>민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재판소 또는 예심기관의 요구에 응하여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의무와 책임을 진 사람. 범죄사건이나 분쟁사건의 복잡한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물적증거만으로써는 부족하며 사람들의 증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증거를 내대며 보증하는 사람. 재판소, 검찰소, 예심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그대로 말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사람.</p>

○ 감 정

감정은 일반적으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정제도는 북한의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북한은 일정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판소의 위임을 받아 사건의 정확한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 문제들에 대한 해명을 하고 그에 관한 결과를 재판소에 전달할 책임과 의무를 감정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감정인이 재판소로부터 위임받은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감정이라 하며, 감정에 의해 얻은 결과를 '감정결과'라고 한다.

종래 북한에서는 재판소가 사건내용을 밝히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에 맡겨야 하고,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1994년 민사소송법은 이를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즉, 재판소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감정을 맡길 수 있다고 하였으며(제47조), 반드시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아니라도 사적인 전문감정기관에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8조). 또한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 대한 의무적인 감정이행 조항도 삭제하였다. 이는 감정절차의 유연화와 적법절차의 요소를 강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관계법조	<p>민사소송법 제36조 :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p> <p>민사소송법 제47조 :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밝히는 데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판정으로 감정을 맡길 수 있다. 감정을 맡기는 판정서에는 감정할 대상과 내용, 기간을 밝히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과 그의 의무를 지적한다.</p> <p>민사소송법 제48조 :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문제를 해당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힘을 빌어 진행하는 조사활동.</p>

### 第3節 訴訟節次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裁判管轄에 관한 用語

##### ○ 민사재판절차

사회주의법이론에서 민사재판절차는 사회주의법의 정확한 집행과 사회주의 공동체생활규칙에 대한 존경을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공민교육을 강화·장려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왔다. 북한의 민사재판절차도 이와같은 사회주의 민사재판절차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해왔다. 1994년 민사소송법은 민사재판절차에서 과거 정치사상적 성격과 이념적 색채를 완화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직권주의를 후퇴시키고 검사의 소송상 역할을 약화시키고 인민대중의 재판관여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다소 개선된 제도를 신설하였지만, 기존의 사회주의 민사재판절차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민사재판절차의 기본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말씀, 그에 기초한 노동당정책의 최고법규성, 둘째로 민사재판대상의 축소,

셋째로 재판소의 지도적·결정적 지위와 변론주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제한 내지 배제 및 직권탐지주의의 채택,

넷째로 적극적·실체적 진실주의와 소송당사자의 진실의무강조,

다섯째로 검사의 광범위한 민사재판·집행절차 참가,

여섯째로 재판준비절차의 강화,

일곱째로 재판감독절차로서의 비상상소, 재심제도,

여덟째로 판결의 법령적 효력과 짧은 집행시효기간의 설정,

아홉째로 민사·형사재판절차의 분리의 불철저,

열째로 인민대중의 민사재판절차의 관여 등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개인소유의 대상이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살림집, 가정용품, 문화용품, 승용차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분쟁의 발생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이행·해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해결은 모두 민사재판절차가 아닌 국가중재기관이 중재재판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북한에서 실제로 민사재판이 제기되는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민사재판절차는 이혼 및 부양료청구사건, 양자 등 가사사건이 대중을 이루고,

가사사건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사사건은 대여금청구소송, 물건반환청구소송, 손해보상청구소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53조 :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 2. 이혼사건 3.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 4.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 5.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재판은 심리준비, 사실심리, 당사자변론, 피소자의 최후진술, 판결의 평의표결, 판결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형사, 민사사건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며 그것을 통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이 관철된다.

○ 민사재판 대상

각국별로 민사재판절차에서 해결한 분쟁이나 사건의 범위는 그 나라의 전통과 사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해야 할 사건을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 이혼사건,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 그리고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이러한 범위는 자유민주국가의 민사재판의 대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민사재판대상은 사회주의국가 재판제도의 특징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민사재판 중에서 이혼재판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53조 :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 2. 이혼사건 3.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 4.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 5.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공화국의 민사소송은 소송개시, 공판준비, 공판심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판결판정의 집행, 비상상소 및 재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소송개시, 공판준비, 공판심리는 필수적인 소송단계이고,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판결 판정의 집행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거치는 소송단계이다.

○ 민사사건의 재판관할(대상관할)

재판관할은 구체적인 사건을 어느 재판소가 심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재판관할의 분류는 급이 다른 재판소간 또는 동급의 재판소 사이에서 처리될 민사사건들을 분담함으로써 사건을 심리해결할 재판소들 사이의 권한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준다. 북한 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에는 대상관할과 지역관할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상관할은 어느 급의 재판소가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상관할에 의하여 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중앙재판소가 각기 제1심으로 심리해결할 사건들이 결정되게 된다. 이에 관해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54조에서 "민사사건의 재판은 인민재판소에서 한다. 그러나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로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막상 그 관할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의 대상관할은 남한의 소송법상 심급관할과 사물관할을 혼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민사소송의 특유한 사물관할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튼 북한의 대상관할에 의하면,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최하급 재판소인 인민재판소가 제1심으로 재판할 수 있지만, 도(직할시)재판소, 중앙재판소도 제한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동급의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인민재판소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중앙재판소가 제1심으로 재판하는 사건의 경우 상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심급이익이 박탈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변칙적인 재판관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 계 법 조	<p>민사소송법 제53조 :</p> <p>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li> <li>2. 리혼사건</li> <li>3.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li> <li>4.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li> <li>5.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li> </ol> <p>민사소송법 제54조 :</p> <p>민사사건의 재판은 인민재판소에서 한다. 그러나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p> <p>중앙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로 보낼 수 있다.</p>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국가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사업범위. 관할은 각이한 국가기관들이 국가사회활동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됨이 없이 당정책에 적합하여 체계정연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p> <p>대상관할은 범죄의 종류, 성격에 따라 정하는 관할로서 어떤 종류의 사건을 어느 급의 재판소의 제1심관할에 속하게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관할 - 국가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p>
------	--

○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지역관할)

북한에서 지역관할은 토지관할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 중 일반지역관할은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을 어느 지역 재판소가 재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남한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과 같은 개념이다.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55조에서 “민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고 규정하여 보통재판적과 관련재판적을 규정한 남한 민사소송법상의 제도와 유사한 것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은 특별관할에 관하여 기관·기업소·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 청구사건, 자녀양육 및 부양료 청구사건,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것과 같은 사건, 만 1살미만의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 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는 사건, 교화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제56조). 또한 법인과 그 산하기관·기업소·단체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지 또는 계약이행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제57조), 부동산을 청구하는 소송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제58조). 그리고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짐수송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은 짐이 닿아야 할 곳이나 짐이 닿은 곳 또는 짐을 부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제59조).

관계법조항	<p>민사소송법 제55조 : 민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p>
-------	---

<p>관계법조항</p>	<p>민사소송법 제56조 :                  다음과 같은 사건의 재판은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청구사건                  2. 자녀양육 및 부양료 청구사건                  3.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협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4. 만 1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 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6.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관할 - 국가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재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지역관할은 해당 범죄사건을 같은 재판소중 어느 지역의 재판소가 취급하게 하는가 하는 것으로서 범행지, 소추가 시작된 곳, 범죄자를 체포한 곳, 범죄자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p>

## II. 訴訟의 提起에 관한 用語

### ○ 소송의 제기

북한에서 소송의 제기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재판상 확인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일정한 행위의 수행을 요구하거나 원고·피고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요구하는 신청을 말한다. 이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소의 제기와 유사한 것이다.

북한은 당사자의 소송제기를 소송제기권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소송법상 의미와 실체법상 의미의 소송제기권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재판소를 통해 민사상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판소에 재판상 방위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상 권리로서 파악하고, 후자는 재판소를 통하여 민사상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아 양자를 구별한다. 이는 소송법상 의미의 소송제기권을 흠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여야 하고, 실체법상 의미에서의 소송제기권을 흠결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소송을 두 개의 형태, 즉 청구소송과 확인소송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남한 민사소송법상 소의 유형을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류에 해당한다. 먼저 청구소송은 이행의 소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작위를 구하는 적극적인 청구소송과 부작위를 구하는 금지소송으로 나뉘어지는데, 강제집행이 따른다는 점에서 '집행소송'이라고도 한다. 이의 구체적인 예는 소유물반환청구나 금전반환청구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확인소송은 민사상권리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적극적인 확인소송, 소극적인 확인소송으로 나뉘어진다. 이의 예로는 결혼무효확인소송이나 저작 및 발명권확인 소송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 민사소송법상 소송이 제기되면 절차법적으로는 소송수속을 발생시키는 소송법적 효과가 생기고, 실체법상으로는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 소송비용보상가능 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소송법적 효과로서 특이한 것은 소제기전 피고재산에 대해 담보처분을 할 수 없었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장을 접수하게 되면 그 때부터 재판소가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민사소송법 제63조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사상 권리,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와 사회,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소송제기권 - 민사상권리가 침해당하였거나 다투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며 정당하게 해결하여줄 것을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송제기권은 민사거래관계에서 인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민들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자기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다투어지고 있을 때 재판상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판소는 해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 소송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 합치거나 갈라 재판(소송의 병합·분리)

북한의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의 병합에는 당사자병합과 청구의 병합이 있다. 전자는 소송에 공동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의무적으로 당사자들(공동원고 또는 공동피고)을 인입시키지 않고 사건을 정당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의무적 당사자병합'은 남한에서의 필요적 공동소송의 개념과 비슷하다.

후자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소의 객관적 병합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북한에서



는 의무적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북한에서는 소의 의무적·객관적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판소는 이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구애됨이 없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 상대방 당사자의 부양문제 또는 재판을 가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

한편 북한에서는 일단 병합소송이라도 병합심리하는 것이 소송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심리를 지연시키는 등 병합심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무적 병합을 제외하고 분리판정을 하여 소송을 따로 심리할 수 있게 하였다. 소송의 병합과 분리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직권으로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 계 법 조 항	민사소송법 제73조 : 재판소는 자기 결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성질에 따라 합치거나 갈라 재판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소송 - 민사, 형사사건의 취급활동. 병합 - 합병<합하다: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거나 여럿을 하나로 되게 하다.

### Ⅲ. 裁判準備에 관한 用語

#### ○ 재판준비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재판준비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와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재판부 구성원 중 인민참심원 2인을 제외한 판사 1인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와 기타 자료들을 수집·채택하며, 사건심리와 관련된 일련의 소송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수행하는 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북한에서 재판준비절차는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은 남한의 민사소송법이 재판준비절차를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면이다. 이는 북한의 민사소송법이 총 182개 조항에서 18개조항을 재판준비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재판준비절차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재판준비절차는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사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채택함으로써 심리의 집중과 능률을 기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판사가 현지조사와 현장검증을 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사상 및 법률교육, 군중동원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정치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사건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소송상 문제에 대한 판정 및 재산보전처분, 재판중지판정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요컨대 재판을 통한 정치사업 및 실질적인 사건의 해결을 지향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남한의 민사소송에서 재판준비절차가 민사합의 부사건 중 복잡한 사건을 합의체의 일원인 수명의 판사에게 맡겨서 미리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하게 하여 변론에 임하게 함으로써 심리의 집중과 능률을 기함으로써 재판인력의 낭비를 보완하려는 취지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민사소송법 제74조: 민사사건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준비를 한다.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민사소송법 제76조 :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취급처리와 관련한 수속상 문제를 해결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재판 - 재판소에서 형사사건과 민사적 분쟁을 법적으로 심의하고 해결하는 재판소의 권력적 활동.

○ 재판준비의 중지(사건수속의 정지)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사건이 제기된 후 절차의 진행을 부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것을 '사건수속의 중지'라고 한다. 이는 재판준비단계 뿐만 아니라 재판심리단계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사건수속의 중지사유에 관하여 북한 민사소송법은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소송당사자인 기관·기업소·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재판·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취급되고 있는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는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소송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여기에는 의무적 중지와 의무적이지 않은 중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의 중단과 유사하고, 후자는 소송절차의 중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중지기간을 설정하여 당사자의 사망, 기관·기업소·단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중지된 경우에는 사건수속을 중지한 때로부터, 그밖의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직권으로 재판 계속판정을 하고 재판을 속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4조).

<p>관 계 법 조 항</p>	<p>민사소송법 제83조 : 판사는 재판준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제기되면 판정으로 재판준비를 중지한다. 1.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소송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취급되고 있는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는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p> <p>민사소송법 제84조 : 재판소는 이 법 제83조제1호, 제2호의 경우 재판준비를 중지한때부터,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 안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재판준비를 계속할 데 대한 판정을 하고 재판준비를 계속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재판 - 재판의 민주주의적 원칙은 진정한 인민적재판제도의 기본표징으로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인 재판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조건으로된다. 우리나라 재판의 특성은 인민참심원의 형태로 인민들이 재판에 직접 참가하며 재판절차와 사건해결의 기준이 법에 의하여 자세하게 규정되며 재판이 이해관계자들의 참가밑에 필요한 주장과 증명 및 해명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군중들 앞에서 진행되는데 있다.</p>

### ○ 중 재

중재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분쟁을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 제3자인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중간에 서서 해결하는 것으로서 국가재판기관인 법원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권력적 활동인 재판과는 다른 재판외의 임의적 분쟁해결활동을 의미한다. 중재는 단심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심급을 예정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보다 사건의 신속한 해결,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관계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북한도 중재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중재제도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중재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중재제도는 우선 개인이 아닌 경제기관·기업소·단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국가재판활동의 성격이 강하며, 부차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여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활동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중재합의, 중재원의 선정 등 중재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입각한 중재재판의 진행에 중점을 두는 자유민주국가의 중재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관 계 법 조 항	<p>민사소송법 제86조 :</p> <p>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재, 행정적 절차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li> <li>2. 확정된 판결·판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li> <li>3. 소송당사자로 될 수 없는 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된 때 그를 자격 있는 자로 바꿀 수 없는 사건인 경우</li> <li>4.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때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 자에게 물려줄 수 없는 사건인 경우</li> <li>5.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병사, 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인 경우</li> </ol>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사회주의적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인민경제계획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을 심의해결하는 활동. 사회주의적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에 계약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취급되며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 재판소의 중재부서가 심리해결한다. 중재는 계약 및 계약규를 강화하며 경제기관들에서의 독립채산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당사자들 사이에 끼여들어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 계획에 기초하여 맺은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에 시비를 가리는 중재기관의 활동, 국내중재, 무역중재, 해상중재, 국제중재가 있다.</p>

○ 사건기각(판정)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다음의 경우에 판사는 사건기각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로는 중재·행정적 절차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 확정된 판결·판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 소송당사자로 될 수 없는 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된 때 그를 자격 있는 자로 바꿀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때 그의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물려줄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병사, 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인 경우 등이다(제86조).

북한에서 사건기각판정은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소각하판결과 유사한 개념이다. 북한의 사건기각판정은 위의 경우와 함께 필요한 사전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포기,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화해를 재판소가 접수한 경우, 원고가 재판기일통지를 두 번이나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사건기각판정은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며 재판심리절차에서 사건기각판정을 할 때에도 재판부가 아닌 판사 1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사소송법 제86조 :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1. 중재, 행정적 절차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 2. 확정된 판결·판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 3. 소송당사자로 될 수 없는 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된 때 그를 자격 있는 자로 바꿀 수 없는 사건인 경우 4.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때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 자에게 물려줄 수 없는 사건인 경우 5.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병사, 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인 경우</p> <p>민사소송법 제87조 : 재판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 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건기각 - 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더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그 사건의 취급을 그만두는 소송행위</p>

○ 상소 · 항의

북한 민사소송법상 상소·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상소장, 항의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 판결서, 항의서의 등본은 판결·판정을 내린 날로부터 2일 안으로 소송당사자와 검사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제140조). 그러나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변호사도 당사자로부터의 특별한 수권없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2심재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1심 재판소는 상소·항의기간이 지나면 상소장, 항의장을 해당사건 기록과 함께 제2심 재판소로 보내야 하며,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한 급 높은 검찰소 검사가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도 제2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44조).

<p>관 계 법 조 항</p>	<p>민사소송법 제87조 : 재판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 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p> <p>민사소송법 제139조 :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제1심 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상소, 항의할 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중앙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하여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p>
------------------	---

관계법조	<p>민사소송법 제140조 :</p> <p>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소송 당사자와 검사에게 준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p> <p>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검사 이외의 소송당사자들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이 있는 점을 고쳐줄 것을 상급재판소에 요구하는 행위. 상소는 피소자, 변호인, 사소원고 및 그의 대리인, 원고, 피고, 소송참가자 및 그들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상소 -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검사 밖의 소송당사자들이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할수도 있고 일부에 대하여 할수도 있다. 항의 - 판결, 판정이 법에 어긋나게 내려졌다고 인정될 때 재판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검사의 행위</p>

○ 기일지정 및 송달

북한 민사소송법은 재판준비단계에서 판사는 제기된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길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고, 검사·당사자에게는 기일통지서를 보내고, 증인·감정인에게는 소환장을 보낸다. 재판에 넘기는 판정에는 재판기일과 재판에 부를 증인, 감정인들과 재판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7일전 검사·소송당사자, 그밖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를 할 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하며, 재판소는 재판심리 날자를 알리는 것을 비롯하여 소송행위와 관련된 통지를 서면으로 하며 통지서와 소송문건을 직접 본인에게 주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기일통지서에 대한 송달여부는 송달증에 의하여 증명된다.

관계법조	<p>민사소송법 제88조 :</p> <p>판사는 재판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판정서에는 재판심리 날자와 장소, 재판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같은 것을 밝힌다.</p> <p>민사소송법 제89조 :</p> <p>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7일 전에 검사 소송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를 할 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p>
북한용례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p>송달 - 받을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p>

#### IV. 裁判審理에 관한 用語

##### ○ 소송당사자의 불출석

북한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첫 번째 기일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심리는 연기된다. 또한 원고가 두 번째 기일통지를 받고도 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할 수 있으며,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두 번 호출을 받고서도 상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참가하지 않은 대로 재판심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피고의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재판소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심리를 연기하는 경우 재판심리 기일에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심문할 수도 있으나, 증인·감정인에게 질문할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활동의 민주주의원칙과 사건해결의 과학성 보장에 지장이 없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감정인이 불출석하였을 때에는 검사나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심리연기 또는 계속의 판정을 하지만, 통역인·해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심리를 연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검사가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p>민사소송법 제97조 :</p> <p>소송당사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피고가 재판심리에 두 번 호출받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참가하지 않았거나 자기가 참가하지 않은 대로 재판심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참가 없이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원고가 재판심리에 두 번 호출받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소송당사자는 자기의 임무과 리익에 비추어 재판소 앞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며 모든 증거조사에 참가하여 증거를 내거나 신청하며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하여 반박 또는 항의할 권리를 가진다.</p>

##### ○ 거짓말을 하면 법적 책임(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제106조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형법은 제120조에서 "범죄에 대한 거짓

신고를 한 자 또는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이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재판절차에서 증인이 위증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은 받게되지만, 1994년 민사소송법은 이에 관하여 다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형사처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구민사소송법은 위증에 관하여 ‘형사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1994년 민사소송법은 ‘법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용어상개념으로 보면, 법적 책임은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여기에는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 벌금처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검찰기관에 이관하는 결정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에 의하면, 재판소는 위증죄를 범한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된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재판절차에서 바로 해당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증인에게 소송담당자와 함께 진실을 발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실현하여야 할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진실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선서의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민사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선서제도가 없으며 증언의 선서거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관계법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 증인에 대한 심리는 순서에 따라 1명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소송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위증 - 증인으로서 허위적인 진술을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진술이나 증서.

### ○ 교호신문방식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증인의 말이 끝난 후 그 증인을 심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소송당사자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대방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송관계자들은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종래 재판장이 증인의 말이 끝난 후 그 증인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증인에게 질문하게 하며 나머지 다른 소송관계자들은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다른



점이다. 이는 증인심문방식에 있어서 이른바 '교호심문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교호심문방식을 채택한 것은 심문의 주체를 재판소에서 당사자로 바꾸어 당사자의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고양시키고 당사자의 능동적인 주심문과 반대심문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취지에 보다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증인도 해당 사실은 직접 써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술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07조 :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소송당사자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대편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어 놓고 심리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교호 - 서로 어긋 매기거나 엇사귀는것.

### 第4節 判決・判定에 관한 用語의 概念

-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원고승소판결) 및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

북한의 민사소송법에서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을 원고승소판결을 말하고,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은 원고패소판결을 말한다. 이 때 금전청구의 경우에는 금액과 분담관계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하고 물건청구의 경우에는 이행불능과 집행불능을 구별하지 않고 물건을 넘겨주기 곤란한 경우에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관해 지적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29조 :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2.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원고 - 민사사건이나 중재사건에서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는 공민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 승소 - 소송에서 이기는 것. 패소 = 락송 - 소송에서 지는 것.

○ 상소장 · 항의서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상고장 · 항의서에는 상소 · 항의의 이유와 요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밝힐 수 있다. 판결에 대한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 납부증을 붙이나 판정에 대한 상소장 또는 항의장에는 이를 붙일 필요가 없다. 국가수수료 액수는 국가중재재판의 재심제기시 국가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원심수수료의 50%로 생각되나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북한은 상소장 · 항의장에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더라도 상소 · 항의로서의 효과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여 항소이유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41조 : 상소, 항의를 하려는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이나 항의서를 판결 · 판정을 내린 제1심 재판소에 내야 한다. 상소장, 항의서에는 상소, 항의의 리유와 요구를 적어야 하며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밝힐 수 있다.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 납부증을 붙인다. 민사소송법 제142조 : 제1심재판소는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상소장, 항의서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한 급 높은 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항의서 - 항의하는 내용을 적은 문건.

第5節 第2審裁判에 관한 用語의 概念

○ 제2심 재판

북한에서 제2심 재판소는 상소 · 항의에서 지적된 이유나 범위에 관계없이 상소된 부분이나 상소되지 않은 부분, 또한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상소에 제기되지 않은 근거까지도 포함하여 판결 · 판정에 관해 전면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심 재판소는 판결의 합법성과 근거성을 심사한다. 합법성에 관하여는 모든 법의 위반이 판결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실체법의 적용 해석에 있어서 당의 정책에 모순되거나, 적용할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당사자간 분쟁의 정당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법의 위반이나 부당한 적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 ·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판결의 근거성을 심사한다는 것은 제1심 재판소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사건의 사실사정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논리적으로 옳은 결론을 내렸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심 재판소가 판결의 근거성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사건기록자료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2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재판소가 증거를 정확히 평가한 데 대한 심사에 한정됨으로써 제2심 재판소는 새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고칠 수는 없으며, 그 자료는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사소송법상 제2심 재판의 심리방법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사실심리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증거방법 및 판결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는 면에서 보면 법률심에 가까운 제한적 사실심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46조 : 제2심 재판에서는 상소, 항의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 재판소의 판결·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 제2심 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제2심 재판에는 소송당사자와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나 검사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심리날자는 제2심 재판을 시작하기 3일 전까지 검사와 소송당사자에게 알린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제일심재판에서 내린 판결, 판정의 합법성을 검토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바로 잡는 웃급 재판소의 재판활동.

○ 사건보고

북한에서 사건보고는 사건의 연구를 위임받은 주심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건보고에서는 상소·항의의 이유여부에 대해 보고자의 견해를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소송관계자들이 의견을 듣고 합의실에 가서 재판원들간에 토의할 문제라는 이유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48조 : 제2심 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건 - 법기관 같은 데서 법적으로 다루게 되는 일거리.

○ 제2심 재판소의 판정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제2심에서의 재판은 판결의 형식이 아닌 판정의 형식에 의해서만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제2심 판정에는 상소·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는 판정, 원심판결·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 원심판결·판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재판소나 그와 같은 급의 다른 재판소에 넘기는 판정, 판결·판정을 취소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일부 고치는 판정 등이 있다.

제2심 판정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서두부, 서술부, 이유부, 결론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2심 판정은 제2심 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북한 민사소송법상 제2심판정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제2심 재판소가 제1심 재판소의 판결이나 판정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본질적인 소송법령의 위반이나 재판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무상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판정을 제2심판정에 덧붙여 내리는 판정을 말한다. 이는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에 대해 실무상지도를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55조 : 제2심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판정에는 사건의 기본문제를 심리해결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제1심 재판소의 해결, 상소, 항의사건에 대한 제2심 재판소의 해결 등이 속한다. 판정은 판사 1명과 참심원 2명 또는 판사 3명이 합의하여 내린다.

第6節 裁判監督節次 및 執行節次에 관한 用語의 概念

I. 裁判監督節次에 관한 用語

○ 비상상소의 제기

북한에서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하도록 되어있다. 중앙재판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장은 비상상소의 제기를 위하여 해당

재판소에 사건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판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로는, 하급재판소와 검찰소가 중앙재판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장에게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재판소에 자기 관할 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건기록에서 비상상소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앙재판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장에게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게 된다. 여기에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비상상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사건해결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도 청원절차에 따라 비상상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비상상소의 제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다.

관계법조항	민법 제160조 :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 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에서 비상상소 제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의견을 붙여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며 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해당 재판소에 돌려보낸다. 민법 제158조 :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비상상소는 확정판결 및 판정에서 재판소가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 사실을 근거 있게 확정하고 재판에서 간혹 생길 수 있는 중대한 결함들을 시정시키며 당의 정책과 그의 구현인 공화국법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한다.

### ○ 중앙재판소 판사회의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중앙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해결하도록 하고 있다(제162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의 구성은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도 이루어지며,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판정은 참가한 성원의 다수가결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집행은 중앙재판소 소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3조). 또한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하며,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제164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여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다시 비

상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재판소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여 내린 판정은 다시 비상상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중앙검찰소장이 일반적 적법성 감시기능에 근거하여 중앙재판소 판사회의 판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다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헌법상 법령해석권의 권한에 의해(북한헌법 제101조제3호) 그 판정의 정당성 여부를 최종 심사하여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의 판정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의하면, 일반적인 민사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인민재판소의 제1심, 도(직할시) 재판소의 제2심, 중앙재판소 3인 재판부의 비상상소심,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의 비상상소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심사, 새로운 제1심 또는 제2심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판정이 확정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사소송법 제162조 :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중앙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p> <p>민사소송법 제163조 :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도 구성한다.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판정은 참가한 성원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판사회의의 집행은 중앙재판소 소장이 한다.</p> <p>민사소송법 제164조 :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판사 - 우리나라의 판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의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을 법적으로 옹호하고 집행하는 정치일군이다. 판사는 당정책과 그것을 구현한 법령에 엄격히 복종하면서 당의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에 기초하여 재판을 한다.</p>

○ 재심제기신청 및 사유

북한에서 재판소와 검찰소는 스스로 또는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중앙재판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장에게 재심을 제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제기신청은 해당사유를 안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재심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소환하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결석이 사건심리를 연기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건의 심리는 주심판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재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결·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로 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판정을 하거나 직접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아울러 재심제기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그러나 제2심이나 비상상소심과는 달리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판결·판정을 직접 고칠 수는 없다.

<p>관 계 법 조 항</p>	<p>민사소송법 제170조 : 소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재심을 제기하여 줄 것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재심제기신청은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p> <p>민사소송법 제171조 : 재심제기신청을 받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는 1개월 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리유가 정당할 경우 해당한 의견을 붙여 중앙재판소 또는 중앙검찰소에 보내며 부당할 경우에는 판정 또는 결정으로 거부한다.</p> <p>민사소송법 제173조 : 재심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재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p> <p>민사소송법 제174조 : 재심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결·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재판소에 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사건을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민사소송에서는 1) 소송당사자가 판결 당시에 알지 못하였으며 또 알 수 없었던 사실을 후에 새로이 알게 된 때, 2) 판결, 판정의 기초로 된 재판소의 다른 판결 또는 다른 기관의 결정이 파기 취소되었을 때 등에 재심을 하게 된다. 재심의 제기는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 소송참가자 및 그들의 권리계승인들도 제기할 수 있다.</p>

## II. 執行節次에 관한 用語

### ○ 판결·판정의 집행

북한에서 민사소송법상의 판결·판정의 집행은 재판소가 내린 판결·판정의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남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과 같은 제도이다. 다만, 북한의

판결·판정의 집행은 그 일차적 목적이 국가권력의 권위확보와 법질서유지에 두고 부수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실현에 기여한다는 입장인 데에 비해, 남한의 강제집행은 당사자의 조속한 권리회복에 주된 목적을 두고 공권력의 발동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75조 : 판결·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판결·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원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판결의 집행 - 제1심재판소가 판결의 내용을 집행케 하는 소송행위. 민사판결의 집행은 그것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만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판결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의 즉시 집행이 허용된다.

### ○ 집행원, 집행문

북한에서 집행담당자는 소송절차에서 소송당당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집행담당자는 원칙적 집행기관인 집행원·재판소·검사·당사자가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도 직접 집행문의 발급을 요구하여 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미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집행원의 집행행위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위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집행원이 소속한 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원칙적 집행기관은 재판소의 집행원이지만 재판소나 은행, 그리고 채무자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수매기관도 집행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판소는 집행원 등 집행기관의 집행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도·통제와 재판적 지도·통제를 행하는데, 집행원 등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와 관련된 사건관계자들의 신청 또는 검사의 항의를 조사·심리하고 해당 판정을 내리는 것이 재판적 지도·통제이다. 당사자는 집행원에 대해 배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원은 집행행위를 할 때 당사자를 그 자리에 반드시 참가시켜야 한다.

한편 북한에서 집행문은 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가 직권 또는 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집행활동은 재판소, 당사자, 검사가 발급한 집행문에 의해 집행원 등 집행기관에 접수시킴으로써 시작된다. 이 때 채권자는 집행문을 발급하거나 집행문을 집행기관에 접수시킬 때 집행비용을 예납할 필요가 없으며, 집행비용은 추후 집행단계에서 매득금으로 공제된다.



<p>관계법조</p>	<p>민사소송법 제175조 : 판결·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판결·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6조 : 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민사판결,판정을 집행하며 형사판결 판정 가운데서 재산징수부분의 집행을 맡아하는 재판기관 일군. 집행원은 최고재판소가 임명하며 인민재판소에 둔다. 집행원은 그 직무수행에서 소속재판소의 감독을 받는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민사재판의 판결, 판정의 집행, 형사재판의 재산징수, 부분판결의 집행을 기본임무로 하는 공무원.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재판소에 배치되어있으며 직무수행에서 해당 인민재판소 소장의 지도를 받는다(집행인).</p>

○ 집행시효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집행문발급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 판결·판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안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6조). 매우 단기간의 집행시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소는 판결·판정의 집행시효기간이 지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집행문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채권자의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집행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는 지나간 집행시효기간을 회복시키는 판정을 할 수 있다. 집행원 등이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일부만 집행하였을 경우에 집행문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반환하며 집행문을 반환한 때부터 중단되었던 집행시효기간은 새로 진행한다.

집행원 등은 집행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집행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집행처리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집행원 등은 물론 재판소도 이 기간을 임의로 고칠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집행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p>관계법조</p>	<p>민사소송법 제176조 : 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문 발급에 대한 신청은 판결·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그것을 처리하여야 한다.</p>
-------------	--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법이 정한 기간내에 판결이 집행되지 않을 때 판결의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하는 민사소송상 제도. 우리나라에서 집행시효기간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서는 2개월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다.
------	---

○ 집행중지

북한의 민사소송법상 집행중지는 판사가 행하는데,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즉, 채무자에게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집행이 중지된 기간동안에는 집행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나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다시 계속된다. 판사는 집행문발급의 기초가 되는 판결·판정이 취소된 경우와 집행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을 지나서 집행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공민인 당사자가 집행신청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집행사건을 기각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79조 :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빚을 물어야 할 자에게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 2.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3.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집행 - (법과 규범, 재판검찰기관의 결정과 지시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되게 시행하는 것. 중지 - 도중에서 멈추거나 그만두는 것.

○ 집행을 바로잡아줄 데 대한 신청(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집행원은 집행이 끝난 다음 해당절차에 따라 집행한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집행조서를 판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80조). 집행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가지는 제3자는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에 집행을 바로잡아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를 '의견제기'라고 한다. 이는 남한 민사소송법상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제484조), 집행에 관한 이의(제50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50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506조), 제3자 이의의 소(제509조),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즉시항고(제517조) 등을 포괄하는 개념에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러한 의견제기 신청을 받은 재판소의 판사는 15일 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고 그것을 심리해결하여야 하며,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2조).

관 계 법 조 항	민사소송법 제182조 : 집행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에 집행을 바로잡아줄 데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앞 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소의 판사는 15일 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고 그것을 심리 해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 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의견 - 어떤 사물현상에 대하여 자기로서 판단하여 가지는 일정한 생각.

○ 재산담보처분

북한도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가압류 내지 가처분에 해당하는 보전절차인 재산담보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판사는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도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산을 담보처분할 수 있다. 담보처분은 해당 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그 판정에는 피고가 입을 손해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담보액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담보처분에 관한 재판소의 판정은 재판소가 발급한 집행문에 기초하여 판결집행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원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에서의 재산담보처분은 소송장이 접수된 후에 가능하고, 기관·기업소·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재산담보처분제도와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재판소는 판정으로 재산담보처분을 해제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관 계 법 조 항	민사소송법 제82조 :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것을 판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한다. 민사소송법 제81조 : 판사는 사건을 받은 때부터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산을 담보처분 할 수 있다. 담보처분은 해당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재산을 담보처분할 데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당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민사 또는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공민들의 재산을 그 소유자 및 보관자가 제마음대로 리용,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것을 원상 그대로 보관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소송상 강제처분.
------	---

[부록 1]

## 北韓의 民事關係法令 立法動向

법 명	공포일 · 근거
·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 3. 5.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	1946. 3. 8. 임시인민위원회 비준
· 토지소유권증명서교부에 관한 세칙	1946. 5. 22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1946. 7. 30.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5호
· 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1946. 8. 10.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8호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	1946. 9. 14.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78호
· 토지소유권을 보호하여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	1946. 10. 4.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91호
· 국영사업장관리령	1946. 11. 30.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124호
· 인민시장규정	1947. 2. 3. 상업국 포고 제6호, 재정국 포고 제28호
· 지하자원, 삼림지역 및 하천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	1947. 12. 22. 인민위원회 법령 제31호
·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및 공리단체 호상간의 계약제도와 결제제도확립에 관한 결정서	1948. 2. 29. 인민위원회 결정 제120호
· 물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	1948. 12. 16. 내각 결정 제90호
· 철도운수에 관한 규정	1949. 10. 7. 내각 결정 제151호
· 후견인 또는 보좌인 선정 및 감독에 대하여	1949. 11. 15. 내각 지시 제232호
·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규정	1949. 12. 2. 교통성 규칙 제4호
·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	1949. 12. 13. 농림성 규칙 제28호
· 농민시장에 관한 규정	1950. 10. 11. 내각 결정 제9호
· 공화국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	1950. 7.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한 정령 시행세칙	1950. 7. 내각 결정
· 부업경리농장경영에 관하여	1951. 4. 12. 내각 지시
· 협동단체들의 조직 및 사업강화에 관한 결정	1951. 8. 22. 내각 결정 제321호
· 전쟁고아들에 대한 입양수속절차에 관하여	1952. 7. 26. 내각 지시 제167호
· 조선생산협동조합 각급연맹규약	1952. 8. 19. 내각 결정
· 농촌에서 빈농민들에 대한 고리대현상을 제거함에 관하여	1952. 10. 30. 내각 결정 제188호

법 명	공포일·근거
·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	1952. 11
· 국가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1954. 1. 15. 내각 결정 제6호
· 조선생산협동조합 기준규약	1955. 2. 15. 내각 결정
· 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1955. 3. 5. 내각 결정 제28호
· 이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1955. 3. 16. 사법성 규칙 제9호
· 국영기업소에 관한 규정	1955. 5. 21. 내각 결정
· 개인상공업허가에 관한 규정	1955. 8
· 기본건설공사에 관한 시공계약규정	1956. 1. 10. 내각 결정 제4호
· 협의이혼절차를 폐지하고 재판이혼에만 의하게 하는 규정	1956. 3. 8. 내각 결정 제24호
· 제품공급제에 관한 규정	1956. 6. 8. 내각 결정 제55호
· 시효에 관하여	1956. 10. 1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	1959. 1. 19. 내각 결정
· 창의고안에 관한 상공제규정	1959. 9. 3. 내각 결정
·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할 데 대하여	1959. 11. 14. 내각 결정 제104호
· 시효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관하여	1961. 7.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자재상사에 관한 규정	1962. 10. 20. 내각 비준
· 제품공급계약에 관한 규정	1962. 12. 6. 내각 결정 제69호
· 은행체계를 개편할 데 대하여	1964. 3. 23. 내각 결정 제23호
· 국가기관, 기업소 및 협동단체에 대한 대부규정	1964. 6. 4. 내각 결정
·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1967. 10. 5. 내각 결정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회의에서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없애고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할 데 대하여 주신 강력적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1972. 2. 2. 내각 결정
·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요강	1972. 2. 2. 내각 결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1972. 12. 정무원 결정
· 민사소송법	1976. 1. 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8호
· 어린이보육교양법	1976. 4. 29.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 회의 채택
· 토지법	1977. 4. 29.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 채택
· 도시경영감독에 관한 규정	1977. 6. 23. 정무원 결정 제35호
· 인체보험에 관한 규정	1978. 3. 11. 정무원 결정 제12호
· 재산보험규정	1978. 3. 11. 정무원 결정 제23호

법 명	공포일 · 근거
· 다른 나라 자동차가 우리 나라 공민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규정	1978. 3. 11. 정무원 결정 제25호
· 짐입자선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978. 3. 22. 정무원 결정 제56호
· 기관차, 짐차를 빌려주는 규정	1978. 3. 22. 정무원 결정 제57호
· 짐차의 머무름시간에 따르는 벌금규정	1978. 3. 22. 정무원 결정 제62호
· 재산보험규정 세칙	1978. 3. 22. 중앙은행 지시 제11호
· 기본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계약규정	1978. 3. 29. 정무원 결정 제83호
· 고정재산관리규정	1978. 7. 31. 덜누룽 성달 제157호
· 다른 나라 짐차를 다루는 규정	1978. 9. 15. 정무원 결정 제181호
· 철도의 불합리한 수송을 없앨 데 대한 규정	1978. 9. 15. 정무원 결정 제182호
· 철도운수에 관한 규정	1978. 9. 15. 정무원 결정 제183호
· 자동차관리규정	1978. 9. 15. 정무원 결정 제190호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에 끼친 손해보상에 관한 규정	1978. 9. 24. 정무원 결정 제201호
· 트랙토르 및 농기계 관리규정	1978. 12. 8. 정무원 결정 제219호
· 국가배를 빌려주는 규정	1978. 12. 10. 정무원 결정 제240호
· 상품공급계약에 관한 규정	1978. 12. 27. 정무원 결정 제250호
· 배수리에 관한 규정	1978. 12. 27. 정무원 결정 제275호
· 기본건설감독 및 검사에 관한 규정	1978. 12. 27. 정무원 결정 제277호
·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1979
· 새 기술의 심의, 등록 및 도입에 관한 규정	1979
· 건설기준제정에 관한 규정	1979. 2. 21. 정무원 결정 제18호
·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	1979. 4. 6.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상품공급규률을 강화할 데 대하여	1980. 1. 21. 주석 명령
· <상품공급규률을 강화할 데 대하여> 를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	1980. 4. 19. 정무원 결정
· 해운법	1980. 8.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인체보험규정 세칙	1981. 1. 5. 중앙은행 지시 제3호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와 전원회의 결정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공장관리운영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1981. 5. 14. 정무원 결정
· 중재재판규정	1982. 1. 19
· 행정경제부문의 관리(사업)규범을 승인함에 대하여	1982. 5. 13. 정무원 결정
· 공장, 기업소관리규정	1982. 5. 13. 정무원 결정

법 명	공포일·근거
· 농업관리규범	1982. 5. 13. 정무원 결정
· 상업관리규범	1982. 5. 13. 정무원 결정
· 중앙은행사업규범	1982. 5. 13. 정무원 결정
· 통계사업규범	1982. 5. 13. 정무원 결정
· 자재상사사업규범	1982. 5. 13. 정무원 결정
· 민사규정(잠정)	1982. 12. 7.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247호
· 민사규정 잠정 시행세칙	1983. 3. 19. 중앙재판소 지시 제2호
· 합병법	1984. 9. 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
· 합병회사소득세법 및 외국인소득세법	1985. 3. 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
· 합병법실시세칙	1985. 3. 20. 정무원 결정 제14호
· 합병회사소득세법실시세칙	1985. 5. 17. 정무원 결정 제22호
· 외국인소득세법시행세칙	1985. 5. 17. 정무원 결정 제23호
· 민사규정	1986. 1. 30.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환경보호법	1986. 4. 9. 최고인민회의
· 민법	1990. 9.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
· 가족법	1990. 10.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
· 헌법	1992. 4. 9.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
· 사회주의상업법	1992. 4. 9.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법령 제5호)
· 도시경영법	1992. 4. 9.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 법령
· 외국인투자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외국인기업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합작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합병법시행세칙	1992. 10. 10. 정무원 결정 제148호
· 외화관리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지하자원법	1993. 4. 8. 최고인민회의 법령
· 토지임대법	1993. 10.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외국인투자은행법	1993. 11.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
· 합병법(개정)	1994. 1. 20. 정무원 결정 제146호
·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994. 3. 27. 정무원 결정 제13호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9호
· 민사소송법	1994. 5. 2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대외경제계약법	1995. 2. 2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보험법	1995. 4.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대외민사관계법	1995. 9.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법 명	공포일 · 근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	1996. 2. 14.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자 대리인 규정	1996. 7. 15.
· 토지, 건물의 출자규정	1996. 12. 30.
· 자유경제무역지대 국내투자기업 창설 및 운영규정	1997. 5. 17.

[부록 2]

## 北韓의 現行 民法 · 家族法 · 民事訴訟法 全文

###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民法

(1990. 9.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

### 제1편 일반제도

####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제3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4조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조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8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 또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령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

##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1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 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자신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8조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에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19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제20조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 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제21조 16살에 이르지 못한 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그러나 6살 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2조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협을 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

### 제3장 민사법률행위

제24조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말로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민사법률행위를 한 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7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28조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30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제32조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제33조 대리인은 대리의 도움을 받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본인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 앞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4조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

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35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

제36조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 제2편 소유권제도

### 제1장 일반규정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

제38조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의 발생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루어진다.

제39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제40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소유권은 여럿이 몫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하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43조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 가질 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 제2장 국가소유권

제44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45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 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리 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4. 각급 학교 및 중요 문화보건시설

제46조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재산을 제한 없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7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8조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국가소유권은 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관리권만 넘어간다.

제49조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트랙도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 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 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 제3장 협동단체소유권

제53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협동단체소유는 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생산물, 협동단체가 산재산,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

제55조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다.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 데 따라할 수 있다.

제56조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57조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개인소유권

제58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9조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



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60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61조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제62조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든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

### 제3편 채권채무제도

#### 제1장 일반규정

제64조 이 법에서 채권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65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 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 수도 있다.

제66조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67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

제68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여 생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손해가 커진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제69조 채권채무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

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의식적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70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 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제71조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들은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분할채권자들이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들이 지는 의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연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연대채무자들은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4조 채무를 전부 리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연대채권자는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줄 의무를 진다.

제75조 연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서 다른 연대채권자들의 리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연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것은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6조 채권자가 한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었던 몫만큼 다른 연대채무자들의 몫은 적어진다.

제77조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 줄 수 있다.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78조 제3자의 허물로 하여 생긴 채무를 채권자 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될 채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 앞에 책임진다.

제80조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1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한꺼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82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을 넘겨줄 수 있다.

제83조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쓸 수 없게 되면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 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 주어야 한다.

제84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 가운데서 채권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면 그 때로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85조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86조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 곳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 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87조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에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88조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여러 행위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89조 선택권을 가진 자가 채무리행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90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  
제91조 계약당사자들은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92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 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93조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94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 데서 상업적 형태를 리용할 데 대한 국각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95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기계, 설비, 완료,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96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자재를 주고받는 방법, 자재의 포장조건,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97조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 보내주거나 자기 창고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98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99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 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원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0조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랑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에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제101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에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으면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변질 될 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 수 있다.

제102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옹계 련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03조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소비품을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04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공장,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공장,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 수 있다.

제105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06조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제107조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제108조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사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9조 수매기관이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

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0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11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방법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12조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수매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수매계획에서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13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에 그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114조 계약당사자들은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 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5조 수매기관은 정확히 농산물의 질을 검사하며 량을 계량계측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 수 없다.

제116조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곡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 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8조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119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들은 건설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 날짜와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맺는다.

제120조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 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

가 할 수 있다.

제121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 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2조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123조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하는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었을 때에 한다.

제124조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로부터 1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허물있는 자가 부담한다.

제1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할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6조 화물수송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 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 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127조 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들은 짐의 이름, 나를 수량, 보내는 곳과 닿는 곳, 짐을 싣고 부리는 방법과 보내고 받을 자의 이름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 를 보아야 한다.

제128조 짐보내는 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29조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 것이 없으면 짐임자가 하여야 한다.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130조 운수기관은 짐받을 자에게 짐을 넘겨줄 때까지 잘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운수기관은 나르는 짐을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제131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 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2조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 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 안에 찾아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관료나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33조 짐받는 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34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지지 않은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규정한 화물수송계약질서에 따라 한다.

###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제135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

제136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편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해당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제137조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회유금속, 그 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제138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대상, 리행기간, 값같은 본질적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공민들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 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

제139조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 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제140조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간,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말로 맺을 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면과 같은 증거력이 있는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141조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42조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43조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44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 자는 결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거나 그 값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제145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 안에 물어야 한다.

제146조 계약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 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47조 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맺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 자와 함께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

제148조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49조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 자는 물건을 사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 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 자가 물건을 판다는 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50조 공장,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에서 파는 자로는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

보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151조 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 자는 보증기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52조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희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내놓고 농축산물과 농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사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수매품종들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153조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수매시키는 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수매기관에 팔 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54조 수매품을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 자가 하며 수매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나르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수매품의 나르는 일을 앞항과 다르게 계약한 경우에 운반을 담당하는 자는 해당 운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55조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살 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156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 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잘 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57조 작업봉사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 자는 주문받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작업맡긴 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맡긴 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58조 작업봉사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받은 때에 맺어진 다.

제159조 작업맡기는 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주면서 기술자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하는 자는 작업기간을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제160조 작업하는 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자재나 부속품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맡기는 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 작업하는 자는 그것

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61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맡기는 자가 낸 작업대상물을 소중히 다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써야 한다.

쓰고남은 자재와 부속품은 작업결과와 함께 작업맡긴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 작업하는 자는 마음대로 작업대상의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작업맡긴 자가 낸 작업대상물에서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 쓰지 말아야 한다.

제163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맡긴 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작업하는 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64조 작업하는 자는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한 자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기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남의 허물이 아닌 이상 자기가 책임진다.

제165조 작업맡긴 자는 작업결과를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한 자는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6조 공민이 물건을 맡기고 건사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보관계약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67조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 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킬 자는 그것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

공민들 호상간의 보관계약에서는 보관료를 주고받을 수 없다.

제168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말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자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 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대방에 내준 때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맺을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을 수도 있다.

제169조 물건을 보관시키는 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 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보관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 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자가 책임진다.

제170조 보관하는 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1조 려관, 극장, 회관과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 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손님이 따로 건사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2조 보관시킨 자는 보관물을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 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 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더 높게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3조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내놓은 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제175조 공민은 법적 의무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처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그것을 보관관리하는 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6조 법적 의무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78조 빌리기계약의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 자는 빌리는 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 자가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 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179조 공민이 도서, 특허물, 록음 및 록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맺는다.

공민들 호상간의 빌리기계약에서는 사용료를 주고받을 수 없다.

제180조 빌려주는 자는 물건을 그 본성에 맞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에 그 사실을 빌리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 자에게 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81조 빌리는 자는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리는 자가 빌린 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 빌려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 자가 하며 중수리는 계약에서 정한 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리는 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 자가 수리를 제대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히 손상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3조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 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 자의 동의 밑에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 이 경우에 빌리는 자는 계약의무의 리행에 대하여 빌려준 자 앞에 책임진다.

제184조 보증금을 설정하고 맺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 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제185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구매나 그 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6조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 자는 위탁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거래 행위를 위탁하는 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 자는 그 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제187조 위탁하는 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88조 위탁받은 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자가 계약조건외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9조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한 자에게 넘겨주기로 된 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다.

제190조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가 요구한 것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다 위탁한 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2조 이 법에서 규정한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거래관계에도 해당하게 적용된다.

제193조 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여행은 여행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여행수송계약은 인민들의 여행상 안전과 편리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94조 여행수송계약에 의하여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 값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여행목적지까지 태워갈 의무를 진다.

여행수송계약은 운수기관이 표에 의하여 해당 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 준 때에 맺어진다.

제195조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들에게 의료봉사, 도중식사를 비롯하여 여행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96조 운수기관은 손님을 여행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 손님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97조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정한 기간 안에 물리려고 하거나 그를 태워갈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표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에게 돌려주거나 표의 사용기간을 늘여주어야 한다.

제198조 여행하는 손님은 학령전 어린이를 표없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정해진 범위 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 수 있다.

제199조 손님은 여행과정에 운수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여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운수기관은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계약은 놓고 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1조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줄 의무를 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2조 저금계약에서 저금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주어야 한다.

제203조 저금기관은 공민이 요구하면 어느 때든지 저금하는 돈을 맡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4조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저금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05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놓고 있는 돈을 동원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6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7조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내주지 않는다.

제208조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09조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과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어지며 보험료를 물면 그 때로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210조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으면 해당한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다 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제211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2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13조 공민이 재산거래와 그 밖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

제214조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 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위임하는 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임하는 자는 위임 받는 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위임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제215조 양자관계나 유언과 같이 본인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위임할 수 없다.

제216조 위임받는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7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허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의 허물에도 속하지 않고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한 자가 책임진다.

제218조 위임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9조 위임한 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임받은 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들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한 자는 자기의 허물로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0조 위임계약의 당사자들은 위임계약을 어느 때든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그것으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1조 공민들 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 받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

제222조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에게 넘겨주면 꾸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3조 기간을 정하고 꾸기계약을 맺은 경우에 꾸어준 공민은 기간이 되어야 꾸어준 돈이나 물건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끈 공민은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것을 갚을 수 있다.

제224조 끈 돈이나 물건은 정한 기간 안에 갚아야 한다. 같은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갚을 수 있다.

제225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26조 은행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폐자금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 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 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7조 은행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맺는다.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문건으로 자기의 대부금 반환능력을 은행기관에 담보하여야 한다.

제228조 대부받은 자는 대부금을 류용하거나 사장랑비하지 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간 전에 회수하거나 다음번 대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9조 대부받은 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겨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더 높은 률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230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자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31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 작업참가정도에 따라 작업결과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진다.

합동작업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작업대상, 기간, 질서와 작업실적의 계산방

법, 작업결과물을 나누는 원칙, 합동작업대표의 권한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233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업대표는 계약당사자들의 대표로서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4조 합동작업대표는 작업이 끝나면 계약당사자들에게 작업실적에 따라 작업결과물을 나누어 리용할 데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4장 부당리득행위

제235조 법적 근거없이 남의 손실 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 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36조 부당리득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그 리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7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38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 자는 그것을 보관관리하고 돌려주는 데 들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제239조 부당리득을 돌려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당리득자는 그 리득을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 제1장 민사책임

제240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

제241조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허물이 있는 경우에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긴 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2조 민사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반환
2. 원상복구

## 3. 손해보상

## 4.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 5.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

민사책임은 정상에 따라 병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3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통제할 의무를 진 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244조 16살에 이른 부분적 행위능력자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자기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2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제246조 남의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차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을 현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7조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8조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49조 관리하고 있는 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짐승의 임자나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 보상책임은 떨어지거나 면제된다.

제250조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 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1조 여럿이 공동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자들은 연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2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 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을 어긴 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53조 계약당사자들이 다같이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하게 민사책임을 진다.

제254조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는 손해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5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6조 공민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또는 자연재해나 비법침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7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것으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입자는 해를 입은 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8조 민사책임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2장 민사시효

제259조 민사상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판, 중재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민사시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61조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 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 체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2. 앞호 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련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해당 협정에 의한 기간

제262조 예산제 국가기관, 기업소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이 발생한 예산연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제263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64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자발적으로 리행한 자는 시효기간이 리행한 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5조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 안에 자연재해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이 법 제261조제1호의 청구권에는 민사시효의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6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제267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사시효기간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268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리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69조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은 때부터 시작된다.

1.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이 된 때
2. 리행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생긴 때
3.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 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 청구는 그에 대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하기로 된 때
4. 그 밖의 청구권은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때

제270조 민사시효기간은 일간, 월간, 년간으로 정하며 그 계산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당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271조 민사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명절일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家族法

(1990. 10.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

제1장 가족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4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조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6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

제8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제10조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제11조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

제12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조선국민들의 결혼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기관에 할 수 있다.

제13조 이 법 제8~10조에 위반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

제14조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문제는 이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3장 가정

제15조 가정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민은 가정을 화목하고 명량하게 꾸려야 한다.

제16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7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남편과 안해는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제21조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흑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

제22조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23조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그가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 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24조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 줄 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

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제26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

제27조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건철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28조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제29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0조 공민은 다른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립양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밖에 양자녀를 보육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립양할 수 없다.

제31조 립양하려는 공민은 양자녀로 될 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립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녀로 될 자가 6살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2조 립양은 양부모로 될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제33조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 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4조 과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 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과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35조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철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36조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 주어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가정성원들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 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함께 사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38조 이 법 제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 준다.

제39조 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 나가는 경우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 제4장 후견

제40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제41조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후견인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 후견의무수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제42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 법 제41조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 선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

제43조 후견인은 후견받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된다.

제44조 후견인은 후견받는 자를 보육교양하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제45조 후견의무수행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 제5장 상속

제46조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

제47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

상속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거부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

제48조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은 자,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 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제49조 상속받기로 된 자가 상속시키는 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50조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51조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2조 상속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6개월 안에 상속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받을 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

제53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판소가 해결한다.

## 제6장 벌 칙

제54조 이 법을 어긴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법적 제재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으로 한다.

##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民事訴訟法

(1994. 5. 2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제4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 권리, 리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판정으로 해결한다.

제8조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제9조 민사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통역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인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자기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

제10조 민사사건의 재판심리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공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11조 당사자들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데 참가할 수 없다.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해당사건의 조서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제1심 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5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6조 소송당사자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에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를 시작한 다음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재판소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 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 밖의 재판소 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꾼다.
2.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8조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 제2심과 비상소심, 재심, 판사회의 사건은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송기간은 년, 월, 일로 정하며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소송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날의 24시까지로 하며 월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소송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 그런 날이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소송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 명절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노동절

이 지나면 끝난다.

제20조 소송장, 상소장을 비롯한 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가 그 기간을 늘여 줄 수 있다.

제21조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사건수속비용이 속한다.

제22조 재판준비 또는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든다.

### 제3장 소송당사자

제23조 소송당사자로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될 수 있다.

소송당사자로 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행사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25조 원고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서로 화해할 수 있다.

제26조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거주지(소재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27조 재판소는 원고로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 있는 당사자로 바꿀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격 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인입할 수 있다.

제28조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공동원고나 피고는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자기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원고나 피고에게 맡길 수 있다.

제29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 제6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

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할 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31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당사자가 죽은 경우에는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앞 항의 경우에 이미 진행한 모든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 기관, 기업체,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를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미성년자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33조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행위를 맡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내야 한다.

당사자가 재판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그 사실을 기록한 재판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

제34조 소송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청구를 포기, 승인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하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 데 대한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임장에 밝혀야 한다.

제35조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

## 제4장 증거

제36조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제37조 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판소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 수 있다.

제38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39조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사건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증거는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낼 수 있다.

제40조 소송당사자가 내놓았거나 재판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사실심리에서 객관적으로 검토 확인되어야 판단과 해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41조 재판소는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당 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의뢰서에 지적된 기간 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야 한다.

제42조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해당 사실을 옳게 리해할 수 없거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자는 증인으로 될 수 없다.

제43조 증인은 알고 있는 사실을 직접 써낼 수 있으며 진술내용이 잘못 기록된 경우 그에 대하여 고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증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45조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

제4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판소에서 요구하는 증거문서나 증거물을 제때에 내야 한다.

증거문서원본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본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밝히는 데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판정으로 감정을 맡길 수 있다.

감정을 맡기는 판정서에는 감정할 대상과 내용, 기간을 밝히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과 그의 의무를 지적한다.

제48조 감정은 전문감정기관에 맡긴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맡길 수 있다.

제49조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판사의 승인 밑에 감정인은 소송당사자와 증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며 현장검증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조 감정인은 말은 감정을 정확히 하고 감정서를 재판소에 내며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1조 재판소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정으로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52조 소송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같은 것을 증거로 보존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조서를 만든다.

## 제5장 재판관할

제53조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
2. 리혼사건
3.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
4.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
5.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

제54조 민사사건의 재판은 인민재판소에서 한다. 그러나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로 보낼 수 있다.

제55조 민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56조 다음과 같은 사건의 재판은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청구사건
2. 자녀양육 및 부양료 청구사건
3.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협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4. 만 1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 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6.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



제57조 법인과 그 산하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법률행위지 또는 계약리행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58조 부동산을 청구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9조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짐수송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은 짐이 닿아야 할 곳이나 짐이 닿은 곳 또는 짐을 부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60조 소송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3자가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이미 심리를 시작한 재판소에서 한다.

제61조 재판소는 이 법 제55~59조를 어기고 제기한 사건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재판심리를 시작하였거나 다른 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다른 재판소로 넘길 수 없다.

제62조 인민재판소는 자기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도(직할시)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안의 재판소에 보내려는 경우에는 중앙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소송의 제기

제6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사상 권리,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와 사회,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4조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장을 내야 한다.

제65조 소송은 당사자가 낸 소송장을 재판소가 접수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송장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소송장 이외의 소송문건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경우에도 소송장을 보냈을 때와 같이 인정한다.

제66조 소송장에는 재판소의 명칭, 소송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해당한 증거를 써넣는다.

제67조 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붙인다.

1. 피고의 수에 해당하는 소송장의 사본
2.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기관의 인증문건
3. 재산을 갈라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
4.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5.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6. 국가수수료 납부증

제68조 다음과 같은 사건은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2.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협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
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

제69조 피고는 제기된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소송은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법 제64조, 제66, 67조의 절차에 따라 제기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 재판소는 원고가 낸 소송장을 검토하고 이 법 제66, 67조에 규정된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불비한 점을 고치게 한다.

정해 준 기간 안에 불비한 점을 고친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처음 받은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장의 불비한 점을 정해준 기간 안에 고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장을 돌려보낸다.

제71조 재판소는 제기된 소송의 내용에 이 법 제8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거부한다.

제72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거부한데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5일 안으로 한 급 높은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3조 재판소는 자기 결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성질에 따라 합치거나 갈라 재판할 수 있다.

## 제7장 재판준비

제74조 민사사건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준비를 한다.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제75조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장의 사본을 5일 안으로 피고에게 보내주며 그에게 소송장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으로 답변서를 내게 한다.

답변서는 받은 날부터 5일 안으로 그 사본을 원고에게 보낸다.

제76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취급처리와 관련한 수속상 문제를 해결한다.

제77조 판사는 재판준비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를 만날 수 있다.

제78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감정을 맡기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을 맞대어 놓고 사실사정을 확증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79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현장검증에는 소송당사자와 소송관계자를 참가시킬 수 있으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80조 판사는 증거물을 수집하였거나 현장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한 차례로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 록화테이프 같은 것을 첨부할 수 있다.

제81조 판사는 사건을 받은 때부터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산을 담보처분할 수 있다.

담보처분은 해당 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재산을 담보처분할 데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당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82조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증된 경우에는 그것을 판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한다.

제83조 판사는 재판준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제기되면 판정으로 재판준비를 중지한다.

1.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소송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취급되고 있는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는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4조 재판소는 이 법 제83조제1호, 제2호의 경우 재판준비를 중지한때부터,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 안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재판준비를 계속할 데 대한 판정을 하고 재판준비를 계속한다.

제85조 판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송을 취소시켜 줄 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판정으로 승인한다.

제86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1. 중재, 행정적 절차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
2. 확정된 판결·판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
3. 소송당사자로 될 수 없는 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된 때 그를 자격 있는 자로 바꿀 수 없는 사건인 경우
4.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때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 자에게 물려줄 수 없는 사건인 경우
5.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병사, 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인 경우

제87조 재판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 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판정서에는 재판심리 날자와 장소, 재판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같은 것을 밝힌다.

제89조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7일 전에 검사 소송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를 할 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90조 재판소는 재판심리 날자를 알리는 것을 비롯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 통지서와 소송문건을 직접 본인에게 주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제91조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판준비에 재판서기를 참가시켜 조서를 만들게 할 수 있다.

## 제8장 재판심리

제92조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판결·판정의 집행 및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 또는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판사 혼자서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심리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93조 한 사건의 재판심리는 같은 재판소 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94조 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95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소송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96조 재판장은 재판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소송당사자를 확인한다.

제97조 소송당사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피고가 재판심리에 두 번 호출받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참가하지 않았거나 자기가 참가하지 않은 대로 재판심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참가 없이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원고가 재판심리에 두 번 호출받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8조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99조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을 확인한다.

증인,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재판심리를 계속하거나 미룬다.

통역인, 해석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00조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꿀 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101조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다른 증인을 부르거나 그 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제102조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것 같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03조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주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한다.

제104조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사실심리순서를 정한다.

제105조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의 차례로 하며 그것이 끝나면 소송당사자에게 서로 질문하게 한다.

제106조 증인에 대한 심리는 순서에 따라 1명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소송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제107조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소송 당사자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대방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어 놓고 심리할 수 있다.

제108조 재판소는 미성인을 증인으로 심리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 또는 교원 그 밖의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제109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 참가한 증인을 심리하고 다음번 재판 심리에 부르지 않을 수 있다.

제110조 증인은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 정해진 장소를 떠날 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심리한 증인을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보낼 수 있다.

제111조 재판소는 이 법 제41조, 제52조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증인을 심리한 경우 사실심리에서 그 조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12조 재판소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묻고 증인에 대한 심리를 그만 둘 수 있다.

제113조 감정인에 대한 심리는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어보는 방법으로 한다.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4조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서 감정을 할 필요가 제기되거나 이미한 감정을 다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판심리를 미루고 판정으로 감정을 맡긴다.

제115조 증거물과 증거문서에 대한 심리는 그것을 재판정에 내놓고 해당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6조 재판장은 재판심리과정에서 재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들며 그것은 재판심리시 검토되어야 판결·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117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서 이 법 제83조, 제85~86조에 지적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심리하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118조 재판소는 리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 상대방당사자의 부양문제 또는 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제119조 재판소는 소송비용과 그 부담문제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에게 더 보충하여 물어보게 한다.

제121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소송 당사자, 인민참심원, 검사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 데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인민참심원들과 합의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122조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 소송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검사에게 사건 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게 한다.

소송당사자가 사건 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

제123조 재판장은 재판심리가 끝나면 그에 대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판결을 채택하기 위하여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로 간다.

제124조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 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심리조서를 만든다.

1.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 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5.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7. 소송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8. 재판심리과정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소송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10. 검사의 의견

제125조 소송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심리조서 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 고칠 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심리조서를 고치게 하며 부당한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판정으로 거부한다.

## 제9장 판결·판정

제126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채택한다. 판결의 채택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127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다음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청구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2. 피고의 답변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여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5.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가

제128조 판결의 채택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129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2.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

제130조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증거문서,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주지 말아야 할 것은 기록에 붙이거나 몰수하고 그 밖의 것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31조 재판소는 소송비용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승인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거부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담시킨다.
2. 이 법 제68조에 규정된 사건의 청구가 승인된 경우에는 국가수수료를 피고에게 물릴 수 있다.

제132조 판결은 재판심리가 끝나는 날에 내린다.

제133조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

1. 재판심리 날짜와 재판소 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과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4.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5.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



6. 재판소가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
7. 판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8.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
9.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
10. 소송비용의 부담
11. 판결의 집행방법과 상소, 항의절차

제134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5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해당한 제재를 가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정으로 해결한다.

1. 사건을 이송하거나 소송당사자를 바꾸는 경우
2. 판사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처리를 끝맺는 경우
3. 재판심리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4. 소송관계자의 신청을 해결하는 경우
5. 재판심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

제137조 판정의 채택은 판결의 채택절차에 따른다.

재판심리절차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처리하는 판정은 재판심리조서에 적어 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138조 제1심 재판소는 이미 내린 판결·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 제136조제4호에 해당한 판정과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내린 확정된 판결·판정은 고칠 수 있다.

제139조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제1심 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상소, 항의할 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중양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하여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제140조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소송당사자와 검사에게 준다.

제141조 상소, 항의를 하려는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이나 항의서를 판결·판정을 내린 제1심 재판소에 내야 한다.

상소장, 항의서에는 상소, 항의의 이유와 요구를 적어야 하며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밝힐 수 있다.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 납부증을 붙인다.

제142조 제1심 재판소는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상소장, 항의서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한 급 높은 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제143조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한 급 높은 검찰소 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4조 제1심 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소송당사자는 제2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5조 판결은 다음과 같은 때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가 없이 그 기간이 지난 때
2. 상소, 항의가 있었으나 제2심 재판소가 제1심 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한 때
3.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때

## 제10장 제2심 재판

제146조 제2심 재판에서는 상소, 항의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 재판소의 판결·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제147조 제2심 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제2심 재판에는 소송당사자와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나 검사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심리날자는 제2심 재판을 시작하기 3일 전까지 검사와 소송당사자에게 알린다.

제148조 제2심 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49조 제2심 재판소와 검사는 제1심 재판기록과 제출된 상소, 항의자료에 기초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는 할 수 없다.

제150조 제2심 재판소는 제1심 재판소의 판결·판정이 옳게 내려졌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151조 제2심 재판소는 제1심 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도 판결·판정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제152조 제2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1심 재판소의 판결·판정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할 데 대한 판정을 하여 제1심 재판소의 재판준비단

계 또는 재판심리단계에 보낸다.

1. 재판소 구성에서 법을 어긴 경우
2. 사건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3. 재판심리에서 증거를 조사검토하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였을 경우
4.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 권리를 보장하여 주지 않았거나 소송당사자로 될 수 없는 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제153조 제2심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서 이 법 제86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1심 재판소의 판결·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154조 제2심 재판소는 제1심 재판소의 판결·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심 재판소의 부족점을 지적하는 판정을 따로 할 수 있다.

제155조 제2심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 제11장 비상상소

제156조 확정된 판결·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

제157조 비상상소는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경우 언제든 할 수 있다.

제158조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59조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중앙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제160조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 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에서 비상상소 제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붙여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며 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해당 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161조 소송당사자와 사건 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비상상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2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

양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중앙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에서 심리해결한다.

제163조 중앙재판소 판사회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도 구성한다.

판사회는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판정은 참가한 성원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판사회의의 집행은 중앙재판소 소장이 한다.

제164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165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비상상소사건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66조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판정이 비상상소에 의하여 변경, 취소된 경우 집행한 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제12장 재심

제167조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확정된 판결·판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다.

1. 판결·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2. 판결·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재판을 끝낸 다음에 알려진 경우
3. 소송당사자 또는 재판소성원이 사건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4. 이미 취소된 판결·판정이나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에 근거하여 판결·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제168조 재심은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69조 재판소와 검찰소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0조 소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재심을 제기하여 줄 것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재심제기신청은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71조 제심제기신청을 받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는 1개월 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리유가 정당할 경우 해당한 의견을 붙여 중앙재판소 또는 중앙검찰소에 보내며 부당할 경우에는 판정 또는 결정으로 거부한다.

제172조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재심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를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173조 재심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제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74조 재심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제심제기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결·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재판소에 보내여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사건을 기각한다.

제심제기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한다.

### 제13장 판결·판정의 집행

제175조 판결·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판결·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원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76조 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문 발급에 대한 신청은 판결·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그것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7조 집행원은 집행행위를 할 경우 의무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의무자는 집행할 재산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다.

제17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한다.

해당 은행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집행하고 그 정형을 집행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9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빚을 물어야 할 자에게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
2.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3.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80조 집행원은 집행이 끝난 다음 해당절차에 따라 집행한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며 집행조서를 판사에게 주어야 한다.

제18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사건을 기각한다.

1. 집행문발급의 기초로 된 판결·판정이 취소된 경우
2. 집행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을 지나서 집행신청을 하였을 경우
3. 공민인 당사자가 집행신청을 포기하였을 경우

제182조 집행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에 집행을 바로잡아줄 데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앞 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소의 판사는 15일 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고 그것을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 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 北韓 民事法上 法律用語 索引

○ 가격규률(가격통제) .....	105
○ 가 정 .....	173
○ 가정성원과 부양의무 .....	189
○ 가정재산 .....	99
○ 가족법 .....	161
○ 감 정 .....	230
○ 개별재산(부부재산계약 및 법정재산제) .....	191
○ 개인소유권 .....	92
○ 거짓말을 하면 법적 책임(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 .....	243
○ 건설주 .....	121
○ 결 혼 .....	165
○ 결혼등록 .....	169
○ 결혼연령 .....	167
○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사생아) .....	181
○ 결혼의 무효인정 .....	172
○ 검 사 .....	205
○ 경영상 관리권 .....	97
○ 경제관리 .....	110
○ 계 약 .....	59
○ 계약규률 .....	62
○ 계약의 본질적 조건 .....	128
○ 계획기관 .....	111
○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	110
○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일반계약) .....	124
○ '계획적 계약' .....	60
○ 공급자·수요자(자재공급계약상) .....	114
○ 공동소유권 .....	94
○ 공동원고(공동당사자) .....	219
○ 관리책임자(대표자) .....	52
○ 교호심문방식 .....	244

○ 구상권 .....	108
○ 국가소유권 .....	89
○ 국가수매 .....	118
○ '국가재산 리용권' .....	97
○ 국 고 .....	80
○ 국유화 .....	96
○ 권리능력 .....	73
○ 근친혼(금지) .....	169
○ 기관·기업소·단체(법인) .....	50
○ 기본건설시공계약 .....	120
○ 기업소 .....	95
○ 기일지정 및 송달 .....	242
○ 꾸기계약 .....	146
○ '남편과 안해의 관계'(혼인과 부부관계의 발생) .....	173
○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소득) .....	98
○ 농민시장 .....	132
○ 농업생산물 .....	119
○ 농업생산물수매계약 .....	119
○ 당사자 .....	49
○ 당사자 변경 및 인입 .....	218
○ 대리 .....	84
○ 대리인 .....	53
○ 대리인(법정대리) .....	224
○ 대리인(위임대리) .....	223
○ 대습상속 .....	197
○ 도매상업 .....	117
○ 독립적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 참가자 .....	221
○ 독립적인 청구권(독립적 청구권을 가진 참가자) .....	220
○ 독립채산제 .....	69
○ '되거리'(전매) .....	133
○ '려객수송계약' .....	138
○ 령사대표(기관) .....	171



○ '로동보수'(생활비) .....	87
○ '리 자' .....	147
○ '리 혼' .....	177
○ '립양'(양친자관계) .....	187
○ 맞소송 .....	222
○ 매매계약상 합의 .....	127
○ 무효인 법률행위 .....	76
○ 미성인(제한적 행위능력자) .....	53
○ 민법 .....	47
○ 민사법률행위 .....	77
○ 민사사건의 재판관할(대상 관할) .....	233
○ 민사소송당사자 .....	218
○ 민사소송법 .....	201
○ 민사소송활동 .....	202
○ 민사재판대상 .....	232
○ 민사재판절차 .....	231
○ 민사책임 .....	153
○ 벌 칙 .....	199
○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및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행위 .....	78
○ 법률사실(사건) .....	64
○ 법률행위 .....	63
○ '법인(기관·기업소·단체)의 소멸': 해산 .....	51
○ 법정대리 .....	84
○ 병 합 .....	154
○ 보관계약 .....	134
○ 보증금 .....	136
○ 보 험 .....	142
○ 보험계약 .....	141
○ 보험기관 .....	143
○ 본신임무 .....	73
○ '부당리득' .....	152

○ 부부별성주의 .....	174
○ 부부의 동등권리(부부의 동거·협조의무) .....	175
○ 부양의무 .....	176
○ 부하시운전 .....	123
○ 분할채권채무관계 .....	106
○ 불로소득 .....	127
○ 불법적 점유 .....	94
○ 비상상소 .....	209
○ 비상상소의 제기 .....	248
○ 빌리기계약 .....	135
○ 사건기각(판정) .....	240
○ 사건보고 .....	247
○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	82
○ 사는 자(매수인)·파는 자(매도인) .....	131
○ 사망자 인정 .....	57
○ 사생아(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181
○ 사실심리 .....	207
○ 사회주의 경제제도 .....	48
○ 사회주의 사회생활 .....	66
○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 .....	61
○ 사회주의대가정 .....	162
○ 장소·항의 .....	241
○ 장소장·항의서 .....	246
○ 상속 .....	194
○ 상속(유언상속) .....	101
○ 상속결격사유 .....	196
○ 상속기간 .....	199
○ 상속의 개시 .....	195
○ 상속의 효과 .....	198
○ 상속인(법정상속) .....	195
○ 상업적형태 .....	113
○ 상품공급계약 .....	115

○ 성인(완전행위능력자) .....	55
○ 소매상업 .....	118
○ 소송당사자 .....	217
○ 소송당사자의 불출석 .....	243
○ 소송대리인 .....	225
○ 소송비용(국가수수료, 사건수속비용) .....	213
○ 소송상 권리계승 .....	222
○ 소송의 제기 .....	235
○ 소송장 .....	212
○ 소 유 .....	86
○ 소유권(형태) .....	88
○ 소유물반환청구권 .....	85
○ 소재불명자 인정 .....	56
○ 손해보상 .....	104
○ 승 낙 .....	126
○ 시공주 .....	122
○ 시 효 .....	157
○ 시효연장 .....	158
○ 시효정지 .....	158
○ 시효중단 .....	159
○ 신분등록(기관) .....	170
○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의 원칙 .....	129
○ 양육(비) .....	179
○ 연대책권채무관계 .....	107
○ 예산(경비예산) .....	68
○ 예산년도 .....	157
○ 위법행위 .....	156
○ 위약금 .....	154
○ 위 입 .....	74
○ 위임계약 .....	145
○ 위임대리 .....	84
○ 위탁계약 .....	137

○ 유언상속 .....	197
○ 은행(기관) .....	149
○ 은행대부계약 .....	147
○ 이혼절차 및 효과 .....	178
○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	163
○ 인민경제계획 .....	103
○ 인 정 .....	56
○ 인체보험(계약) .....	144
○ 자녀교양 .....	184
○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부양의무 .....	185
○ 자녀의 성(姓) .....	183
○ 자유결혼 .....	166
○ 자재공급(자재공급계약) .....	112
○ 작업봉사계약 .....	133
○ 재산담보처분 .....	255
○ 재산보험 .....	144
○ 재 심 .....	211
○ 재심제기신청 및 사유 .....	250
○ 재정규률(재정통제) .....	150
○ 재판심리 .....	206
○ 재판심리조서 .....	214
○ 재판준비 .....	237
○ 재판준비의 중지(사건수속의 정지) .....	238
○ 재혼(계부, 계모) : 계친자관계 .....	180
○ 저 금 .....	140
○ 저금계약 .....	139
○ 저금기관 .....	140
○ 제1심 .....	208
○ 제2심 .....	209
○ 제2심 재판 .....	246
○ 제2심 재판소의 판정 .....	248
○ 주문제 .....	116

○ 주민행정(기관) .....	182
○ 준공검사 .....	122
○ 중앙재판소 판사회의 .....	249
○ 중재 .....	239
○ 중재(절차) .....	66
○ 중혼(금지) .....	167
○ 증거 .....	226
○ 증거력이 있는 계약 .....	129
○ 증거문서 .....	227
○ 증거물 .....	228
○ 증인 .....	228
○ 집행시효 .....	253
○ 집행원, 집행문 .....	252
○ 집행을 바로잡아줄 데 대한 신청(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	254
○ 집행중지 .....	254
○ 착오(민법상) .....	81
○ 채권·채무 .....	101
○ 채권자·채무자 .....	103
○ '채무리행지연' .....	109
○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	155
○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원고승소판결) 및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 .....	245
○ 취소 .....	75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83
○ 친부모자녀(관계) .....	185
○ 친척 .....	164
○ 터밭 .....	100
○ '특수불법행위'의 성립 .....	155
○ 파양 .....	188
○ 판결 .....	203
○ 판결·판정의 집행 .....	251
○ 판결서 .....	215

○ 판 정 .....	204
○ 팔고사기계약(매매계약) .....	130
○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지역관할) .....	234
○ 합동작업계약 .....	151
○ 합영회사 .....	68
○ 합치거나 갈라 재판(소송의 병합·분리) .....	236
○ 행위능력 .....	70
○ 행위무능력(자) .....	58
○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80
○ 허위적 법률행위 .....	79
○ 혈 연 .....	181
○ 협동단체소유권 .....	90
○ 화물수송계약 .....	123
○ 화폐자금 .....	150
○ 화해·청구포기 .....	216
○ 후견제도 .....	192
○ 휴식일 .....	160
○ 회유금속 .....	126

연구보고 97-8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Ⅲ)

---

1997년 12월 25일 印刷

1997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朴 松 圭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洋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02)722-2901, FAX(02)722-2900

등록번호 : 1981. 8.11. 제1-190호

---

값 10,0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63-0 93360

